

2012,
살 만한
삶을 위한



살 만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MB, 반새누리당을 이야기합니다. 새누리당은 정책 말 바꾸기 야당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2012년은 심판의 해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심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서, 박정희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서, 노무현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선거는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를 그리는 선거여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책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핵은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핵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탈핵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가 비정규직으로 인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탈비정규직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더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곧 소득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학벌이 필요합니다.

재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부당하게 갖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시대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탈재벌/탈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체결된 한미FTA를 폐기하고 호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탈FTA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인지 절박하게 묻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학생들은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취직하고 나서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흑사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도 노후는 불안합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해왔습니까?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는 유지될 가치가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사람 몇 명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부분적인 해법이 아니라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 정책자료집이 살 만한 삶을 위하여 함께 꾸는 꿈을 나누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총선 정책을 마련하느라 수고한 모든 정책위원 및 정책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당원과 제작 과정에 함께한 출판인쇄 노동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보신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료집을 살펴보실 독자 여러분께도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3월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목 차

인사의 말 : 살 만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하여	_003
총론 : 우리가 사는, 살아갈 세상	_006
진보신당의 10대 핵심정책	_010
분야별 정책과제	_042
정치 행정자치 평화/외교 사법 인권 경제/금융 조세/재정	
건설/교통 농업 노동 복지 주거 보건 에너지/환경 교육	
문화 미디어/정보통신 과학기술 여성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수자	

우리가 사는, 살아갈 세상

위기, 야만, 성장만능, 불통독재

4대강 재능노조 3포세대 삼성백혈병
 사교육비 최고은 월화수목금금금
 정리해고 자살률이흔을 박정근 명박산성
세계금융위기방사능비 **용산참사**
 구제역 광우병쇠고기 무노조 어버이연합
 출산기피 비정규차별 천안함논란 뉴타운
한반도온난화 이주노동자추방
 천만원등록금 석유중독 **쌍용차사태** 부자감세
 김제동태출 **후쿠시마** 론스타먹튀 연평도
한미FTA 임금격차 88만원 골목상권붕괴
 불공정원하청 에너지빈곤 사유화 도가니
 핵발전증설 **강정해군기지** 국격 학교폭력

공존과 조절, 정의, 전환, 연대

희망버스 산별교섭확장 토건해체 청년고용
 동일노동동일임금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탈삼성 일자리나누기 4대강복원 **로컬푸드**
 무상의료 자립생활 생활임금 이공권보장
 녹색GDP 전태일의집 유기농혁명 토빈세
국공립대학네트워크 노동허가제 **탈핵**
 탄소세 가족구성권 참여예산 이명박처벌
노동시간단축 정의로운전환
 노사공동결정 톨레랑스 도시농업 **사회주택**
 노후안심 대중교통 남북에너지협력 공영카드회사
 안전한작업장 금융자본규제 OCCUPY
 사회적경제 **앙떼르미땅** 동네도서관

2012, 선택의 열쇳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
 위기와 야만의 시대, 삶과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시점



평등하게, 생태적으로, 평화롭게, 연대하며 살기 위한 근본적 변화의 시기
 탈출과 전환, 살 만한 세상으로 ESC < 정의 · 전환 · 연대 >

3중의 위기와 3중의 대안

1. 총체적 위기, 총체적 야만의 시대

-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국제적 금융 위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전 세계의 양극화, 성장만능주의의 결과인 지구적 환경파괴의 고통이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비극은 한국 사회가 정글의 야만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적신호.
- 월화수목금금금. 더 많이 일하지만 일할수록 불안하고 가난해지는 한국 사회. 그러나 교육과 의료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무책임사회.
- 오키나와보다 서울에서 더 가까운 후쿠시마,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핵 위험. 국경을 넘나드는 기후변화의 재앙들. 석유에 기반한 현대문명은 한계점에 와 있음.
- 삼성으로 표상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사회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무기력하거나 무능력으로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2. 우리의 삶과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재의 고통들은 경제 위기, 에너지환경 위기, 정치 위기가 결합된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것임을 직시해야 함.
- 또한 이러한 야만적 결과들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과 지구라는 터전을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뜨리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
-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빈곤은 확산되는 역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사회는 더 가난해지는 모순.
- 99% 운동에서 확인되는, 도처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지만 기존의 금융, 정치,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서도 잡히지 않는 위기의 상황.

#3. 위기에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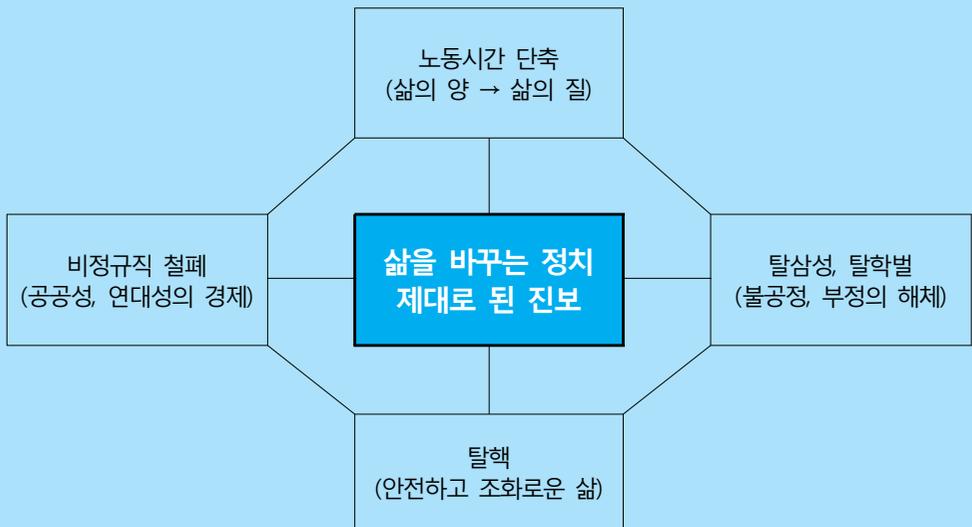
- 위기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만큼 반MB만 외쳐서도, 지나간 정권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어서도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놔야 함.
- 대량생산 대량소비, 노동과 자연에 대한 착취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전제하는 과거의 노동복지체제와, 그것의 단순한 확장인 보편적 복지 구호 역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대안의 방향은 부분적인 해법을 넘어 기존의 노동체제, 정치체제까지를 대체하는 전반적이며 또한 근본적인 변혁과 전환이어야 함.

#4. 근본 진보, 선명 진보가 답이다

- 현재의 위기가 다중적이듯이, 그 대안 또한 경제적으로 탈자본을 지향하며, 생태 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정치 방식의 변화를 포함해야 함.
- 가장 급진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기에서 진보신당이 표방하는 근본 진보, 선명 진보가 가장 풍부하고 구체적인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음.
- 시급하고 현실적인 요구로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와 금융시장 규제, 탈삼성,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을 제시하며 다른 삶, 지속되는 삶, 인간다운 삶을 제안함.

3중의 위기			3중의 대안	
경제	고삐 풀린 금융 악탈자본주의, 99%의 빈곤	▶	탈자본, 공공성, 연대의 경제	
에너지, 기후변화	핵사고, 기후격변, 자원고갈		생태/문화 사회 전환	
정치	불통가카, 정당정치 실종, 선출되지 않은 권력 (ex. 삼성)		다양성의 정치,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의 민주화	

2012, 삶을 바꾸는 정치 제대로 된 진보, 진보신당



탈탈탈! 한국 사회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할 5가지

1. 탈핵 2030!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 2)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2.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 2) 삼성 이사회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3.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4.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환

-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2-6-5-4(2) 학제로 개편
- 3)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5.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 1) 한미 FTA를 차기 국회의 의결로 폐기
- 2) 추가 자유무역 협정 추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으로 전환

톡톡톡! 진보신당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5가지

6.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7.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 재원 확보

- 1) MB 감세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 2) 부동산, 금융 소득 등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 3) 종교인 과세 등 추가 세원 확보 등으로 총 71조 원의 복지 재원 확보

8.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 1)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 2) 주택대출 국가인수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 3) 전월세 이율의 소득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 5) 거주자 중심의 주거 재생

9.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복지의 확대

- 1) 진료비 상한제로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 원이면 OK
- 2)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도입
- 3) 청년실업부조로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제공
- 4)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10.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 1)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2) 4대강의 모든 보를 철거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
- 3)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 4) 강정 해군기지 등 주요 자연파괴·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 5)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 도입

탈핵 2030!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현황 및 취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핵에너지 확충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이명박 정부뿐이며, 한국에서도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된 독일식 탈핵 시나리오 돌입이 시급함.
- 2030년을 목표점으로 역산(back-casting)하여 에너지 수요 조절과 에너지 믹스를 재산정하고,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절약 > 효율화 > 재생에너지 확대 순으로 정책 순위를 가져가고, 이를 달성할 수단을 구체화해야 함.

표_ 주요 핵발전국의 전기소비 및 재생에너지 비율 변화

	1998-2008 전기소비 증가(%)	2000-2008 재생전기 비중(%)	1998-2008 핵발전 비중 증가(%)	핵발전 정책
독일	5	6.4 → 16	31 → 23	폐기
영국	7	3.5 → 6	29 → 14	거의 포기에서 계속으로
스페인	57	17 → 21	31 → 18	계속
일본	6	거의 변화 없음	36 → 25	계속(※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한국	90	0 → 1	43 → 3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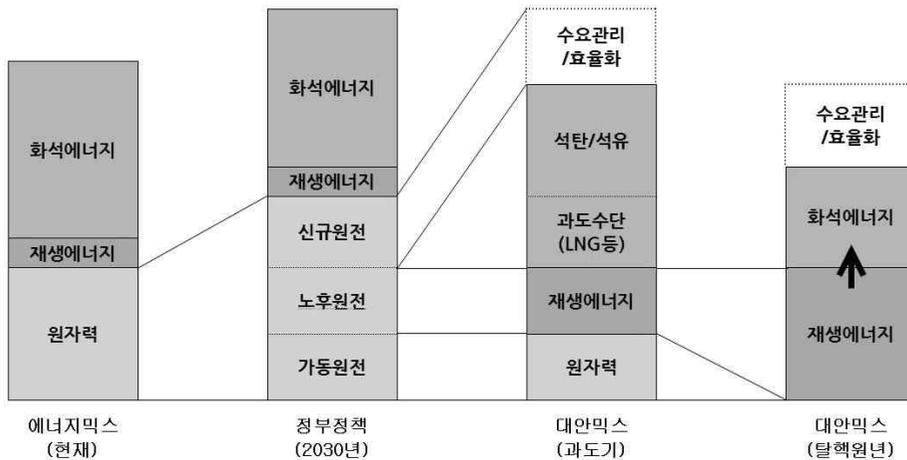
* 출처 : 이필렬,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가」(2011) 중 발췌

세부 추진 방안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 삼척, 영덕 신규 부지 선정 철회,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 탈핵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에너지 대체 단계적 실행
-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그림_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 개념



* 출처 : 김현우 외, 『탈핵』(이매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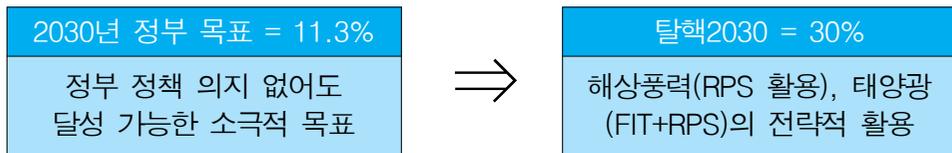
- 현재 총 전력생산 중 31%가량인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대체, 퇴출시킴
- 신규(예정) 핵발전소 발전량만큼 수요관리/효율화 통해 대체
- 노후 핵발전소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통해 대체
- 과도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피크시간 대응이 용이하며, 열공급을 함께 할 수 있는 LNG 열병합 발전소 증설(러시아 가스관 도입, 남북한 협력)

표_ 현 가동 핵발전소 수명을 30년 기준으로 할 때 폐쇄 예상과 2030 시나리오 비교

	2010년대	2020년대	2030-34년	2035-39년	2040-44년
폐쇄 발전소	1	9	16	20	1
가동 발전소	20	12	5	1	0
2030 시나리오	2012년 고리, 월성1호기부터 가동 중단		단계적 폐쇄, 연동하여 에너지 수급 목표 달성		

← 2030년 탈핵 실현

-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연장 가동 없이 폐쇄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및 신규 선정을 중단한다고 할 때, 가동 수명을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34년까지 전체 핵발전소의 3/4이 자동 폐쇄됨.
- 202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 그리드-패리티(Grid-parity)가 도래하여 자발적 보급이 더욱 증가가고, 에너지 효율화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남은 5기의 발전소도 조기 폐쇄 가능.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 30*4 플랜 :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 전력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혜택 폐지로 에너지다소비산업 효율화 유도.
- 에너지 관련 세제 통합하고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추가 도입.
- 대도시 에너지 자립률 법제화, 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과 건축물 개량사업, 대도시 혼잡통행료 확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서남해안 풍력, 동네 태양광에너지 확충 : 발전차액지원제도(TIF) 부활,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제(RPS) 요건 강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를 상향(30%)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 에너지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 피해 방지(고용연계 재교육,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 중소기업, 지역 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숙련, 금융 지원).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개성공단엔 재생에너지 부품공장 설립,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러시아 가스관의 평화적 효과적 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 설치.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 공동 논의/대응기구 구성과 탈핵로드맵 추진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현황 및 취지

- 한국 사회 전체로 촉수를 뻗는 이견희 일가의 권력은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불법, 편법, 탈법적 지배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권력 기반을 해체해야만 '삼성 공화국'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
- 재벌 일가의 권력 기반은 출자총액 제한 등의 부분적 규제책을 선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해체될 수 없음. 재벌 권력의 토대가 되는 주식회사의 소유-지배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만 재벌 권력을 해체하고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음.
- 삼성이 노동자와 국민을 지배하는 '삼성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이 삼성을 통제하는 '노동자-국민 기업, 삼성'으로 전환해야 함.
- 탈삼성의 궁극 목표는 단지 재벌 일가의 일부 전횡의 규제나 삼성 그룹의 해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통해 삼성 계열사들이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이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세부 추진 방향

-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 2011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은 약 238조 원을 채권에, 약 75조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내 거대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로 떠오르고 있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유 지분이 이미 재벌 일가 지분보다

많음. 2011년 12월 현재,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소유 지분이 5.17%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5.95%를 소유하고 있음.

- 삼성 계열사들의 지배 주주권을 획득하는 데 드는 준비비용은 약 15조 원. 삼성전자 등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집중하고 경영에 적극 개입한다면, 삼성 계열사들을 국민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우량기업 삼성전자 등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집중. 이견회 일가 소유 지분을 능가하는 지배 지분을 확보.
- ☞ 국민연금 소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삼성 계열사 경영에 적극 개입.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대표 위원,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공익 대표 위원의 추천 과정을 공개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다 활성화함.

2) 이사회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 한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는 앵글로색슨 모델의 폐쇄형 이사회 구조를 따르면서 사실상 재벌 일가의 과두적 지배의 온상이 되고 있음.
- 반면 독일 등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며, 이들에게 정보가 개방됨. 독일의 공동결정제의 경우, 종업원 2,001인 이상 규모 기업은 '총감독 이사회'와 '경영 이사회'의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노동자평의회가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로 총감독 이사회에 참여함. 경영 이사회는 총감독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여기에도 노동자 선출 이사가 일정 비율로 참여.

- ☞ 종업원 5,000인 이상 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지배구조 개혁. 노동자가 경영사안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며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노동자평의회를 설치. 독일식 이원형 이사회 구조를 도입하며, 노동자평의회에서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최소한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가 되게 함.
- ☞ 노동자 선출 이사 외에도 소비자, 유관업체, 지역사회의 대표가 공익 이사로서 총감독 이사회 수준에서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현황 및 취지

- 2011년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를 차지함. 또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3,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1.7, 여자 정규직은 66.4, 여자 비정규직은 40.5 정도로 격차가 발생함.
- 전체 노동자 근속연수 평균은 5.1년, 비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2.1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 근속연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은 56.0%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83~99%에 비해 비정규직은 32~37% 수준에 불과함.
- 2006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하였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37만 → 2007년 861만 명 → 2011년 865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음. 또한 2006년 법제도의 특징은 차별 시정 및 기간 제한 등 사후 대책 중심의 대책이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그 결과 비정규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씩 교체 사용(회전문 효과)하거나, 기간제 비정규직 대신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충당(풍선 효과)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랜드 파업, 동희오토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재능학습지교사 장기 투쟁 등 핵심적 노사갈등이 모두 2006년 비정규직법

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함.

세부 추진 방안

-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 임신·출산병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대체, 계절적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
 - 파견제 폐지 :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파견법 폐지.
 - 노무 도급 중심의 위장도급 금지 : 적법한 도급과 도급을 가장한 노동력 파견을 구분하여 위장도급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제.
 - 정리해고 후 일정 기간(예 : 6개월) 비정규직 및 사내 하도급 제한.

-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 :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원칙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인력 감축 정책 중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 공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 위탁 사업에 대해 업무 위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실시 :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예 : 1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 조달 사업 및 위탁 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권을 개별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산별노조 포함)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 기업 이윤의 주주 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 프랑스 기업이익분배법 :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주주 배당액 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이익배당금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직책 연봉, 경력에 관계없이 고루 배분되어야 함.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현황 및 취지

-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바탕 : 특정 문제들에 대한 대증요법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교육 체계와 내용을 재편.
- 교육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 : 교육과정의 특정 단계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대학)에 이르는 교육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
- 한국 사회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 : 공교육 붕괴,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등록금 폭등,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학벌 사회 등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제시.
- 학교 현장의 민주화 : 교육혁명의 현장인 학교에서 직접 민주주의, 당사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주체 간 협력에 기초한 교수-학습 공동체 건설.

세부 추진 방안

-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교육 목표 :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기조(L. S. 비고츠키의 교육 철학에 입각)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교육 등 각 발달 단계의 교육 목표 제시
 - 교수학습 목표 : 학문, 지식 습득의 양적 기준이 아닌 발달 기능 중심 / 개념의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는 진개념(genuine concepts)의 형성을 통한 개념적 사고 기능 발달 / 지성, 정서, 의지의 발달을 전 교과와 공통된 지향으로 설정(예

: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로, 미적분은 선택으로)

- 교수학습 방식: 집단적 과정과 개별적 과정의 결합 / 새로운 지식과 기능뿐 아니라 평생학습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학습하는 습관'과 학습의 중요성 및 기쁨을 경험하는 과정(과도한 양적 부담과 상대 평가로 인한 고통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함)
- 평가체제: 발달적 평가 및 발달기록부
- 교사: 학생 이해를 위한 관찰과 진단, 처방의 전문가이자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의 주체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강화
- 영역: 교과 영역 / 관심 특기 영역 / 자치 활동 영역
- 물적 토대: 소인수 학급(교사 1인당 25인 이하) / 수업시수 감축 / 교과내용 감축
- 시간 편제: 오전 교과활동, 오후 관심 특기나 자치. 주당 학습시간은 초등 20-25시간, 중등 기초 26시간, 중등 심화 30시간 정도(5일제 수업 기준)
- 교과와 분화와 통합: 초등 단계의 낮은 수준의 분화에서 시작하여 중등 단계에서 점진적 세분화와 아울러 범교과 주제 활동 결합
- 이질적 학습 집단 구성(수준별, 능력별 집단 편성은 금지)
- 학습 결손 보충 과정 및 학습 장애, 행동 장애, 정서 장애를 포함한 특수교육 영역에 대해 적극 지원

☞ 이러한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공교육 붕괴 속에서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교육혁명을 단행.

☞ 그간 '핀란드형 교육', '덴마크형 교육' 등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던 교육과정 혁신론을 체계적인 종합 처방으로 제시한 것.

☞ 학교 폭력 문제의 근원도 입시 경쟁 교육에 따른 공교육 붕괴에 있는 만큼 이 공약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 처방이기도 함.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를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 유아교육의 기본 학제 포함 : 만 4, 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학교를 기본 학제에 포함. 학부모의 양육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기본 학제에 포함

- 초등 교육과정의 선수 학습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과정에 조응하는 교육 내용.
- 유아교육 관리는 단일한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선진국은 교육부에서 관리).

- 중, 고등학교 전환 1단계 : 고교 서열 체제 폐지

- 입시 기관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질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 학교 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 제도로 전환.

- 중, 고등학교 전환 2단계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의 통합중등학교로 전환.
- 현재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분립된 복선형 학제를 통합중등학교의 단선형 학제로 전환(현재의 복선형 학제는 전문계고 졸업자들을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군으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음).
- 통합중등학교에서 보편적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종합적 인간 발달 교육으로 전환.

☞ 건국 이래 큰 변화 없이 지속되던 6-3-3-4(2) 학제, 복선형 학제(인문계고, 전문계고 분립) 등을 최초로 혁명적으로 재편하자는 것.

3)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 격고사' 실시

-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 이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을 중단하고 반대로 공공적 대학 체계 구축.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지방 캠퍼스에 대한 전략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립대(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들을 점차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공공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를 점차 해소
 - 신입생 선발 단위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함(공동 선발).
 - 대학 입학 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
 - 대입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 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학점 취득은 대학통합네트워크 내에서 개방.
 - 교양과정 이수 후 전공과정에 진학할 때 희망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되, 전공별로 학위 수여 정원을 두고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과를 추진(전공과정 진학 시 특정 캠퍼스에 집중도가 높을 경우 교양과정 이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사립대를 지속적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에 결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교양과정에서 전공과정으로 진학 시 일정 비율을 상호 개방.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공동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
 - 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 전형방법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전문대학원은 지역 균형 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
 -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 부여(전기 모집).
 - 대학통합네트워크 바깥의 사립대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을 통해

자율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을 강화(후기 모집).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현황 및 취지

- 한미FTA의 본질은 ‘제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식 시장근본주의를 국내에 이식하는 데 있음. 즉,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 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협정임.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후퇴방지 조항(래킷), 투자자 국가 체소제도(ISD), 비위반제소 등 한미FTA 협정문에 가득 찬 독소조항은 사실상 초헌법 역할을 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킴.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산업정책 추진은 물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 것임. 따라서 한미FTA는 반(反)복지정책에 다름 아님.
- 한미FTA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잘하는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협정임. 또한 농민, 영세상인 등의 몰락을 부추기는 ‘반서민 협정’임. 외국인 투자 증대와 국내 기업 가치 상승 등 수치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서민 소득 악화로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임.

표 부자가 본 한미 FTA, 서민이 본 한미 FTA

서민 “집값이 오른다”	vs.	투기자본·강부자 “부동산 거품 지속된다”
정부연구기관도 FTA로 인한 부동산 정책 후퇴 우려 “토지구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 가능성”(국토연구원, 2008)		
서민 “약값도 오른다”	vs.	제약회사 “환자 주머니 사정 관심 없다”
약값 결정에 다국적기업·국내 제약회사 참여 확대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조항’으로 복제약 시판 제한		
서민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다 오른다”	vs.	투기자본 “오를수록 돈 번다”
한전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확대 인정으로 민영화 가속, 공공요금 인상		
농민 “비료값도 안 나온다”	vs.	다국적 농산물 자본 “관세 철폐, 이날을 기다렸다”
정부 추산 농업 피해 15년간 12조 6,600억 원 양돈협회, “한미 FTA로 양돈 농가 30% 폐업 예상”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 배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대신 ‘어렌쥐’ 나올 판		
중소 상인 “대형마트 때문에 죽겠다”	vs.	이마트, 월마트 “저인망 골목 상권 시대 도래”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FTA 장애”(2010. 10)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못살겠다”	vs.	투기자본·재벌 “구조조정, 먹튀가 돈 된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미 FTA 고용효과는 신기루”(2010. 8) 투기자본의 구조조정(쌍용자동차), 먹튀(론스타)로 실업, 비정규 저임금 노동 양산		

세부 추진 방안

- 한미 FTA는 국회의 의결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충분히 가능함. 부분적 재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를 거둘 수도 없음.

☞ 민주당 : 11. 22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후,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장외 투쟁 선언 → 12. 20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합의 후 등원

☞ 통합진보당 : 12. 20 민주당 등원 결정에 대해 “한미 FTA의 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 국회 등원은 우리의 주권을 예속하고 서민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 비판 → 12. 29 “소수 야당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등원 결정

- 한미FTA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한중FTA 등 추가적인 자유무역 협정도 추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①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통상
- ② 인권, 교육, 에너지, 식량 등 필수 공익재는 보호되는 무역
- ③ 국민주권 원리가 침해되지 않는 무역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현황 및 취지

- 연간 노동시간 2,193시간, OECD 최고 : 한국인은 1년에 2,193시간을 일함. OECD는 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간. 연간 444시간, 약 2달을 더 일하는 과로사회!!
- 잠 못 자는 한국인 :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 이에 비해 프랑스는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스페인은 8시간 34분임.
- 잃어버린 휴가, 10일 :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주요 도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연간 휴가 일수는 12일.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
- 과로사회 = 위험사회 : 한국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10만 명당 20.99명!!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10명)의 2배!!

세부 추진 방안

-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 1,800시간 초과 시 매 200시간 추가마다 노사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 프랑스는 연간 노동시간 1,605시간 상한. 200시간마다 노사 협의 및 노동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주당 초과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유럽연합은 주당 초과노동시간 8시간

으로 제한)

- 상습 초과 사업장 특별 현장 점검 의무화
-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휴일 노동을 연장 근로 제한 시간에서 제외, '탈법적 초과 노동'을 인정한 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 제외 특례 대상을 최소화
-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제 도입 추진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간 2교대 중심의 교대제 전환시 전환 지원금 확대
-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 업무 규제.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사업주의 초과노동 유인 축소 : 연장/야간 노동 수당 할증률 각각 50%에서 100%로 인상
- 노동자의 초과 노동 유인 축소 : 연장/야간 노동수당에 대해 최고세율 부과(현행 최고세율 38%, 진보신당 증세안에 따른 최고세율 50%)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현실화로 제조업 야간노동 축소 유도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 축소된 휴일 7일을 복원, 기본 휴일을 22일로 확대 (※주 40시간제 이전 기본 휴일 : 월차 12일 + 연차 10일)
- 연차 조건인 1년 만근 규정을 삭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할 부여 (※현행법은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 후 발생할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식)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 공휴일 부활 : 한글날(1990년), 식목일(2006년), 제헌절(2008년) 등 축소된 공휴일 부활
- 대체휴일제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 재원 확보

현황 및 취지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로 인한 총 감세 규모는 5년간 82.27조 원으로서, 연평균 16.45조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MB 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6.45조 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이후의 세수 확보 규모는 17조 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조치들은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집중될 뿐 아니라 조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가능하면 억제해야 함.
- 아울러 주식 양도차익 과세, 파생상품 거래세를 제대로 징수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시키고 감세조치를 철회(단, 부부합산 과세는 위헌 결정으로 반영하지 않음)하는 등 불로소득에 중과세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역시 불로소득의 일종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일 때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세부 추진 방안

1) MB 감세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 세율로 환원(단,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함)
-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함.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과표 3억 원 이상에 적용)을 38%에서 50%로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200억 원 이상에 적용)을 22%에서 35%로 인상
-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제도 정비를 통해, 조세 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10% 축소함으로써 국세 감면율을 현재의 13.70%에서 12.33%대로 낮춤

표_ 개정 소득세율 안

과세표준	2008년도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8%	6%	6%
1200만 원 ~4600만 원	96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7%)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7%)
4600만 원 ~8800만 원	674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6%)	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650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26%)
8800만 원 ~3억 원	1766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742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3억 원 초과	1766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9010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35%)	9162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50%)

표_ 개정 법인세율 안

과세표준	2008년도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2억 원 이하	13%(1억 원 이하)	10%	10%
2억 원 ~200억 원	13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5%)	200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20%)	200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25%)
200억 원 초과	13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5%)	39억 8000만 원+(200억 원 초과금액의 22%)	49억 7400만 원+(200억 원 초과금액의 35%)

- 이상의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 조치를 통해 늘어나는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17.44조 원 정도이며 MB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가분 16.45조 원을 합치면 총 33.89조 원가량의 재원이 확보됨

2)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그 대신 현행의 주식거래세는 폐지함. 또한 현재 과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커녕 거래세조차 과세되지 않는 바(전면 비과세), 과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단 거래세를 도입함.
- 종합부동산세는 MB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세율이 인하되었는 바,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시키고(단, 부부합산과세는 위헌 결정으로 반영 없음), 과표를 공시가격의 80%만 잡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00% 과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함.
-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4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 때에만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함.

※ 세수 추계

-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대략 7.41조 원이나(세율 20% 적용) 주식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액 3.66조 원을 제외한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74조 원임.
- 한편, 과생상품거래세의 경우, 과생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율을 현행 주식거래세 세율의 100분의 6인 0.03%로 함(통합민주당의 안은 0.01%임).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33조 원임.
- 종합부동산세 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MB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60조 원임.
-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연동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도 증가함.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82조 원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은 대략 0.79조 원으로 추정됨.
- 지금까지의 세수 증가액을 모두 합산하면(MB 감세 철회 및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조세지출 축소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까지 모두 포함), 전체적인 세수 증가액은 대략 49.17조 원에 이룸.
- 또한 이외에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미술품과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추가 세수증가액(현재로서는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우나 일단 0.5조 원 정도로 추정)을 감안한다면 총 세수증가액은 대략 49.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현황 및 취지

- 현재 정부와 보수야당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주택을 ‘투기판’에서 빼내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택공급률이 올라가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세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됨.
- 공급을 중심에 놓는 주택정책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함. 기존 주택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멀쩡한 집을 고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
-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7년부터 100%를 넘어섰으며, 산술적으로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주택불균형의 가장 핵심은 공급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체계에 있음. 헌법과 법률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을 적정가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의 ‘분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용산 참사는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불도저식 도시개발 사업의 종말을 알리는 시대적 징후였음. 무엇보다 도시개발의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한편 대책이 없는 강제철거가 금지되어야 함.

세부 추진 방안

1) 투기주택 매입(수용)제도 도입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통계조사 및 세무조사 즉각 실시
- (단기)비 자가주거 주택에 대한 수용계획 마련 및 법 개정
- ‘공토법’상의 ‘비주거용 주택의 수용 절차’ 명시
- ‘임대주택법’상에 수용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관리 방안 명시

☞ 수도권외의 중소형 주택 우선, 1호당 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편성

☞ 국민주택기금 우선 활용, 국민연금 투자 계획에 반영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 무주택자의 주택대출을 우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매입하여 공공대출로 전환
- 자가 소유자의 경우, 대출비율이 집값의 50%를 상회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대출을 인수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 유도
- 장기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제도를 정책금융으로 일원화하여 공공관리 강화
- ‘주택대출인수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주택대출에 대한 공공인수의 근거를 마련함.
- 현재의 주택금융공사를 신용보증 기능보다는 직접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신규 건설되는 주택청을 통해 사회주택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주택대출 인수채권을 발행.
- 주택대출 주택의 사회주택화를 통한 자산화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3) 전월세 이율의 소득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총 3차례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실패하였음. 이는 공급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었기 때문임.

- 113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무주택조건 폐지)
- 211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 조정(금리 인하 등)
- 818 전월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면세, 주택재개발 사업시기 조정, 임차인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진보신당은 이런 전월세와 관련하여, 이를 ‘전년연동제’가 아니라 ‘소득연동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함.
-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변동률에 기반한 전월세 상한기준 마련
- 1가구 10가구 이상자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임대주택법’상에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규정 명시
- ‘주택법’상에 소득 연동형 전월세 상한제의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함.
- 용산 참사 재발 방지 법안을 목록화하여 일괄 발의, 제정하는 형태로 용산 참사의 후속 조치 완료
- ‘도시개발법’ 개정 : 모든 도시개발의 공공 통제 강화, 선 대책 후 사업 추진의 원칙 명시
-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실거주자의 동의 없는 주택의 퇴거 조치 및 철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5) 거주자 중심의 주거 재생 : ‘주거관리형 주택개선사업 강화’

-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재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주택법’ 개정 : 주거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 ‘주거지재생법’ 제정 : 기존의 정비사업에 포괄되지 않는 제3섹터 방식의 주거지 재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물리적 개량과 사회적 인프라 지원에 대한 명시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복지의 확대

현황 및 취지

- 현 복지제도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나머지 복지”로 조건이 까다로워 수백만에 이르는 실질적인 빈곤층이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며,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해서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수혜층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구시대적 제도(선별적 최소 복지)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는 삶의 위기를 대응하지 못함. 선별적인 최소 제공 복지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며, 부동산, 금융, 교육, 소득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더욱 크게 일어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빈곤과 위기의 삶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 보편적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특히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 생활형 빈곤을 해소하고, 계층간 및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임.

세부 추진 방안

- 1) 진료비 상한제 :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 원이면 OK
 - 질병에 걸린 환자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여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급여(건강보험 적용 대상)로 편입.
-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 하나마다 돈을 지불해주는 방식(행위별 지불보상제도, 행위별 수가제도)을 질병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포괄적 지불보상제도, 질병당 수가제)으로 전환.
- 질병 자체보다도 환자에 중점을 두고 예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

2)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신규실업자(청년) 및 장기 실업자 대상 실업부조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최저임금의 90%의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 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을 없앴.

3) 청년실업부조 :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와 신규실업자(청년)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급여 지급

4) 노인기초연금

- 비정규직을 포함해 연금 미가입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의 5%인 급여액(월 1인 91,200원, 부부 145,900원)을 월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현황 및 취지

- 4대강 사업은 영원히 준공되지 않을, 아직도 목적이 불분명하고 온갖 역효과만 낳는 엄청난 범죄 행위임.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등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모래가 재퇴적되고 보의 균열과 누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명칭과 내용을 위장하여 추진 하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수반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검토도 거치지 않았음. 때문에 이 사업은 단지 '정책적 판단'이나 오류의 문제가 아닌 국정문란과 국토파괴 행위로 규정되어야 함.
- 차기 정부부터 4대강 복원이 큰 과제가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함. 한반도대운하 때부터 이를 입안하고 정책 논리를 제공하고 선전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조사해서 처리해야 함.
- 아울러 새만금, 평택미군기지, 강정해군기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함.

세부 추진 방안

- 4대강 특별법(진상 규명, 복원 시행 근거)을 제정하여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사업 입안과 주도, 상위 법령 위반과 편법,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에 대한 조사와 복원 방안 마련
-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한강부터 잠실과 신곡 수중보를 헐고 4대강의 16개의 불필요한 보를 철거하여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모두 독일 이자(Isar) 강 모델로 복원
-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 강정마을 해군기지 중단, 생태 복원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하고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지역 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네덜란드 PKB모델) 도입

※ 네덜란드의 PKB(Key Planning Decision)는 국가의 도로사업이나 토지 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 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립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초기 보고서를 말함. 지방정부가 상세히 수립하는 국토개발계획은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발계획이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립됨.

정치 행정자치 평화/외교

사법 인권

경제/금융 조세/재정 건설/교통

농업 노동

복지 주거 보건

에너지/환경

교육 문화

미디어/정보통신 과학기술

여성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수자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정치 대수술

전면적 비례대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책임 강화! 시민은 의회활동 참여 확대!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
국정문란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약 :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정치제도 대수술 !

1. 소선거구제 폐지! 전면적 비례대표제!
2.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3.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책임 강화! 시민은 의회활동 참여 확대!
4.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 및 임기 중 사퇴 선출공직자의 책임 강화
5. 연합 정치의 법적 보장을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
6.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력 강화
7.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8.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
9. 국정문란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민들의 삶과 가장 무관해진 한국 정치

정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한국의 정치는 국민과 가장 멀고 국민의 삶과 가장 무관한, 힘 있는 이들의 나눠먹기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에도 국회에도 하소연할 바 없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지금의 대의정치가 허울뿐인 제도임을 웅변하였습니다. 핵발전 정책에서, 강정 해군기지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 국민이 실제로 참여할 길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년 혹은 4년마다 몇 주씩만 유권자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이 상황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보수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보수정치의 카르텔을 극복하려는 진보정당의 존재는 가진 자들이 만든 정치제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불통가카’를 만들었고,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은 매번 담합과 날치기를 반복하며 국민의 관심과는 전혀 무관한 무능한 국회를 낳았습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참정권이 여전히 낡은 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과도한 기탁금과 근거 없는 정치참여 연령 제한, 주민과 밀착하는 지역 정치활동을 엮매는 정치관계법도 고쳐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나 정치의 주체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결과적으로 왜곡하고, 정치 여론과 현실 정치세력 분포를 괴리시키는 낡은 정치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진보정치가 도약하도록 연합정치를 활성화하고, 민의의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보수 양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견제하도록,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의회활동 참여 통로를 더욱 넓게 확보하고, 의회로 제한되지 않는 참여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나 정치의 주체이고, 모든 정치인이 언제나 심판받고 교체될 수 있는 정치,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현황 및 취지

-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각종 정치 부패 및 퇴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마땅히 다뤄야 할 국정 현안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전념하게 만들어 국회, 지방의회 모두 제 기능을 못하게 함.
- 반면 현존 체제 중 가장 진보한 사회라 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는 모두 소선거구제 없이 전면적 비례대표제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 이들 나라 외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추진 방안

- 전국을 대권역으로 나누고 최소 의석을 할당한 후 인구 비례에 따라 나머지 의석을 배분(단, 제주도는 5석 내외의 중간 규모 선거구로 독립).
- 정당은 권역별로 각 당의 후보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지지 정당과 해당 정당 후보명부 내 선호 후보자 1인을 선택(따라서 소선거구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은 여전히 보장됨).
- 정당득표율로 당선자 수를 정하고, 명부 내 각 후보의 득표율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
- 각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과 최대한 근접시키기 위해 일정 수의 여유 의석(2차 배분 의석)을 설정하고 각 정당의 최종 의석수를 조정(스웨덴 방식).
-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소선거구가 아니라 권역별 대선거구로 부여되며,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직능 대표성이 대폭 강화됨.

[참고] 스웨덴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 : 전국을 30여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349석의 1차 배분 의석을 배분. 유권자는 지지 정당에 투표하고 동시에 해당 정당 후보명부 중 선호 후보 1인에게 투표. 총 39석의 2차 배분 의석을 통해 의석수를 추가 조정하여 각 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과 최종 의석수를 최대한 근접시킴.

정책 2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실시

현황 및 취지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전체 유권자 대비 대통령 당선자 득표율은 30% 안팎에 그침.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성이 극히 취약한 것.
- 또한 결선투표가 따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양당 구도의 어느 한편을 선택하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보수 양당 구도를 온존시키는 역할을 함.
- 미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추진 방안

-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로 결선투표제 실시.
- 헌법 제67조 5항이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헌법 개정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음.

정책 3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책임 강화! 시민은 의정활동 참여 확대!

추진 방안

- 의원의 회의 참석에 비례하여 세비를 지급.
-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범위를 제한하여 비리 정치인 보호와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함.
- 국회의원 세비, 선거구 획정, 특별법안 논의에 시민단체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국회법으로 법제화하여 상설 운영.
-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시민이 참여하여 검증.

-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회윤리심의회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모든 공간을 시민공원 및 광장으로 재편하여 개방.
- 국민정책제안제 : 청원심사소위 활성화를 위해 90일 이내 심사 의무화.

정책 4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 및 임기 중 사퇴 선출공직자의 책임 강화

추진 방안

-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을 금지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환수.
- 임기 종료 120일 전에 사퇴한 선출공직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대통령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음).

정책 5

연합 정치의 법적 보장을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방안

- 등록된 2개 이상의 정당(자격을 갖춘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의 연합정당을 결성하여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 요건을 갖추어 연합한 정당은 기존의 정당과 동일하게 취급.

정책 6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력 강화

추진 방안

- 국회에 대한 국가 권력기관의 정보 및 서류 공개 의무 강화.
- 예결위원회 상임위화로 전문성 강화. 일상적 예산결산 활동으로 국가 재정 운영 효율화, 합리화.
-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요건 완화 : 본회의 의결(제적 의원 1/4)에서 상임위 의결로 완화.
- 감사원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상시적인 회계감시체계 확립.

정책 7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추진 방안

- 교섭단체 폐지를 통해 교섭단체의 의회 운영 독점권을 해체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를 운영하도록 함.
- 정보위원회 독점 폐지.
-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 납부율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정책 8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

추진 방안

-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및 전자, 이동, 사전 투표제 도입.
-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기부 등 정치활동 전면 허용.
- 장애인, 여성 등의 정치 진출 장벽 해소. 소수자 우대 정책 확대.
-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보장,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 보장.
- 정당 기초조직 활동과 정당후원회 허용. 정치자금의 소액 다수 후원을 활성화하여 정당정치의 투명성 제고.

정책 9 국정문란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추진 방안

- 론스타 : 외환은행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실시
- 쌍용자동차 : 상하이차 기술 유출 방지 및 쌍용자동차 폭력 진압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저축은행 비리 :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특검 실시 및 관계자 처벌
- 자원 외교 비리 : 주가조작·특혜·비리 자원 외교 진상 규명
- 종합편성 채널 : 종합편성 채널 선정 특혜·비리 국정조사 실시 및 미디어랩법 개정

권한, 자원, 책임의 실효 있는 지방 분권

- 행정에 주민참여 강화
-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
- 실질적 분권화 추진
- 공기업 경영평가 전면 혁신
- 지방세에 부자감세 방지



공약 : 주민 참여와 분권화로 연대와 공존 틀거리 만들기

1. 행정에 주민참여 강화
 - 주민참여기본법 제정
 - 참여예산 및 참여행정의 실효성 향상

2.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상향
 - 지방 이양 사무 재환수

3. 실질적 분권화 추진
 - 행정안전부 축소
 - 지방행정청 설치하여 지방분권 지원
 -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재정비

4. 공기업 경영평가 전면 혁신
 - 경영평가 대신 운영평가 중심으로 재편
 - 경영에 노동자 및 시민참여 보장

5. 지방세에 부자감세 방지
 - 지방세 감면 의무협의제도
 - 지방세 연동 교부제도 도입

책임회피형 지방분권, 신종 관치의 폐해 점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야말로 지역의 고유성과 시민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확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지방분권은 권한을 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방정부에 이행하는 책임회피형 지방분권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2005년 지방사무의 이양은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권리를 지방정부에 일괄 위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상적인 지방분권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가 사실상 지방정부의 종속성을 강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세 감면율에 비해 지방세 감면율은 2배 이상 높은데, 이는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방세를 편의적으로 감면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는 다른 설립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사실상 공공부문의 노동조건 불안 및 대시민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밀어붙인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과 김정현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같은 ‘신종 관치’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세계화에 저항하는 주민의 지방공동체를

진보신당은 현행 지방분권제도가 독립적인 재원의 보장, 균형 잡힌 사무의 이양, 그리고 자체적인 책임성의 강화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진보신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주민에 의한 지방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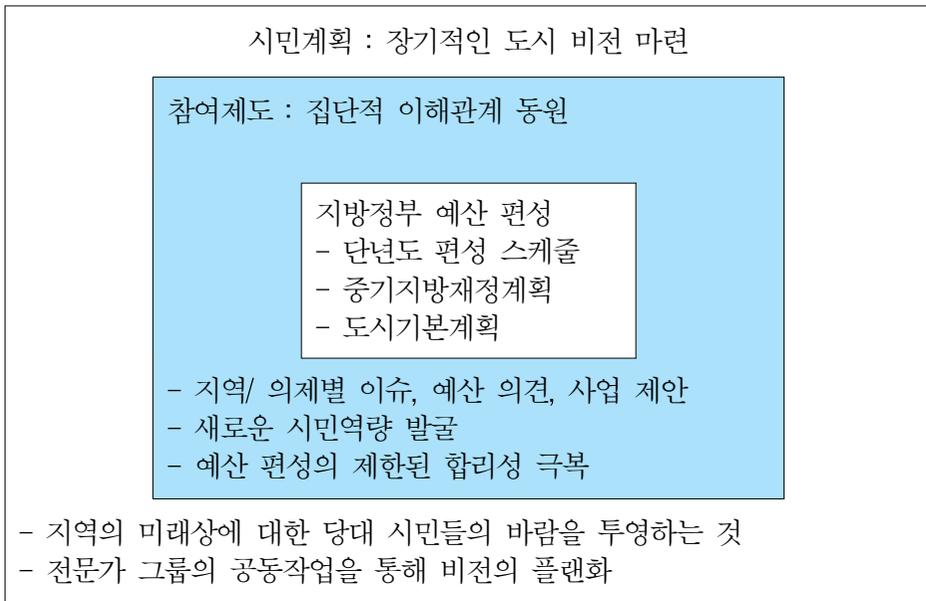
현황 및 취지

-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동력을 갖게 되었음. 2012년 1월 현재 16개 광역자치체 중 15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5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취약하여, 사실상 연중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직적 참여를 통해서 시민 역량을 강화한다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제도 도입과 운영에 관한 많은 부분이 행정 입법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는 별도의 ‘주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참여예산 외에 주민참여계획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 방안

- ‘주민참여기본법’ 제정 : 진보신당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한편, 참여예산 및 참여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그림_ 진보신당의 주민참여제도 구상안



국세/지방세 조정 + 지방 이양 사무 환수

현황 및 취지

- 지난 20년간 지방분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1996년 재정자립도 69.6%에서 2011년 51.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매칭펀드 방식의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사업 이양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양 사업의 지방비 비중은 2004년 52.8%에서 2009년 68.6%로 급증, 2011년 이양 사무 90개 가운데 52개가 사회복지 사무이나 오히려 국고지원 비중 감소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0년 기준 지방세 비중은 총 조세수입 대비 21.7%이지만 지방정부에 의한 재정지출비중은 전체 재정지출 대비 42.8%에 달함.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재정사용액 비중은 4.2%나 증가하였음. 이는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줌.
- 진보신당은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세 중심의 조세 구조를 개선하고, 다음으로 단순 위임사무 중심으로 이양된 기존 사무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안함.
- 우선적으로 현재 조세 구조 중 지방소득세의 경우, 현재의 부가가치세 5% 수준에서 중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되, 이 중 절반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조정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9.2조 원).
- 또한 지방 이양 사무 중 국가 단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복지사무의 경우, 일괄해서 국가가 사무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함(2005년 이양된 67개 복지사무 중 3개 생활시설사업-노인, 장애인, 정신-을 우선적으로 환수함).

추진 방안

- [시급] 2005년 이후 지방 이양 사무 중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에 포함되는 복지사무를 중심으로 재환수 사무를 선정, 시행.
- [단기] 국회 내에 ‘세원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 : 세원 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지방 이양 사무의 제한 규정 및 환수 규정 마련.
- 지방 이양 사무 중 복지사무(67개) 전체 재환수에 소요되는 국고는 3,567억 원, 우선적으로 3개 생활시설 환수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1,980억 원으로 현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해 확보 가능(예산정책처, 2011.).

행정안전부 축소, '지방행정청' 설치

현황 및 취지

- 1999년 법 제정을 통해서 실시된 지방분권정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2,746개의 지방사무가 이양 확정되었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1,440개 사무가 이양 완료된 상황임.
- 이와 같은 지방 이양은 2008년 법령을 전면 개정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양의 폭과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에 의한 분권이 단순 집행 사무의 이양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쉽게 이양할 수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임.
- 문제는 이렇게 사무는 지속적으로 이양되면서도, '총액인건비제도'와 같이 공무원 고용과 인원을 중앙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사실임. 특히 재원이 분배되지 않는 사무 이양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악화시켜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은 분권의 목적과 취지가 지역의 행정능력 강화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행정행위가 가능하고, 나아가 지역 여건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 조응하는 지역 행정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사무를 축소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방 이양이라는 목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 정부가 2011년 발표한 노동사무의 지방 이양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할 근로감독, 산업안전 사무를 포함하고 있었음. 반면 경찰 등 안보관련 기관은 아예 지방 이양의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진보신당은 지방정부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안전부의 위상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어떤 지방분권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함.

추진 방안

- 지방정부의 규제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방분권의 진행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행정청’을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 : 현재와 같이 자치사무를 예시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지방사무의 역할을 강화함. 이와 함께 기존의 위임사무를 법정수입사무로 재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임.
- ‘지방분권특별법’ 전면 개정 :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행정청을 분리 설치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과 관련된 로드맵을 명시함. 사무 이양 + 자원 이양의 연동 규정을 포함함.
-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재정비 : 현재와 같은 하향식 인건비/총원 관리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심의하는 상향식 운영 방안 마련.

현황 및 취지

-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의 유형에 대해 분류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운영평가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런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의료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평가 방식은 각각 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5가지 유형-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관리형), 기타공공기관-이라는 단순한 분류법을 통해서 애초의 설립목적보다는 단기적인 성과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 평가방식은 모든 정부조직에 대한 평가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타임오프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확대를 위주로 한 공공기관 운영을 강제하였음.
- 결국 민간기업과는 다른 설립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조직의 각 기관이 민간기업에 준용한 평가를 통해서 시민참여, 행정필요의 충족 등 기본적인 문제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런 평가와 함께,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볼 수 있었던 ‘관치’의 부활이 사실상 경영평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임. 실제로, 정연주 KBS 전 사장의 경우 배임으로 김정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투자손실이 해임의 주된 근거가 되었음.
- 특히 그간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과의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재편되면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비민주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음.
-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단순한 양적 평가에서 공기업 설립의 목적에 근거한 질적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 및 노동조합 등 직원의 경영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안

- 공기업이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대안적인 평가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공기업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공공성도 극대화해야 함.
-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존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경영평가 대신 운영평가 중심으로 재편, 경영에 노동자 및 시민참여 등 보장, 평가기관의 공개적인 소명 보장.

지방세 감면 의무협의제도, 지방세 연동 교부제도 도입

현황 및 취지

-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을 해왔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세 감면의 위험성을 지적해왔음.
- 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연도로 하였을 때 2009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 규모는 900조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함.
- 이러한 국세의 감면은 교부금 및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되는 재원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문제는 이런 감면의 효과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데 있음. 이는 2010년 기준으로 국세 감면율보다 지방세 감면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함(지방세 감면율은 22.3%에 달해, 사실상 전체 지방세의 1/4가 감면되고 있는 형편임).
- 특히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방세 감면의 경우는 심각한데, 이는 재원의 당사자인 지방정부가 감면과정에서 어떤 구속력 있는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 현황을 보면 매년 부동산 부자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취득세의 감면 규모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지방세 감면의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재정부실로 이어지고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자감세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1년 말 현재 경기도의 경우에 18개 지방정부가 재산세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개 지방정부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인 것임으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해당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해당 상한제가 미 실시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사실상 간접적인 재정지원효과가 발생하는 불평등이 생김.
- 따라서 진보신당은 지방세에 대한 부자감세에 지방정부가 심의권을 갖도록 하며, 지방정부 스스로가 시행한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추진 방안

- 조세감면 중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에 따른 영향평가 및 심의권을 가지는 협의기구를 국민총리 산하에 설치하며, 지방세 상한제 등 스스로 지방세수를 제한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미실시 지역에 비해 교부세/금 지급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시행함.
- 이를 위해 지방세감면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총리 산하 지방세감면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출에 지방세 감면 연동요소를 반영함.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체제 구축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중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상호군축 선도와 대체복무제 개선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녹색평화외교 추진



공약 : 남과 북이 함께 누리는 안전과 평화, 이를 위한 연대

1.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중단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
 - 구름비바위 생태 복원, 평화의 지역 공동체 복원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의 새로운 일괄 타결 추진
 - 서해상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에너지 평화 협력 프로젝트
3. 남북 상호군축 선도와 대체복무제 개선
 -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상호군축 추진
 - 방어적 무기체계로 전환, '방어적 방위' 원칙 확립
 - 대체복무제도 확대, 모병제 전환 준비
4.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무효화
 -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5. 녹색평화외교 추진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전 지구적 핵군축과 군비통제 조약들의 준수 국제 연대

평화를 책임지지 못하는 나쁜 정부

평화는 모든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평화를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였고, 남북한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만 유발해왔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활용될 군사기지입니다. 구럼비바위를 깨고 사람들을 끌어내면서 강행되는 폭거는 국가에 의한 범죄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한국만의 평화 비전과 구상 없이 한미동맹 위주의 군사전략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그럴수록 해법은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영속적인 평화여야 합니다.

녹색, 평화의 책무 다하는 외교로 전환

이제는 군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안보’라는 단어 뒤에 가려졌던 폭력과 억압을 날날이 직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군대의 존재 형태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만의 경제성장, 한국만의 발전을 위한 외교는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안위도, 지속가능한 지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수출하고 ‘국격’을 운운하는 허장성세 대외과시용 외교를 그만두고, 진정한 녹색과 평화를 위한 외교와 국제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현황 및 취지

- 제주 강정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는 민군 복합미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활용될 군사기지임. 대양 해군이라는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목표를 위해 자연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공사를 강행하여 극심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임.
-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근 국가의 군사력을 유인 자극하여 긴장만 높이게 되며, 특히 중국의 대응 무장 강화와 견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이미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듯, 대형 크루즈선 정박이 불가능하고 천혜의 자연생태계인 구름비바위 파괴를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

추진 방안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 폐기.
- 구름비바위 생태 복원, 평화의 지역 공동체 복원.

현황 및 취지

- 북한의 핵 폐기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이명박 정부 아래 극도로 위축되었던 남북대화를 시급히 복구해야 함.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조건 없는 남북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최근 한반도 긴장과 군사적 충돌의 초점이 되어온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할 제안을 전향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법상으로 논란이 되어 온 NLL을 고집하지 말고, 공동 평화어로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안

-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의 새로운 일괄 타결 추진
- 일괄타결과 함께, 6자 회담의 틀을 동아시아 핵감축을 위한 정상회의로 전환하고 중국 핵무장 감축, 일본 핵무장 차단 등을 추진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 개성공단 임금 지불방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와 남북 노동협약 체결
-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 정전체제의 상징이며, 가장 극적인 군사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DMZ 공간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감. 임진각과 도라산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원, 평화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남북 공동관리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에너지 평화 협력 프로젝트. 개성공단에 재생가능에너지 모듈 공장 설립 지원

현황 및 취지

- 남한과 북한 모두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복지 예산 확충과 인민 생존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호 벼랑 끝 군비 경쟁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 조건부 상호 군축보다 여유 있는 측의 선도적 군축 의지가 현실의 군축과 평화 향상을 촉진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들이 증명하는 바임.
-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비대해진 육군 사병 위주의 군대체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 해 수십 만 명의 젊은이를 무용한 단순 임무로 묶어두면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물론 개인 인권 침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매년 많은 청년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선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감군과 대체복무제 확보 요구가 높은 상황임. 대체복무제를 과감히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함.

추진 방안

- 평화의 과실이 한반도 민중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상호군축 추진.
- 무기체계 역시 방어적 무기체계로 전환.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ce)’ 원칙의 확립.
- 국무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군축실 설치.
-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대체복무제도가 병역의무 도피처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마음 편히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함.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사면 실시.
- 사병 임금을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 검토.

현황 및 취지

- 한미동맹은 방위조약과 외교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지 않는 한, 이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틀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특히 동북아시아 체제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한미동맹에 얽매인 현재의 전략적 접근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약화하고 국가의 실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한 안보전략은 이미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싼 충돌에서 보듯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낳고, 이를 빌미로 하여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음. 외교정책 역시 미국을 통한 외교에서 벗어나 한국 외교의 독자성을 높여야 자원외교나 통상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추진 방안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무효화
- 주한미군기지 이전 합의에 대한 전면 재협상 추진
-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확산방지구상(PSI), 나토 글로벌파트너십 참여 반대

현황 및 취지

-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반녹색, 비평화 외교에 다름 아니었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얼리 무버(Early-mover)’를 공언하였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실제로 노력한 것은 전무함. 오히려 4대강 사업 등 자연파괴 사업을 감행하는가 하면, 해외자원개발에서 부패 사건을 일으키고, 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며 특전사 파병을 약속하기까지 함.
-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의 부담도 감수해야 함. 동아시아 탈핵 에너지 협력,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을 위한 지원, 과감한 군축을 위한 노력을 외교정책의 앞 순위에 놓아야 함.

추진 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 지구적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법치의 완성, 정의가 숨 쉬는 사회를

- 악법 철폐, 기본권의 보장
- 검찰 제자리 찾아주기, 검찰권력 해체
- 헌법소원 주권자배심제
- 로스쿨 폐지 및 변호사시험제도 재설계
- 법조유사직역 전문가에게 소송대리인 권한 부여
- 소득 수준에 따른 일수벌금제 도입
- 언론 자유를 위한 형법 개정



공약 : 사법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법치주의의 완성

1. 악법 철폐 및 사형제 폐지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사형제 폐지

2. 검찰에게 제자리 찾아주기

- 검찰과 법무부의 실질적 분리, 검찰체계 이원화
- 중수부 및 공안부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감시 시민 옵부즈맨 제도 및 업적평가공개 제도 도입

3. 헌법소원 시민배심제 도입

4. 로스쿨 폐지 및 변호사 시험제도 재설계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폐지하고 법학부 정상화
- 일정 수준의 응시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도록 변호사시험 변경

5. 법조유사직역 변론참여

- 법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로 하여금 법정에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론할 수 있도록 보장

6. 소득 수준에 따른 일수벌금제 도입

7. 언론 자유를 위한 형법 개정

악법의 존재, 검찰의 전횡, 퇴보하는 사법개혁

헌법 위의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박탈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사형제 역시 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권력독점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현 정권 내내 추진하였던 검찰개혁 논의는 거의 유명무실화 된 상태입니다.

사법민주화는 그 당위에 비추어 진척의 정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소위 ‘도가니’ 사건 및 ‘부러진 화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사법개혁 중 상당한 내용이 그 의미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제도는 시행된 지 3년 만에 이미 그 효용을 의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법제, 보다 민주적인 사법을 통한 정의의 회복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검찰구조를 혁신하고 올바른 검찰의 지위를 찾아줌으로써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심리와 평결에 시민 배심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법민주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으면서 사회적으로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법조 인력 충원 구조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 유사직역의 전문가들에게 소송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법조인을 대폭 늘리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의 폐지 및 개정

현황 및 취지

- 17대 국회에서 폐지가 논의되던 국가보안법은 당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수구 세력의 총공세로 인하여 폐지되지 못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는 아예 본격적인 폐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최근 박정근 구속사건 및 왕재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최악의 반인권적 법률로서 헌법 위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상황임.
-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아직도 존재하면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의 근원이 되고 있음.

추진 방안

-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함.
-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함.
- 형법상 존치되고 있는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인권국가로 거듭남.
- 균형법을 폐지함.

과도한 권력독점기관으로 변질된 검찰을 본연의 업무로 되돌려줌

현황 및 취지

-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지만 권력의 요구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검찰.
-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검찰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보루로서 검찰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음.

추진 방안

- 법무부 내 검찰국 폐지와 검찰의 법무부 요직 배제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의 실질적 분리.
- 대검, 고검, 지방검찰청의 3중 구조를 해체하고 중앙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찰체계 이원화.
- 중수부 및 공안부 폐지.
- 경찰수사권 독립으로 검찰수사권 제한 및 재정 신청 범위 확대를 통한 기소독점권 약화.
-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 검찰 감시 시민 옴부즈맨 제도 및 업적평가공개 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검찰이 포함되도록 하는 일종의 수사관사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며, 항간에 논의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는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헌법재판소의 각 심판 중 특히 헌법소원심판을 주권자 배심제로 시행함

현황 및 취지

- 헌법재판소의 각 심판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그중에 특히 소송당사자가 국가기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심판이 헌법소원심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의 한 형식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제정권자로서 국민이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에 개입함으로써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 정비에 일정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추진 방안

-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20~30명의 주권자 배심에 의해 진행하도록 함.
(※ 특별한 요건이라 함은 사안의 성격상 소유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정치적 사안, 사회권적 사안 등이 되어야 할 것임.)
- 배심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민참여재판’의 기준을 준용함. 심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여 집중 심리 및 배심원 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이로써 평결을 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법 제5절에 주권자 배심제에 관한 사항 삽입)

변호사 시험 구조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법조 인력 확보

현황과 취지

-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여 사학법 개악과 맞바꾸기로 탄생한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 제도는 그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예상하였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학비와 부대비용이 소모됨으로써 학교 및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로스쿨 이외의 학제에 과정을 둔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
- 사법고시제도가 운영될 때 발생하였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2중, 3중으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음.
- 제1차 변호사 시험은 법무부와 로스쿨 간의 합의를 통해 졸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조정은 불가능할 것임.
-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는 사법고시의 폐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는 사법고시의 한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질의 법조인 배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배치된 채 시행되고 있음.

추진 방안

- 로스쿨 폐지하고 법학 학부교육을 정상화하도록 함.
- 현행 변호사 시험을 완전한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응시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변경.

각 직역 전문가를 통해 법조 인력 충원, 정확한 판결에 기여

현황 및 취지

- 현행 변호사법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이외의 다른 직종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법률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직역의 전문성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소송에서 전문적 변론을 받지 못함에 따라 소송당사자의 권리까지 침해되고 있음.
- 각 직역의 전문가가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야별 소송에서 보다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조 인력을 과도한 비용과 노력 없이 즉시 충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추진 방안

- 소액심판 등에 대해 법무사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노동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노무사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업 회계 등의 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회계사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조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세무사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변리사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정책 6 소득 수준에 따른 일수벌금제 도입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벌금 부과

현황 및 취지

- 현행 형법의 벌금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써 죄의 경중이나 피고의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비록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양형에 의하여 판사의 판단에 따라 그 경중이 달라지기는 하나, 판사의 주관에 개입되는 바가 많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감하는 처벌의 정도가 그 경제적 상황 등에 의하여 현저히 달라지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음. 그 결과 같은 액수의 벌금에 처해지더라도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며 벌금의 액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계층의 사람에게는 처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부과함으로써 형벌의 효과를 담보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

추진 방안

- 벌금형의 기준을 일수(1일~360일)로 산정하고 죄질과 책임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하여 판결하도록 함.
- 매 1일 단위로 일정액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여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 관계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일 일수 정액을 정함(하한은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혹은 하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벌금 미납 혹은 납입불가의 상황이 있을 때 벌금형의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으로 대체토록 하며, 경제적 약자의 경우 대체자유형 혹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도록 함.

1)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실’이 적시 유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 특히 본 규정은 그 취지가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악용하여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비록 의견과 감정의 표시가 과도하여 그 상대방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의 수단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수치심 등의 감정 손상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되며, 특히 국가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사회적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 현행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력’이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다수의 세 과시가 폭력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다른 형법의 규정

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며(제25장 상해와 폭행, 제30장 협박, 제36장 주거침입, 제42장의 손괴에 관한 죄 등), 굳이 업무방해의 원인 중 하나로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을 둔 것은 다수의 군집 자체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현실에서 약자인 노동자나 소비자가 강자인 사주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항의 또는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위력’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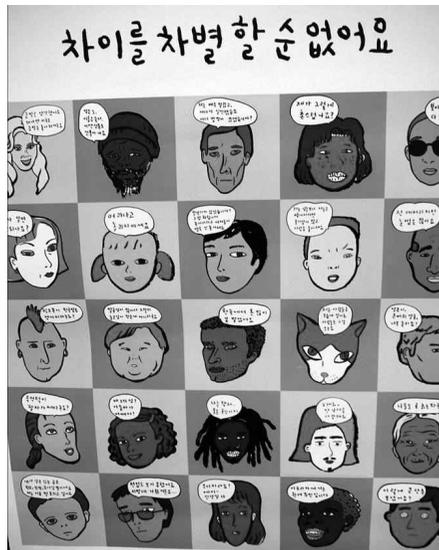
삶의 정치, 인권의 정치를!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이주민/난민 인권보장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보장



공약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
-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세상

1. 모든 차별의 철폐

-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2.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

- 동반자법 제정
-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권 및 주거권 보장

3. 이주민/난민의 보호와 권리보장

-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성
-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보장
- 적절한 다문화정책 수립
- 난민 인정 및 수용 확대

4.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보호

- 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수립
- 감염인 노동권 보장
- 감염인 출입국 자유 보장
- 강제 검사 등 차별 금지

차별과 박해가 조장되고 용인되는 상황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우려할 정도로 축소되면서 차별 철폐를 위한 국가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현실을 극복하고 관계의 정치로 이어지는 인권정책

무엇보다도 현 정권 들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제를 신속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소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중점을 두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난민 및 HIV/AIDS 감염인 등 배제되고 잊힌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차별 일체를 금하고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현 18대 국회에서 역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음.

추진 방안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의 정밀한 조사와 개정 혹은 폐지.
-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함.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함으로써 인권정치, 성정치를 향상

현황 및 취지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소외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특정 종교와 결합한 세력에 의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 및 폭력적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보장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소수자는 혐오세력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여지가 없는 상황임.
- 18대 국회 들어와서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는 17대보다 훨씬 협소해진 상태임.

추진 방안

-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의 가족구성권 등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 특히 의료권 및 주거권 등 당장 필요한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중점.
(※ 동반자법 제정,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민법의 친족편 일부 개정)

이주민/난민 관련 제도 정비로 배제된 자의 정치를 위한 출발점 구축

현황 및 취지

-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이방인이거나 혹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정도로 취급되고 있음.
- 특히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써 한국은 난민 배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
- 이주민/난민은 사회적으로 가장 배제된 사람들이며 잊힌 존재여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음.
- 탈배제, 만남, 관계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진보신당의 기초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권정치의 장이 될 수 있음.

추진 방안

-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건을 조성함.
-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보장.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75)’,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2003)’,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2006)’ 등 이주민 관련 각종 국제조약의 비준)
- 이주노동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 이주자 원국적의 언어, 문화 등을 보장하는 다문화보장 특별법 제정.

감염인의 권리 보장, 차별 방지 위한 법제도 정비

현황 및 취지

- 2010년 유엔(UN)은 2Zero(신규감염 제로, 에이즈 관련 사망 제로, 차별 제로)라는 비전을 제시, 2015년까지 15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료제 공급을 약속하는 소위 '15by15' 발표.
-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강제 실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한미FTA 등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를 폭력 진압하는 등 국제적 경향과는 반대로 감염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음.
- 감염인은 정부로부터 직접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의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HIV/AIDS 감염인은 특정 종교집단에 의하여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추진 방안

-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법제도 정비.
- 감염인의 노동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특정 부문의 강제 검사 등 차별의 금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전면적 개정.

금융자본 규제, 경제 공공성 강화

- 금융개혁 : 나사 풀린 금융자본 길들이기
- 시장개혁 : 함께 번영하는 공존의 경제
- 재벌개혁 : 그들이 말하지 않는 3가지
- 민생개혁 : 지갑은 무겁게, 소비는 가볍게!



공약 : 2012년을 한국 경제 리빌딩의 원년으로!

1. 금융개혁 : 나사 풀린 금융자본 길들이기
 - 금융 합리화 :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 금융 안정화 : 금융리스크 관리기금 조성
 - 금융 투명화 : 금융범죄 감시망의 대대적 혁신

2. 시장개혁 : 함께 번영하는 공존의 경제
 - 중소기업 전문화 : 21세기 신성장산업 10종을 중소기업 육성 업종으로 지정
 - 중소기업 안정화 : 협동조합 네트워크 개발을 통한 중장기적 번영
 - 소상공업 안정화 : 자영업을 건강하게 다이어트 시키다!

- 3 재벌개혁 : 그들이 말하지 않는 3가지
 - 재벌을 규제하면, 기업 경영이 절로 민주화 된다? Not Really.
진보신당의 답 : 단일 이사회 제도 폐지 →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
 - 재벌을 규제하면, 재벌 독점 구조가 해체된다? Not Really.
진보신당의 답 : 노사공동결정 시스템 구축
 - 재벌을 규제하면, 건강한 투자가 늘어난다? Not Really.
진보신당의 답 : 장기적 투자 전략을 위한 금융 산업 협력시스템 구축

4. 민생개혁 : 서민의 통신비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절감
 - 통신비 절감 : KT를 공기업으로! 이동통신산업 혁신
 - 카드 수수료 절감 : 수수료 0% 공영카드회사 설립 + SSM허가제 연내 처리

한국의 경제 상황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바로 1980년대 런던과 뉴욕의 금융가에서 생겨난 금융자본주의라는 기형적 경제체제입니다. 금융 위기 발발 후 가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금융자본의 거품이 터지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막대한 연쇄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은 경제의 재편(Rebalancing)을 외치며 고부가가치 창출형 실물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경제의 재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기회의 평등조차 철저히 무시당하였던 재벌 중심 약탈경제의 악습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입니다. 1993년 문민정부 시절부터 2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시혜성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정체시킨 여야 2당은 집권 정부로서 실격입니다.

오늘날 국내 경제가 OECD 10위, 수출 8위, 무역 규모 8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은 50여 년 동안 서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정작 보상 받아야 할 서민은 OECD 불평등 지수 20위라는 우울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 정책 방향

우리 경제는 키코(Kiko) 등 악성 파생상품들에 기인한 연쇄적 파산과 해외기업의 선물 주가 조작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유일한 개혁 통로는 금융자본의 규제를 발판 삼아 실물경제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기업 경쟁의 틀을 재편하고 공존/공영의 경제를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안정화와 자영업의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민 가계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통신비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요구됩니다.

정책 1 나사 풀린 금융자본 길들이기

금융 거품 제거, 건강한 실물경제의 토대 마련

현황 및 취지

- 현 위기의 근원인 금융자본주의 모델은 통화의 유동성 조절 및 확보라는 금융의 일차적인 목적을 완전히 넘어서, 실물이 아닌 금융자본의 가치를 담보로 여러 가공의 상품을 만들어내어 부를 증식하는 체제임.
- 세계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선 후 금융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목도하게 되었고, 2007년 이후에는 급기야 금융자본의 총량이 세계 GDP 총량의 3배를 넘어서는 현상에 직면하게 됨.
- 금융은 화폐유통의 유통유일 뿐,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과 중개수수료 등 기존에 창출된 자금의 유통을 통해 70-80%의 수익을 얻는 금융사는 스스로 중장기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함. 호황 때는 수십 억 내지 수백 억 규모의 보너스를 남용하고, 불황 때는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거나 서민/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인상하였던 그간의 금융업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함.
- 금융 위기를 한층 심각하게 겪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영국/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은 이미 50% 이상의 금융 보너스 과세안(Bonus Levy)을 적극 검토 중. 특히, 유럽의 경우 각국의 보수당 역시 보너스 상한제 및 과세안에 동의를 표하고 있음.
- 금융선진국을 표방한 한국, 그러나 실상은 금융범죄 선진국임. 감시망의 질적 확대를 통해, 기업형 금융범죄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현행 20% 미만의 처벌 수준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안

- 금융 합리화 :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 금융 안정화 : 투명하고 지급 기준도 결여한 보너스 체계를 합리화하여, 각 금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재투자. 미래 금융위기 시, 고용보전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함. 금융사 및 금융 계열사 임원 보너스 공개 의무화 + 월 급여 대비 100%

이상의 금액에 대해 50%의 목적세 부과. 수거된 세금은 미래의 금융위기 시 구제금융 자금(40%)과 노동자들의 고용보전 기금(60%)으로 쓰임. 기금의 회계는 연단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 금융 투명화 : 금융범죄 감시망의 대대적 혁신.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부관료, 민간인사, 경찰이 각각 1/3을 차지하는 독립 감시기구로서 ‘금융범죄 특별감시위원회’ 설립. 민간위원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통신비밀보호법 등 유관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사기 관련 감청, 이메일 확인의 권리를 부여.
- 금융범죄 공소시효 연장 : 불법 행위가 발생한 후 10년(현행 3년),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포착한 순간으로부터 5년(현행 1년)으로 연장.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소상공업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만들기

현황 및 취지

- 한국 경제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2.5%에서 2010년 51.1%로 증가(약 10%↑). 그 결과 2010년 10대 기업의 매출액은 GDP의 84%를 차지. 그러나 재벌독점 경제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
- 대기업 매출액의 80%가 수출인 데 반해, 수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93년 0.71 → 2000년 0.63 → 2009년 0.56으로 점점 축소. 즉, 대기업 매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에 상승효과를 불러오지 못함. 그 이유는 총생산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내리고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임금을 줄여 이윤을 남겼기 때문.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기회의 평등조차 철저히 무시당하였던 재벌 중심 약탈 경제의 악습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 1993년 문민정부 시절부터 2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시혜성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정체시킨 여야 2당은 집권 정부로서 실격임.
-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여 초과공급이 30%를 넘는 불편한 현실과, 이것을 줄여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함. 해방 이후 50여 년 동안 영세 자영업의 과잉인구는 서민의 생활고를 나타내는 거울이자, 대다수 집권 여당의 제1과제였음. 자영업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대개 50대 이상, 고졸 이하, 저소득의 상황에 처한 이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함.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구직을 위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였거나 상실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230만 명의 만성적 공급과잉은 단지 지켜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함.

추진 방안

- 중소기업 전문화 : 영세업종 보호 수준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 지정제를 통해 21세기형 고수의 중소기업 육성. 독보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지원, R&D 역량 극대화.

- 영세업, 소상공인 보호 제도 최단기간 처리 약속. 대형마트 설립 허가제, 업종보호제 등 소상공인 입법안들을 강화하여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
- 중소기업 안정화 : 중장기적 ‘생산R&D-복지’ 클러스터 설립, 기술 개발 및 순환을 통한 중 소형 산업 선진화 추구. 업종별 중소기업 업무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외부로부터의 기술 이전-순환-개발의 3단계 선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소상공업 안정화 : ‘레드오션 타겟(red ocean targets)’ 업종/지역을 선정. 신규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 상향 조정. 시장 조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업종(사회적 서비스, 협동조합 네트워크, 지역 공동체 사업 위주)을 선정하여 자영업 예비인구와 기존 인구의 진입을 유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

노동자 이사 50%, 노사 공동 결정 도입

현황 및 취지

- 국내 대기업은 2009년 6.54%, 2010년 7.8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10년 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천문학적인 계열사 확충을 이룩함(2006년 731개 → 2010년 1150개).
- 10대 기업은 무차별적 계열사 확충을 시도하면서 중소상권까지 장악하는 한편, 재벌 일가의 금융 투기와 비자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여 연평균 7천억가량의 금융범죄를 자행. 신고되지 않은 회계부정까지 합할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
- 문민정부에서 MB정부까지 20년 동안 실패하였는데도, 또 같은 공약을 내놓는 여야 3당. 부자감세와 양극화의 주범이었던 여당이 재벌개혁에 앞장서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 실질적 금융자유화 조치를 통해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 들었던 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하는 한편, 재벌세, 대기업청년고용의무제 등과 같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여론을 시험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벌에 대한 규제 자체가 아님. 순환출자 규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금지, 편법 상속 규제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모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사안이며, 단지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전제일 뿐임.
- 진보신당이 말하는 건전한 기업이란, 자산 규모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노동조건과 사내 복지 향상을 통해 함께 누리며, 스스로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임. 건전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함.

추진 방안 : 진보신당의 재벌개혁 3단계 플랜

- 단일 이사회 → 이원적 이사회 : 경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총감독 이사회’와 경영 실무에 대한 의결을 담당하는 ‘실무 이사회’로 분리. ‘총감독 이사회’는 ‘실무 이사회’에 대해 의결 감독권과 이사 추천/임명권을 가짐.
- 노사 공동 결정시스템 구축 : 노동자 대표기구(가제 : 노동자 평의회)를 주주총회와 상보성을 이루는 대표기구로 신설. 노동자 대표를 ‘총감독 이사회’에 선출함. 따라서 ‘총감독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기구와 주주총회에서 각기 추천된 노사 대표 10명(5:5)과 사외이사 1명, 도합 11명으로 구성. 사외이사는 노사가 3년 주기로 번갈아가며 추천.
- 장기적 투자 전략을 위한 금융 산업 협력시스템 구축 : 소유주(재벌 일가)와 거대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경영체제는 당장의 수익과 주주 배당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윤을 장기적인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보다 단기적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경향 강함.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지 못함. 그러나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노사합의형 경영시스템에서는 노와 사를 비롯해,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고취, 금융과의 밀접한 전략적 연계를 통해 투자 플랜을 마련.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통신비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절감

현황 및 취지

- 독점 공룡이 되어버린 3대 이동통신사 : 국내에서 이동통신 산업이 허가된 이후,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등록된 단말기번호(IMEI)밖에 쓸 수 없었음. 이는 거대 이동통신사의 시장 독점을 허용하여, 통화료의 폭등을 초래(2010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통화료가 10만 원을 초과.
- 서민경제 위협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탐욕 :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통신사들의 경우,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료를 면제하고, 심야 통화에 요금을 면제하는 등, 요금 인하를 위한 각종 패키지를 준비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의 경우 그렇지 않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당 연간 통화료는 매년 5-10%가량 증가해왔음.
-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유심(USIM)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여,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를 발표하였지만, 양질의 저가 휴대폰을 낮은 통신료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독점 횡포에 시달릴 것.
-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 : 카드 수수료 대란은 었친 데 덮친 격! 카드 수수료 평균 2.86%, 카드 결제 비율은 90% 이상 : 연 매출 1억 원의 자영업체(동네 슈퍼, 약국, 건어물상 등)의 경우, 카드 수수료로 평균 순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2~3백만원 가량을 카드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됨.
- 자영업 경쟁력 저하 속에서 절반 이상이 폐업 고민 중 : 시장 구조상 2백 만 명 이상의 소상공업인들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몸서리치는 현실에서, 신용카드 대란은 1백만 명 이상의 실업자, 구직 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

추진 방안

- KT를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이동통신산업 혁신 주도 : 약덕 민영기업이 되어 LG, SK와 함께 이동통신요금 부풀리기의 첨병으로 나선, KT를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 이동통신 요금의 정상적인 시장경쟁 유도.
(※ 중앙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KT 지분의 30%를 매입, 공기업 전환)
-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는 올해 5월 이후, 유심 카드를 이용하는 저가 휴대폰 확산을 선도, 전화요금 부담 없는 사회 만들기.
- 공영카드회사를 설립하여,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도입함. 가맹점은 계약 시 규모에 따른 기기 사용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가맹점 계약은 의무화를 원칙으로 함). 수수료 없는 공영체크카드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 신용카드의 경우, 조달 금리나 대손위험 등의 문제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려우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 이하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함.
- 공영카드를 포함한 전체 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미 시행하기로 한 업종별 차등 수수료 금지 및 영세자영업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함.
(※ 공영카드회사 설립은 이미 외국의 사례들이 있음. 뉴질랜드의 경우, 에포스라는 현금카드를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 카드는 가맹점 계약 시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기사용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음. 또한 대부분의 상거래가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음.)

부자 증세로 충분한 복지 재원 마련

MB 감세 철회,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식양도소득세 및 과생상품거래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공약 : 부자는 부자다운 세금을! 불로소득은 더 많은 세금을!

1.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확충

-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 세율로 환원
-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대폭 축소하고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제도 정비

2. 불로소득 중과세

-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현행의 주식거래세는 폐지
- 종합부동산세를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 과표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100% 과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

3. 종교인에 대한 과세,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정교 분리 원칙 엄격 적용

- 종교의 교직자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전면 과세
-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 유지

증세 없는 복지국가는 사기

한국의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31.2%이고(309.1조 원) OECD 평균은 49.0% 정도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재정 규모를 60%가량 증가시켜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것이며, 세입과 지출이 모두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공복지 관련 지출(각종 사회보장 포함)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8.2%(92.0조 원)로, OECD 대부분의 국가는 50~60% 수준이며 20%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이 공공복지 관련 지출의 상당수는 연금 등 고정된 지출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은 매우 미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공공복지 관련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하며(복지국가 수준이 되려면 재정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현재의 2배가량 되어야 하므로 대략 90조 원 정도를 복지 지출에 추가 투입해야 함), 이에 따라 재정 규모도 늘어나므로 기존 예산 순위의 재조정이나 조세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세입 증대 외에 증세를 통한 세입 증대가 불가피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국가는 사기이며, 다만 누구에게 증세의 주된 부담을 지울 것인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복지 재원 책임져야

49.67조 원 규모의 증세(MB 감세 철회,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와 3.50조 원 규모의 재정투명성 확보(탈루소득 과세)를 통해 현재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토건 예산의 대폭 축소 등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18.16조 원가량을 복지 관련 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략 71.33조 원가량을 복지 관련 지출(보건 및 고용 관련 지출 포함)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9.67조 원 규모의 증세액의 주된 부담은 부자와 대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거래 등의 자본이득, 부동산에 의한 자산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번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규 세제 도입 및 기존 세제 강화, 종합과세 적용 등으로 중과세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가 확실히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 조치 축소 등 일정 규모의 보편 증세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복지 관련 지출이 대폭 확대된다면 국민 또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 감세 철회,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조세감면조치 축소

현황 및 취지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로 인한 총 감세 규모는 5년간 82.27조 원으로서, 연평균 16.45조 원에 이룸. 따라서 MB 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6.45조 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이후의 세수 확보 규모는 17조 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조치들은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집중될 뿐 아니라 조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가능하면 억제해야 함.

추진 방안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 세율로 환원함(단,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함).
-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함.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과표 3억 원 이상에 적용)을 38%에서 50%로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200억 원 이상에 적용)을 22%에서 35%로 인상함.
-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제도 정비를 통해 조세지출규모를 현재보다 10% 축소함으로써 국제감면율을 현재의 13.70%에서 12.33%대로 낮춤.

표 개정 소득세율 안

과세표준	2008년도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8%	6%	6%
1200만 원 ~4600만 원	96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7%)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7%)
4600만 원 ~8800만 원	674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6%)	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650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26%)
8800만 원 ~3억 원	1766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742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3억 원 초과	1766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9010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35%)	9162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50%)

- 위의 소득세율 개정안을 통해 증가되는 순세수 증가분(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 순세수 증가분임)은 대략 1.55조 원 정도임.

표 개정 법인세율 안

과세표준	2008년도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2억 원 이하	13%(1억 원이하)	10%	10%
2억 원 ~200억 원	13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5%)	200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20%)	200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25%)
200억 원 초과	13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5%)	39억 8000만 원+(200억 원 초과금액의 22%)	49억 7400만 원+(200억 원 초과금액의 35%)

- 위의 법인세율 개정안을 통해 증가되는 순세수 증가분(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 순세수 증가분임)은 대략 9.29조 원 정도임.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국세 감면율을 현재보다 10% 낮춤으로서, 늘어나는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6.60조 원 정도임.
- 이상의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 조치를 통해 늘어나는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17.44조 원 정도이며, MB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가분 16.45조 원을 합치면 총 33.89조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됨.

주식양도, 파생상품,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종합 과세

현황 및 취지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한 제도임. 그러나 한국은 그간 상장주식에 대하여 극소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거래세를 과세해왔음. 이에 따라 주식매매로 인해 손실을 볼 때에도 거래세가 과세되는 반면, 대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바, 이는 과세원리에 위배됨.
- 한편,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세조차 부과되지 않고 전면 비과세되고 있음. 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량이 6경을 넘어서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또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이익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역시 MB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세율이 인하되었는바, 감세조치를 철회해야 함.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역시 불로소득의 일종이므로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추진 방안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그 대신 현행의 주식거래세는 폐지함. 또한 현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커녕 거래세조차 과세되지 않는바(전면 비과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단 거래세를 도입함.
- 종합부동산세는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시키고(단, 부부합산과세는 위험결정으로 반영하지 않음), 과표를 공시가격의 80%만 잡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00% 과세함.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함.
- 현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일 때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함.

* 참고 : 세수 추계

-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대략 7.41조 원이나(세율 20% 적용) 주식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액 3.66조 원을 제외한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74조 원임.
- 한편, 과생상품거래세의 경우, 과생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율을 현행 주식거래세 세율의 100분의 6인 0.03%로 함 (통합민주당의 안은 0.01%임).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33조 원임.
- 종합부동산세 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MB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60조 원임.
-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연동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도 증가함.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82조 원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은 대략 0.79조 원으로 추정됨.
- 지금까지의 세수 증가액을 모두 합산하면 (MB 감세 철회 및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조세지출 축소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까지 모두 포함), 전체적인 세수 증가액은 대략 49.17조 원에 이룸.
- 또한 이외에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미술품과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추가 세수증가액(현재로서는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우나 일단 0.5조 원 정도로 추정)을 감안한다면 총 세수증가액은 대략 49.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됨.

종교법인법 제정, 정교 분리 엄격 적용

현황 및 취지

- 종교의 교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국세청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일부 종교인의 경우 교직자 스스로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바,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상태임.
- 종교단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많지만, 종교인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음.
-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또한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많음. 한국의 경우, 종교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각종 의무는커녕 일정한 요건과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인 등록조차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간단하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재정 공개 등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미국 등 정교 분리가 원칙인 국가의 경우, 종교단체가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박탈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기도원 등 각종 변형된 형태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종교 목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편법적인 운영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합법적인 소득세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함.
- 종교전문인(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소득세 면제까지 받는 반면, 기타 교직자(예를 들어 전도사, 포교사 등)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추진 방안

- 종교법인법을 새로이 제정함. 그 핵심 내용은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여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만 각종 조세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또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직접적인 정치 개입을 하였거나, 변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등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종교전문인(예를 들어 목사) 등 각종 종교의 교직자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전면 과세함. 대신 각종 종교의 기타 교직자(예를 들어 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을 적용함.
- 이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나 대략 0.4조 원 정도로 추산 : 2008년 기준 종교인 수(36.4만 명)에 2010년 기준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액(170만 원)을 곱하면 대략 6200억 원 정도인데, 현재도 일부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략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됨.

4대강은 물고기와 새들에게, 4대강 주변은 감옥으로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
4대강 사업 중단, 책임자 처벌 및 자연하천 복원과 토건범죄 재발 방지
국토부 등 개발집단 권력 해체, 환경 관련 부처 강화로 녹색정부 구현



공약 : 토건세력 해체,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1.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
 - 자동차 도로 신설 억제와 철도망의 과감한 확충으로 철도 경쟁력과 수송 분담률 대폭 제고
 - 주요 광역시도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공영화로 무료 마을버스, 하루 1천 원 무제한 환승 실현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와 원격지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교통이용수단 보장
 - 도로교통량 감축 목표, 연비 규제 등 에너지 효율화 목표 법제화

2. 4대강 사업 중단, 책임자 처벌 및 자연하천 복원과 토건범죄 재발 방지
 - 4대강 사업 등 주요 토건사업 중단, 복원과 토건범죄 재발 방지
 -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조화되는 국토 계획
 - 개발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사회적 합의 제도화

3. 환경관련 부처 강화로 녹색정부 구현
 - 국토부 등 개발집단 권력 해체, 환경관련 부서의 통폐합과 권한 강화
 - 녹색분권과 녹색거버넌스 증진
 - 녹색인지정책, 예산의 제도화

도로, 토건족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과 공공성

한국의 교통은 꾸준한 시설 투자로 지속적 확장세에 있지만, 승용차 중심 도로 위주 투자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 유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가 철도 투자에 미온적이었고, 연계 교통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더욱 하락해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맞아 국토와 건물의 효과적인 대응체제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허울뿐인 녹색성장은 환경 위기 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 파괴만을 가속해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토건 국토개발과 토건 정부의 폐해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에 써야 할 돈을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붓고,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사유화 도입, 친수구역법 제정에서 보듯 자연과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공공성 후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주거 등 필수적 인프라의 보편적 이용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녹색교통, 조화로운 국토 이용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을 모든 계층과 지역에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승용차 이용 저감,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로 유사 토건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국책사업 추진 시 사회적 합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국토부 등 개발집단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토건국가에서 녹색국가로 나아가는 관건입니다. 환경 관련 부처 강화로 녹색정부를 구현해야 합니다.

정책 1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

자동차 도로 신설 억제와 국내 철도망의 과감한 확충

현황 및 취지

- 한국의 철도 분담률은 국토계수가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특히 동서축 노선이 부족하여 철도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지 못함. 또한 수익성 우선으로 KTX 중심 확충함으로, 오히려 저렴한 일반 철도와 지선은 위축되고 있음.

표. 철도연장보급률 국제 비교

국가명(연도)	총 영업 거리(km)				유효철도 연장(km)	국토계수당 유효철도연장보급률	
	비전철	전철	고속	소계		A(전체면적)	B(평지면적)
한 국('02)	2,643	486	412	3,541	4,899	<u>0.071</u>	<u>0.154</u>
그리스('94)	2,474	0	-	2,474	2,474	0.067	0.124
포르투갈('95)	2,328	522	-	2,850	2,981	0.099	0.182
스웨덴('76)	4,402	6,959	-	11,361	13,101	0.214	0.874
영 국('86)	12,823	3,906	-	16,729	17,706	0.151	0.307
평균(한국 제외)	5,507	2,847	-	8,354	9,065	<u>0.133</u>	<u>0.372</u>
비 율(%)	48.0	17.1	-	42.4	54.0	53.3	41.3

-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이 실시되고 있으나, 노선과 운영 통합성 부족하며, 요금의 과감한 할인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증진이 미진함(광역통합교통공사 필요성).
- 도시철도, 교량, 터널 등의 민자사업(BTL, BTO 등)과 기존 교통사업(KTX)의 사유화로 요금 부담과 안전 위협 등 문제 발생. 철도·도시철도 건설 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며 및 민자 투자 제한 필요.

추진 방안

- 자동차 도로 신설 억제와 국내 철도망의 과감한 확충으로 철도 경쟁력과 수송 분담률 대폭 제고.
- 주요 광역시도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공영화로 무료 마을버스, 하루 1천 원 무제한 환승 실현.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와 원격지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교통이용수단 보장.
- 국토간선도로망계획을 재검토하고 사통팔달 일반철도 노선 투자 확대.
(※ 일반철도 네트워크 확충 5개년 계획 수립. 동서축 : 춘천-속초, 원주-강릉, 광주-대구, 순천-진주-부산 + 동해선 : 부산-속초 완성)
- 민간 투자 중심, 시장 중심 접근은 지양. 신설이 필요한 노선은 민간투자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 투입하고, KTX 수서 신설구간 사유화는 중단.
- 도로교통량 감축 목표, 연비 규제 등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법제화하여 지자체별 감축 목표 연차 수립과 달성. 도심 혼잡통행세 도입 확대.
- 교통세를 탄소세 성격을 갖는 환경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철도 중심 교통체제 구축(친환경 대중교통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개발(재생에너지특별회계), 환경보호(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해 사용.
(※ 발의 중인 교통기본법에 교통량 감축과 에너지 저감형 교통체제 전환 명시, 영국의 도로교통량감축법안(RTRA)의 사례)
- 교통수단 노동자와 이용자의 교통정책 수립과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교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조화되는 국토 계획

현황 및 취지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영원히 준공되지 않을, 아직도 목적이 불분명하고 온갖 역효과만 드러나는 엄청난 범죄 행위임. 다음 정부부터 4대강 복원이 큰 과제가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함. 한반도대운하 때부터 이를 입안하고 정책 논리를 제공하고 선전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조사해서 처리해야 함.
- 아울러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새만금, 평택 미군기지, 강정마을, 신규 핵발전, 청계천, 4대강, 가리왕산 개발 같은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함.

추진 방안

- 한강 수중보 철거, 팔당유기농단지과 지천 보전, 4대강 자연하천형 복원.
(※ 4대강 복원에 대해서는, 한강부터 잠실과 신곡 수중보를 헐고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하여 모두 독일 이자(Isar) 강 모델로 복원.)
- 4대강 특별법(진상 규명, 복원 시행 근거) 제정,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중단, 생태 복원.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새만금 주민에게 배타적 어업권 보장 등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5% 골프이용자를 위해 전 국토를 파괴하는 18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네덜란드 모델) 도입.

***참고 : 네덜란드 PKB의 사례**

네덜란드가 오랜 기간 끌어온 대형 국책사업이 성공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PKB(Key Planning Decision) 활용에 있음. PKB는 국가의 도로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초기 보고서. 지방정부가 상세히 수립하는 국토개발 계획은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발계획이 정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

환경관련 부처 강화, 녹색분권과 녹색거버넌스 증진

현황 및 취지

- 박정희 시대에 자리 잡은 토목공사적 개발사업에 조직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토부 및 개발공사는 경부운하, 신도시건설, 도시외곽순환도로건설, 댐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해체 및 기능의 재편은 '녹색정부 개혁 프로그램'의 최우선적인 과제임.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 교육적, 문화적 노력이 병행하여, 핵 카르텔, 자동차 카르텔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추진 방안

- 국정 과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전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제도화. 이를 위해 국가지속발전가능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으로 전환함.
- 환경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폐합하고 환경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 환경 관련 업무 총괄 조정. 환경부 산하에 지속가능성평가청 신설.
- 환경부의 기능 확대와 위상 강화를 전제로 명칭을 국토환경부(환경관리부)로 개칭. 국토부는 건설, 주택, 교통과 관련된 실제 사업 추진 부처로 기능 축소 전환하고 LH공사는 지역개발청(영국)으로 전환.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는 자원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고 외통부의 통상 기능을 회수해 산업통상부로 개편.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단지 조성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도로공사의 도로건설 계획과 사업은 중단. 농산어촌 '개발' 공사로 전략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간척사업 및 농촌개발을 목표로 한 토목사업 영역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농어업공사로 재편.
- 에너지, 지역개발 정책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보장하는 녹색분권과 녹색거버넌스 증진.

- 녹색인지 예산 편성과 평가의 제도화, 국가 성과지표로서 녹색지표 개발.

공존과 생존의 근거지로서의 농촌 재생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급식 등에서 국내산 수요 창출

로컬푸드, 소규모 친환경 농업 육성

농민소득보장, 귀농 귀촌 지원으로 안정되고 활력 있는 농촌공동체 재생

농협의 중앙회 폐지하고 본연의 경제사업 중심으로 기능 개편

농지공개념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존효과 증대



공약 : 땅과 식량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농민 생활기반 보장

1.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급식 등에서 국내산 수요 창출
 - 식량자급률 법제화,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 외국 농수축산물 수입 규제 강화 및 수입 위생검역기준의 법제화

2. 로컬푸드, 소규모 친환경 농업 육성
 -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관계'로서의 농업-도시 공동체 실현
 - 도시농업 육성, 지원
 - 농업 생산물/부산물과 에너지 순환 시스템 구축

3. 땅과 식량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농민 생활기반 보장
 - 농민 기본소득 지급,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 귀농/귀촌 지원기금 조성, 지원센터 설치

4. 농협의 중앙회 폐지하고 본연의 경제사업 중심으로 기능 개편
 - 농협중앙회가 비사업체로 전환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섹터의 중심체 구실하도록 전환

5. 농지공개념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존효과 증대
 - 국가 매입에 의하여 농지공유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 농지농용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계획적 이용 및 보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농업 자급기반 상실, 위기의 농촌

한국은 주요 곡물의 70% 이상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OECD 가입 30개국 중 곡물자급률이 27%에 해당할 정도로 자급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농업 기반은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농가인구 3백만 명, 농가 1백만 호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 인구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입개방과 FTA라는 결정타로 인해 국내 자립농업의 위상이 유명무실화되고, 단지 지원과 구제의 대상 산업으로 격하되어왔습니다. 그나마 남은 농업도 관행농, 기업농 중심으로 석유와 장비에 의존하게 되어, 구제역 등 질병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형편입니다.

다행히 귀농, 귀촌 희망자, 유기농 농민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 지원은 턱없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전략 부문으로 농업의 위상 확보와 농촌공동체 재생

이제는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의 현장, 국가안보 개념으로 농산물과 농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쉬는 한국 사회의 실현 공간이자 콘텐츠로서 귀농/귀촌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역할론을 제기하며, 대농 중심 전업농 정책을 가족 중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본소득보장과 도농 연계를 통한 농촌공동체 살리기가 필요합니다.

현황 및 취지

-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6% 대로, 주요 곡물의 70% 이상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3.7%에 불과함(밀 0.2%, 옥수수 0.8%, 보리 46.5%, 콩 13.6%).
- 석유 정점(peak-oil), 기후변화의 위기는 조만간 국제적 식량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으며, 국내 농업과 식량 기반 재건이 시급함.
- 쌀 생산에 편중된 전업농 상황과, 주기적인 쌀값 폭락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필요성.

추진 방안

- 식량자급률 법제화(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밀, 콩, 조사료 등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단계적으로 확대. 법제화 도입 후 첫 5년간은 현행보다 5% 향상을 목표로 설정,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0% 달성까지 목표 수준을 점차 상향. 단계별 자급 목표와 품목별 계획 및 농지보전, 농지이용을 확대와 소득 보장 수준 등을 직접 연계하여 계획 수립.
-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군대, 공공기관, 소외계층 급식 등 공공급식 등을 통해 소비 측면 자급률 확대 병행.
-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도적 쌀 지원 정례화(2009년 발의), 쌀 재고량 소비 촉진. 남북공동식량계획 우선 실현, 남북공동농업정책 추진 설계.
- 외국농산물의 수입 전 단계, 검사 단계, 유통 단계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수입식품위생관리청 신설하여 일괄 관리). 한국 외교관에 주요국 수출농산품에 대한 위생 감독 권한 부여.
 - 이 모든 것을 위해 한미FTA 폐기.

지역 소비, '관계'로서의 농업-도시 공동체

현황 및 취지

- 농민들에게는 환경 친화적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 제공하여 국민농업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먹거리 운송 에너지(푸드마일)를 저감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 포장폐기물 발생 절감.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 활동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도시와 농촌에서 지역(동네) 식량과 에너지 생산 자립 비중 상승으로 에너지 기후 위기 대비, 농가 소득 증대.

추진 방안

- 로컬푸드 기준 및 지원 법제화.
- 학교급식에서 군대급식, 공공급식으로 친환경 유기농 이용 확대(생산자 조직과 협약).
- 지역(시군구) 단위 로컬푸드 협의 및 지원기구 구성(생협 조직과 연계).
- 골목마다, 공원마다 텃밭. 농산물 생산하는 도시 만들기.
-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농촌 만들기.

농민 기본소득 지급, 귀농/귀촌 지원

현황 및 취지

- 현재의 농산물 개별 품목 가격보전 대책은 생계 기반 보호의 실효성이 적으며, 품목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함.
- 농촌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들 모두에 대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차원의 '공익성'을 인정할 필요 있음. 기존에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는 농민의 준공무원화, 또는 농민월급제를 구체적 정책으로 시행할 필요 있음.
- 귀농, 귀촌 희망자, 유기농 농민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귀농, 귀촌의 실질적 유인 동기를 제공해야 함.

추진 방안

- 농업인구에게 월 25만 원(단계적으로 50만 원 상향) 현금소득 지급
(※일본 : 농업에 취업하는 45세 미만자에 대해 연간 150만 엔(약 2170만 원), 최대 7년간 1050만 엔(약 1억518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비정규직 젊은이의 평균 연봉이 212만엔(3067만 원)).
- 직불제 개선 : 단기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비율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품목과 축종을 포함하는 포괄형 직불제(농가단위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함.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농가소득의 10%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
- 대기업 수출입 무역업체가 받는 혜택의 일부(관세)의 0.5-1%를 농촌부흥세로 신설.
- 광역시도마다 귀농 귀촌 지원센터와 지원 기금 설치.

* 참고 : 농민기본 소득 예상 추계

- 농가수 : ('10) 1,177천 호, 농가인구 : ('10) 3,063천 명
- 총인구 ('10년 48,875 천 명) 의 6.3%
- 고령 인구('10) : 60세 이상 41.8%, 65세 이상 31.8%
- 가구당 농가인구 : ('09) 2.61명 ('10) 2.61
- 전국 ('10년 총인구/총가구) : 2.85명
- 1ha 미만 농가수 (2010년) : 774천 호 → 65.7%
- 전업농(53.3) + 1종 겸업(농업소득이 50% 이상, 16.4) 비율 → 69.7%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 25세 이상 농업인 등록 경활인구, 전업 및 1종 겸업 가구에 지급

→ 1ha 이하 소농 대상으로 적용

→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백만 원 효과

→ 재원은 농촌진흥세, 환경세, 농협 수입 등

예산 : 300만 명 * 0.55(25세 이상 65세 미만 대략 55%) * 1h 미만 비율(66%) * 전업농 및 1종 겸업비율(70%) * 50만 원*12개월 = 4조 5천 7백억 원 소요

농협을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중심체로

현황 및 취지

- 현 농협중앙회는 교육,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비사업적 기능과 경제, 신용사업 등 시장 중심적 사업 기능이 혼재되어, 조직의 민주적 투명 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사업전략이 어려운 체제라고 비판받아옴.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거대 지주회사로 확대개편되어 협동조합 중앙회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됨.
- 농협중앙회가 출자해 전국 단위의 금융지주 및 경제 지주를 설립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주식회사로 개편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농협지주회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유통 자회사 설립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농협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추진 방안

- 농협중앙회는 2017년까지 여타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을 지주회사에 완전히 이관하고 지도·감독·교육·협동운동에 전념하는 비사업법인으로 발전시킴.
-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전액을 승계한 '농협경제연합회'를 설립하여,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부문의 사업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함.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 비사업적 기능의 사단법인체로 전환하고, 산하에 교육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등을 두어 교육, 홍보, 조사, 연구, 감독,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슬림화된 조직으로 개편.

농지공개념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존효과 증대

현황 및 취지

- 농지 감소의 주된 원인은 농지전용(1975~2011년까지 전용과 유희화 등으로 감소한 농지는 82만 9,000ha로 현재 농지면적의 절반 규모. 이중 도시·공업용 전용면적이 47만 4,000ha로 전체 감소면적의 57.2%).
-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과 신도시 택지 개발, 골프장 건설 등을 이유로 한 농지 잠식을 막지 않고는 식량위기를 피할 수 없음.
-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 설정과 적정 농업 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농지공개념 제도가 필수적.
- 농지공개념제 도입은 토지용역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현재 쌀 생산비의 45~50%가 토지용역비, 임대차 농지 비중이 전체 농지의 43%이며 임차농가 비율은 60% 이상).

추진 방안

- 농지공개념 기본 이념을 헌법에 명시(사문화된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농지공개념으로 대체하여 최상위법을 통해 명문화).
- 농지에 대한 규제 제도를 유지 강화, 농지농용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계획적 이용 및 보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 국가 매입에 의하여 농지공유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농가부채 청산과 연계한 농지 및 향후 상속과 이농으로 발생할 비농민 소유농지부터 공유제 도입부터 시작.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귀농인에게 임대.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농지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농지 소유자 손실에 대해서 보상제도 강구.

탈비정규직, 칼퇴근 명랑사회

- 노동시간 단축으로 칼퇴근 명랑사회
- 탈비정규직 명랑 일자리
- 노동시장 소득 격차 해소
- 사회연대 노사관계 구축
- 고용안정망 강화
-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노동환경



공약 : 인간적인 노동,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1. 노동시간 단축으로 갈퇴근 명랑사회 구현
 -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2. 탈비정규직 명랑 일자리 구현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3. 노동시장 소득 격차 해소
 - 최저임금 현실화
 - CEO 최고임금제 도입
4. 사회연대 노사관계 구축
 -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
 -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및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및 정치권 보장
5. 고용안정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급여 수준 현실화
 -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6.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7.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노동환경

월화수목금금금, “이게 사는 건가?”

한국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가장 적게 잠을 잡니다. 가장 많이 일하는 만큼 행복하기는커녕,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과 가장 높은 사교육비, 가장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허덕이게 되는 악무한(惡無限)의 사회입니다. 그나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집단으로 나뉜 가혹한 구조는 두 집단 모두에게 경쟁과 견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에 육박합니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불과하고, 근속연수는 2년에 불과합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책임이 큼니다.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랜드 파업, 동희오토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재능학습 지교사 파업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하였습니다.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의 시작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칼퇴근 명랑사회’,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의 명확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탈 비정규직’ 사회를 제안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다운 노동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탈비정규직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입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최악의 일자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해 진보신당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황 및 취지

- OECD 국가의 1년 평균 노동시간이 1,749시간인 데 비해, 한국인은 2,193시간을 일함. 연간 444시간, 약 2달을 더 일하는 과로사회!
-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 프랑스는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스페인은 8시간 34분.
-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주요 도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연간 휴가 일수는 12일.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임.
- 과로사회 = 위험사회. 한국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10만 명당 20.99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10명)의 2배에 달함.

추진 방안

①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 1,800시간 초과 시 매 200시간 추가마다 노사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
(※ 프랑스는 연간 노동시간 1,605시간 상한. 200시간마다 노사협의 및 노동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주당 초과노동시간 10시간으로 제한.
(※ 유럽연합은 주당 초과노동시간 8시간으로 제한)
- 상습 초과 사업장 특별 현장 점검 의무화.
-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휴일 노동을 연장 근로 제한 시간에서 제외, '탈법적 초과 노동'을 인정한 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 제외 특례 대상을 최소화.
-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제 도입 추진.

②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간 2교대 중심의 교대제 전환 시 전환 지원금 확대.
-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 업무 규제.

③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사업주의 초과 노동 유인 축소 : 연장/야간 노동 수당 할증을 각각 50%에서 100%로 인상.
- 노동자의 초과노동 유인 축소 : 연장/야간 노동수당에 대해 최고세율 부과
(※ 현행 최고세율 38%, 진보신당 증세안에 따른 최고세율 50%)

④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 축소된 휴일 7일을 복원, 기본 휴일을 22일로 확대
(※ 주 40시간제 이전 기본 휴일 : 월차 12일 + 연차 10일)
- 연차휴가 부여 조건인 1년 만근 규정을 삭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할 부여.
(※ 현행법은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 후 발생할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식)

⑤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 공휴일 부활 : 한글날(1990년), 식목일(2006년), 제헌절(2008년) 등 축소된 공휴일 부활.
- 대체휴일제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현황 및 취지

-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를 차지함. 또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3,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1.7, 여자 정규직은 66.4, 여자 비정규직은 40.5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함.
- 전체 노동자 근속연수 평균은 5.1년. 비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2.1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 근속연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은 56.0%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3~99%에 비해 비정규직은 32~37% 수준.
- 2006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하였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37만 → 2007년 861만 명 → 2011년 865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음. 2006년 법제도의 특징은 차별 시정 및 기간 제한 등 사후 대책 중심의 대책이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음.
- 그 결과 비정규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씩 교체 사용(회전문 효과)하거나, 기간제 비정규직 대신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충당(풍선 효과)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랜드 파업, 동희오토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재능학습지교사 장기 투쟁 등 핵심적 노사 갈등이 모두 2006년 비정규직법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함.

추진 방안

- 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 임신·출산·병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대체, 계절적 일자리,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
 - 파견제 폐지 :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파견법 폐지.
 - 노무 도급 중심의 위장도급 금지 : 적법한 도급과 도급을 가장한 노동력 파견을 구분하여 위장도급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제.
 - 정리해고 후 일정기간(ex. 6개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제한.

- ②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 :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 ③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원칙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인력 감축 정책 중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 공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 위탁 사업에 대해 업무 위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④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실시 :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예 : 1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 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 조달 사업 및 위탁 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권을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산별 노조 포함)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⑥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 기업 이윤의 주주 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 프랑스 기업이익분배법 :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주주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이익배당금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직책 연봉, 경력에 관계없이 고루 배분되어야 함.)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 CEO에게는 최고임금제

현황 및 취지

- 한국의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78배로, OECD 27개 회원국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심각함. 또한 한국의 빈곤율은 15.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함.
- ILO 세계임금보고서(2010)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5.6%로 통계가 집계된 17개국 중 가장 많음.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평균임금 대비 32%로 21개국 중 미국, 일본, 체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삼성전자 임원의 수입은 연봉만 따져서 평균 59억 9천만 원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 격차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임.

추진 방안

①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 현실화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지급부담 증가, 실업 증가 등) 완화를 위해 5년간 단계적 인상을 통해 50% 수준 확보.

② CEO 최고임금제 도입

- 민간기업 CEO 최고임금은 최저임금 100배 미만으로 제한.
-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미만으로 제한.
(※ 2012년 최저임금 기준 최고임금 한도는 민간기업 연 11억 4,866만 원, 공공기관은 1억 1,486만 원.
※ 삼성 임원 연봉 평균 59억 9천만 원,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은 달랑 1천만 원.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 배나 차이날 수는 없다”
※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 슈타인마이어 수상 후보가 경영자들의 임금상한선 법적 규제 주장.)

③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 기업 이윤의 주주 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 프랑스 기업이익분배법 :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주주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이익배당금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직책 연봉, 경력에 관계없이 고루 배분되어야 함.

④ 공정임금제 도입

- 공정임금제 도입 :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노동자 누구나 노동3권 보장

현황 및 취지

- 노동3권 없는 노동자 :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교사공무원 노동자 등에게 노동3권은 헌법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권리.
- 교섭권 없는 노동조합 : 복수노조는 허용하지만, 교섭은 무조건 큰 노조에만 허용?
- 손배 가압류만 1500억 : 파업하면 무조건 손배 가압류부터 때리는 사업주. 법이 보장한 권리, 돈으로 막는 세상.
- 노동3권에 글로벌스탠더드는 없다 : 남들 다하는 산별 교섭은 안 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협약은 외면.

추진 방안

①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 :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
-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추가.

- ②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및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 노조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물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단체협약 체결권 및 사용자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 정부의 경우 해당 기관장 및 해당 지방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체협약 체결권 및 사용자 의무를 부여.
 - 현행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하여, 5급 국가공무원까지 단결권을 보장하고,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
 -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임자 제한 규정,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을 삭제하여 실질적 노동3권 보장하고, 교사·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

- ③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복수노조의 교섭 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

- ④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노동자가 교섭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노조법 개정.

- ⑤ 필수유지업무 삭제 및 손배가압류 제한
-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공급사업, 전화사업, 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하며, 공익사업장 쟁의행위 돌입 시 사전 예고 의무 신설. 공익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개정.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⑥ 산별 교섭 제도화
- 산별 단위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단체 구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별 교섭을 활성화함.

-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금 등에 있어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교섭 확대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 대상을 산업별로 확장함.

⑦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및 노동교육 교과 과정 도입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 노동3권에 대한 글로벌스탠더드 적용.
- 노동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노동의 가치, 노동기본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성, 노동조합 역할, 노동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과정 삽입.

⑧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해고자 원직 복직

- 상시적 정리해고를 가능케 하였던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요건을 강화하고,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 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사간 협의 및 동의절차’ 각각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
- 해고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및 구제조치를 강화하여 해고대상 노동자 우선 재고용을 실질화하고, 그동안 부당해고 및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빌미로 해고한 이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전액 보상토록 함.

현황 및 취지

- 구명 상승, 고용보험/산재보험 :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55.7%, 산재보험 미가입자 41.4%.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률 8.5%, 자영업자는 적용 제외.
- 찢끔 찢끔,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 한국 30.4%, OECD 평균 58.6%. 하지만 실업급여 수준은 10년째 동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장 8개월, 대부분 3~4개월 수준.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은 실직 5년차에도 급여의 절반 지급. 급여 기간이 짧다 보니 실직 2년차 소득보전율은 0.6%, OECD 중간값 (40.4%)의 1/70 수준.
- 전쟁터보다 끔찍한 산업재해 일터 : 3시간마다 1명꼴로 죽고, 5분마다 1명꼴로 다치는 일터.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영국의 14배, 일본독일의 4배.
- 다치면 병원비 나가고 일도 못 하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에서 원천 배제.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자영업자 의무가입은 물론 학생, 주부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다수.
- 4대강 팔 돈은 있어도 실업자 줄 돈은 없는 한국 정부 :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보험기금에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 복지 후진국 일본도 정부가 30%를 부담하지만, 한국은 0%!

추진 방안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연대급여(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신규실업자(청년) 대상 실업부조 도입,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급여 지급.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 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 해소.

② 고용보험 급여 수준 현실화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 현 3~8개월 수급기간은 6~12개월로 연장.
- 실업급여 급여 인상 : 현 고용보험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지만, 1일 한도를 4만 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최고액은 월 환산 120만 원 수준. 이를 실질적 임금의 60%, 1인 최고액 한도를 8만 원으로 확대해 실업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

③ 전 국민 산재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나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행위에 따른 개인 부담을 낮추고 치료 기간 중 산재 수당을 지급해 소득 손실 보전.

④ 고용안전망 국고 지원 확대

- 모성보험 사업에 대한 전액 정부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3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현황 및 취지

- 날마다 죽고 다치는 일터 : 3시간마다 1명꼴로 사망, 10년간 사망자만 90만 명.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1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 17조 6천억 원.
- 사람 죽어도 사업주는 벌금 2천만 원에 그침 :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화재 참사 사업주는 벌금 2,000만 원에 그침. 매년 노동부 점검 시 산안법 위반 사업장 90% 이상. 3년간 구속은 총 5건.
- 비정규직일수록 산재 사고 다발 : 하청, 특수고용,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산재 집중. 원하청 구조로 이윤만 빼먹고 산재예방과 산재사망 책임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 첨단 산업이 낳은 첨단 산업재해 : 전자산업 산재 피해자 지원 모임인 <반올림>에 접수된 백혈병 등의 직업병 피해 제보는 154명이며, 이 가운데 61명이 사망함.

추진 방안

① 산재 사망 처벌 강화

- 산재 다발 사업장과 해당 기업의 영업권을 연계시켜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다 강화.
- 산재 은폐에 대한 행정 감독 및 처벌 강화.
(※ 영국에서 2008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의 경우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무한 민사 책임을 묻는 등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사업주 책임을 묻고 있음.)

② 산재 입증 책임 전환

- 산재 입증 책임 전환 : 잠복기간이 긴 직업성 암등 직업병의 경우에는 관련 측정이나 결과 보존을 하지 않은 사업주의 불법이 결국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는 현실. 산재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부여하고, 재해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 및 입증자료 조작 및 제출 거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의사에게 산재신청권 부여 : 산재 미인식 노동자 및 산재 은폐 근절 대책으로 산재 신청을 해당 진료 의사에게 부여.
- 산업재해 선보상 후승인 방식으로 전환 및 산재심사체계 독립.

③ 취약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산재예방의 원청 책임성 강화, 이 경우 원청의 범위를 발주처로 확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현장 출입권 및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동일한 권한 부여.
- 노동자 건강지원센터 확대 및 사업장 출장보건 서비스 확대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에 지역별로 노동자 건강지원센터 확대 및 사업장 출장 보건 서비스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 산재보험법상 노동자 개념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①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자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등으로 개정)

④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산재예방 시스템 전면 개혁 : 점검 사업장의 90%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자율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실패한 제도임. 산재 예방의 감독, 지원, 처벌의 문제를 산업안전보건청 등으로 일원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확대.

(※ 해외 사례의 경우 노동부 감독관의 70% 내외가 산업안전감독관이나, 한국은 660여 명의 감독관 중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은 220명 내외에 불과. 1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1만여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

- 산재 예방과 보상에 대한 정부 예산 확충 : 산재 예방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연간 150~200억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반면, 산재예방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의 직원 급여, 청사 사용료, 지방 이전에 따른 건축비용까지 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 획기적 예산 확충이 필요.

⑤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및 반올림 피해자 특별법 제정

- 사업장 내 발암물질 사용 금지 및 대체 물질 사용법으로 강제.
- 특히 심야노동에 대한 제한 및 불가피한 심야노동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방안 강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발병 등 전자산업 중대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황 및 취지

- 화장실은 휴게실이 아니다 : 학교,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보는 건물 청소 노동자 대부분이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어 화장실과 창고, 계단 밑에서 식사하는 실정.
- 일하고 샤워할 곳이 없다 : 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몸에서 26만 개의 박테리아가 검출, 이는 버스 손잡이(380개), PC방 마우스(690개), 쇼핑몰트(1100개), 터미널 화장실 변기(3800개)보다 많은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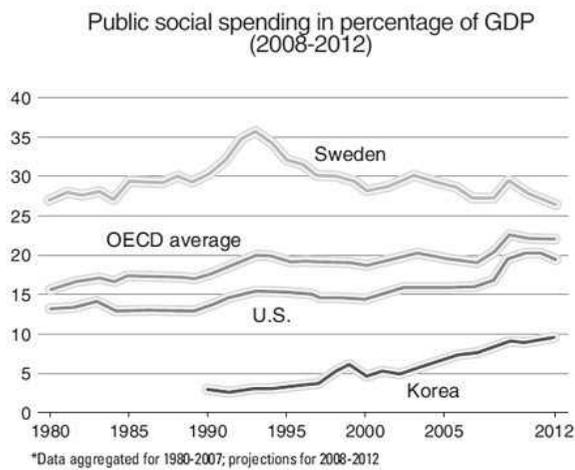
추진 방안

- ①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 관공서, 학교,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설치
 - 건축법상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용 빌딩에 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휴게 공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②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 환경 미화 노동자의 작업장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작업장에 샤워시설 등 노동보건 편의시설을 설치.
- ③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게 쾌적한 숙소를
 - 건설 현장을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노동자 레지던스 마련.
- ④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나 성희롱 등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나, 개선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

- 유명 먹자골목 등 식당 밀집지역, 영세봉제공장 밀집지역에 여성 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공공직장보육시설, 상담(복지, 고용, 폭력, 법률 등) 및 보건소
와 연계하여 이동식 건강 상담과 물리치료, 휴식을 제공.

살 만한 삶을 만드는 보편적 복지국가

- 노후 생활 보장하는 충분한 연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 지방 이양 복지 사업 평가 후 중앙정부로 환원
-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공약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1.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충분한 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 국민연금은 급여율을 50%,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 원)를 지급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

2.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개편을 통해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여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하여, 노동에 대한 자기 선택권 부여

3. 지방 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방이양사업 평가 후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한 경우 환원

4.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및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공공)센터를 설립하고 복지 분야에서 100만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센터는 복지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과 노동조건 개선

빈곤과 위기의 삶 대물림 막아야

현 복지제도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나머지 복지’로, 조건이 까다로워 수백만에 이르는 실질적인 빈곤층이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며,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해서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수혜층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와 재벌 살리기 경제정책은 서민들의 노동 위기, 생활 위기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정도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주거 빛, 교육 빛 등 생활유지형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마련할 대책이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제도(선별적 최소 복지)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는 삶의 위기를 대응하지 못합니다. 선별적인 최소 제공 복지를 지속할 경우, 부동산, 금융, 교육, 소득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더욱 크게 일어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빈곤과 위기의 삶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니라면 점차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1 : 99의 야만적 약육강식 사회의 도래를 막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살 만한 나라’ 만들기 위한 보편적 복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 존중’을 실현하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가 ‘살 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빈곤 탈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 생활형 빈곤을 해소해야 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노후 불안 해소 등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연대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 도입, 국민연금 급여율 50%로 상향

현황 및 취지

-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780만 명, 연금 수급자는 300만여 명. 비수급 노인 대부분이 70세 이상 빈곤층 노인.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음.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노인 계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적립식'을 채택하였기 때문.
-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일정 금액을 지급. 2011년 기준 지급액은 노인 단독 가구 9만 원, 부부 가구 14만 4천 원. 이는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011년 12월 현재 373만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3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
-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과 소득대체를 하락 등으로 국민의 57.5%가 잠재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32.50%), 공적연금 비적용자(4.20%), 납부 예외자(15.70%), 미납자(5.1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며, 국민연금을 받는 계층 또한 소득대체율이 30~60%에 불과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불과.
- 전 국민연금 시행 후 10년이 지났으나,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규모가 줄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납부 예외자 수준은 전체가입자의 27~28% 수준 유지되고 있음. 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① 소득 파악 인프라 미흡 (객관적 자료에 의한 부과 징수) ②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③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그 원인.
 - * 납부 예외자(07. 12 현재) : 5,107천 명(전체 가입자의 28.0%, 지역가입자의 56.4%)
 - * 지역가입자 누적체납자(218만 명), 체납액(5조 8천억 원), 금액기준 징수율(79.4%)

표_ 연도별 납부 예외자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전 체 가입자(A)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C)	납부예외율 (C/A)
		소계	사업장	지역(B)		
2008.06	18,290	13,226	9,403	3,823	5,064	27.7
2007.12	18,212	13,105	9,149	3,956	5,107	28.0
2006.12	17,691	12,755	8,605	4,150	4,936	27.9
2005.12	17,073	12,439	7,950	4,489	4,634	27.1
2004.12	16,994	12,311	7,581	4,730	4,683	27.6
2003.12	16,923	12,358	6,959	5,399	4,565	27.0
2000.12	16,095	11,649	5,676	5,973	4,446	27.6

추진 방안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 국민연금은 급여율을 50%(현행은 점진적으로 40% 수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수급자 강제노동 폐지

현황 및 취지

- 현재 전체 기초보장 수급자의 80%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령·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함.
- 최저 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줄어듦. 2009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은 크게 줄었으며, 중부세 감세로 인해 주로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지방분권 교부세는 20% 이상 줄어듦.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수 1만 3000명,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7만 명분의 복지예산이 줄어듦.
-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
-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조사(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에 달하고,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높음.
-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으나,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짐.

표_ 주요기관 및 국가의 상대빈곤선 기준

주요기관/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본	평균소비지출의 68%

추진 방안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대적 수준의 빈곤선 계측,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가구원수별 상대적 수준의 생계비 계측, 급여 수준의 확대.
-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개편을 통해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여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실시.
- 자활의 경우 실질적인 보장체계를 구축. 특히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제 조항을 폐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함(노동에 대한 자기선택권 부여).

이양사업 평가 후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경우 환원

현황 및 취지

- 2005년 참여정부 아래 지방분권사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138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함.(2005년 예산 규모 5,959억 원).
-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내국세 증가율에 고정된 분권교부세율 : 내국세 총액의 0.94%), 신규 사업이나 사업 확장에 대한 고려가 없음. 또한 지방 이양 이후 사업비는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였지만,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10%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사업우선순위에서 취약 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림.

추진 방안

- 지방이양사업 평가 후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경우 환원.

현황 및 취지

-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평균 12.24명(국제노동기구 조사 결과, 2004년)으로 한국의 60배에 달함.
(※ 덴마크 1,000명당 57.51명, 스웨덴은 38.73명, 일본 2.04명, 한국은 0.22명.)
- 이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량은 과중함.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2006년 395만 명에서 2010년 1,017만 명으로 157%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15조 3천억 원에서 26조 5천억 원으로 71.8% 증가하였음. 복지사업의 수도 58.2% 증가함. 그러나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1.044배 증가(2006년~2010년)하는 데 그쳤음.
-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채용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7,000명 충원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복지부는 3년간만 신규 채용 복지 공무원 인건비 50(서울)~70%를 부담하고, 이후엔 전액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함.

추진 방안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공공)센터를 설립하고 복지 분야에서 100만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사회서비스센터는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관으로 산후조리, 보육, 방과후 보육, 고용 서비스, 간병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담당.
- 사회서비스센터는 복지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 질의 개선, 복지 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복지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

주택보급률 100%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집은 사는 사람에게, 투기주택 매입(수용)제도 도입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전월세 이율의 소득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
도시개발의 공공 통제로 용산 참사 재발 방지
거주자 중심의 주거 재생 추진



공약 : 주거의 공공성 강화, 용산 참사 재발 방지

1. 집은 사는 사람에게

-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 헌법과 법률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을 적정가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의 ‘분배’에 적용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 실시

- ‘하우스 푸어’ 방지법 : 가계의 주택대출을 정부가 인수하는 것은, 우선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가계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제도임.

3. 전월세가 안정방안

- ‘전월세 이율의 소득연동제’

4. 용산 참사 재발방지 법안

- 도시개발의 공공통제, 강제철거 금지, 선대책 후 사업 추진

5. 거주자 중심의 주거 재생

- 주거관리형 주택개선사업 강화

자산과 거래의 대상이 아닌 사는 공간으로서의 집

진보신당은 주거의 물리적 조건인 집과 그 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권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된 주택문제는 집과 그 곳에 사는 사람의 불일치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진보신당은 작년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재개발 특별조치법’을 발의함으로써, 기존의 뉴타운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뉴타운 법이라 불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의 법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시개발상의 장점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뉴타운 완전폐기와 함께, 집을 집답게 만드는 공약을 새롭게 고민하여 내놓습니다. 진보신당은 이 공약을 통해서 집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살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능력에 맞춰 주어지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공급 중심에서 분배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현재 정부와 보수야당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투기판’에서 빼내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택공급률이 100%, 200%가 넘어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세입자 신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주택정책에 있어 그 곳에 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집을 얻기 위해 진 빚에 열심히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피폐해진다면 이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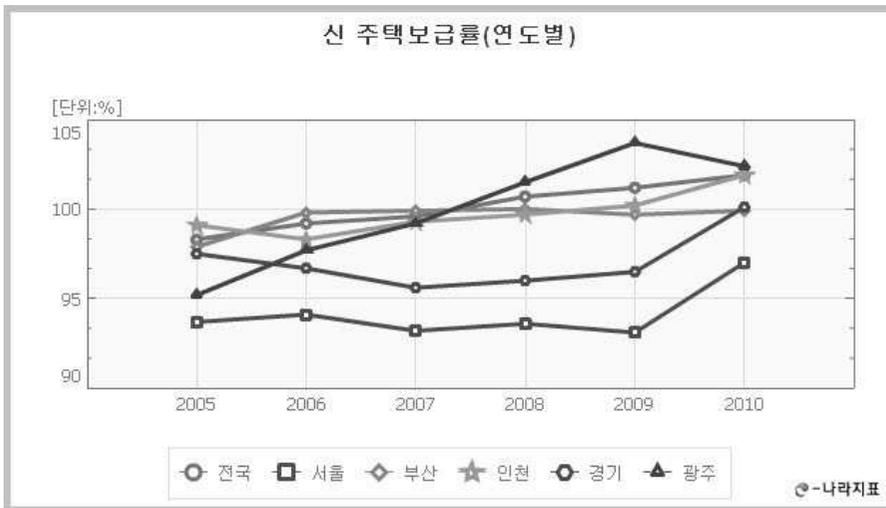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집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고, 집있는 사람조차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중심에 놓는 주택정책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멀쩡한 집을 고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 1 집은 사는 사람에게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도입

현황 및 취지

-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7년부터 100%를 넘어섰으며, 산술적으로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 결국 우리나라 주택불균형의 가장 핵심은 공급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체계에 있음.
- 헌법과 법률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을 적정가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의 '분배'에 적용할 필요 있음.



- 자가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주택수용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된 주택을 분배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살권리에 필수적인 주택을 '시장논리'로부터 독립시키는 중요한 과제임.

추진 방안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통계조사 및 세무조사 즉각 실시.
- 비 자가주거 주택에 대한 수용계획 마련 및 법 개정.
- 공토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비주거용 주택의 수용 절차’ 명시
- 임대주택법 상에 수용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관리 방안 명시
(※ 수도권외 중소형 주택 우선, 1호당 공시지가 기준 2억5천만 원 편성. 국민주택 기금 우선 활용, 국민연금 투자계획에 반영.)

현황 및 취지

-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 부채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악성 부채라고 진단하고 있음. 특히 이 중 주택의 취득과 임대에 따른 부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 푸어’는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 156만 9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현대경제연구원).
- 문제는 이와 같은 부채의 불균형이 크게 주택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부채로 집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간 심각한 자산불균형을 양산한다는 사실임. 이는 일차적으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미비한 탓이고, 이차적으로는 가계의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와 같은 주택대출에 대해 부채의 유동화를 강화함으로써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주택금융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사회주택 확보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계의 주택대출을 정부가 인수하는 것은, 우선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가계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제도임.

추진 방안

- 무주택자의 주택대출을 우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매입하여 공공대출로 전환.
- [단기] 자가 소유자의 경우, 대출 비율이 집값의 50%를 상회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대출을 인수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 유도.
- [장기] 주택 관련 대출제도를 정책금융으로 일원화하여 공공관리 강화.
- ‘주택대출인수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주택 대출에 대한 공공인수의 근거를 마련함.
- 현재의 주택금융공사를 신용보증 기능보다는 직접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신규 건설되는 주택청을 통해 사회주택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주택대출 인수채권을 발행.
- 주택대출 주택의 사회주택화를 통한 자산화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정책 3 전월세 이율의 소득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현황 및 취지

- 현재 전월세에 적용되는 이율은 특별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특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전년도 혹은 전차 계약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 경우 실질적인 가계부담 능력과는 상관없는 집값 인상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전월세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임.
-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총 3차례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실패하였음. 이는 공급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었기 때문임.

-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무주택조건 폐지)
- 211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 조정(금리 인하 등)
- 818 전월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면세, 주택재개발 사업시기 조정, 임차인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진보신당은 이런 전월세와 관련하여, 이를 ‘전년연동제’가 아니라 ‘소득연동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함.
- 통상 타 당에서 언급되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전년 대비 5%에서 10%로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전월세가를 전제로 한 내용으

로 불합리함. 오히려 가계의 부담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월세의 사회적 통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직접적이고 타당성이 있음.

추진 방안

- [우선]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변동률에 기반한 전월세 상한기준 마련.
- [단기] 1가구 10가구 이상자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임대주택법 상에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규정 명시.
- 주택법상에 소득 연동형 전월세 상한제의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

강제철거 금지, 선대책 후 사업 추진으로 용산 참사 재발방지

현황 및 취지

- 2008년 용산 참사 이후, 뚜렷한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곳곳에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 용산 참사는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불도저식 도시개발 사업의 종말을 알리는 시대적 징후였음. 하지만 이후 법제도 논의와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음. 이는 원천적으로 용산 참사 자체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기보다는 대중요법적인 처방에 집중하였던 탓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의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한편, 대책이 없는 강제철거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이에 용산 참사 이후, 각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용산 참사의 실질적인 재평가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추진 방안

- [우선]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함.
- [단기] 용산 참사 재발 방지 법안을 목록화하여 일괄 발의, 제정하는 형태로 용산 참사의 후속 조치 완료.
- ‘도시개발법’ 개정 : 모든 도시개발의 공공 통제 강화, 선 대책 후 사업 추진의 원칙 명시.
-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실거주자의 동의 없는 주택의 퇴거 조치 및 철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주거관리형 주택개선사업 강화

현황 및 취지

- 건축물의 노후 연한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전면 철거·재개발 방식의 주거 재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기존 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주거관리사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주거관리 및 개량사업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과 공공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기존 주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개선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 통상 주거복지정책은 대부분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으로 한정되어 지원되어 왔음. 그동안 정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해오지 않았음. 특히 에너지 전환 시기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단순히 거주자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서울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꺼비 하우스’는 기존의 주거복지를 단순히 임대료 지원 정도로 이해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 주택의 주택개량, 즉 물리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을 동시에 이루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임.
-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관리를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전면 재개발’ 방식의 주거정비 방식을 바꿀 수 없음.
- 또한 현재 주거유형 중 절반 이상을 넘어선 아파트형 주거형태에 맞는 지역 공동체 육성을 통해, 각종 재개발로 사라진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추진 방안

- [단기]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재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주택법’ 개정 : 주거관리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 ‘주거지재생법’ 제정 : 기존의 정비사업에 포괄되지 않는 제3섹터 방식의 주거지재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물리적 개량과 사회적 인프라 지원에 대한 명시.

국민과 환자, 의료인이 행복한 의료생태 실현

의료비 본인 부담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 관련 대학에 무상교육 도입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적 수가제도로 전환
보험료 면제제도 도입 및 보험료 부과 합리화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공약 :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1. 의료비 본인 부담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은 본인 부담 면제
 - 의료급여 환자,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 폐지.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
2.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 법정 비급여 관리 개선, 비급여 평가 기구 설치
 -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전체 병상의 70%으로 확대
3.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 관련 대학에 무상교육 도입
 - 의료 관련 대학에 무상교육 도입하여 의료 인력 확충
 -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전체 병상 50% 이상으로 확대
4.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적 수가제도로 전환
 - 현재의 사후보상 시스템에서 사전 목표 시스템으로 전환
 - 주치의 제도 아래 인두제 도입
5. 보험료 부과 합리화 및 기업과 국가 책임 강화
 -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직장건강보험 적용
 - 보험료 상한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폐지
6.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환경과 여건 조성
 -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건강 친화적인 주거 보장
 - 미래 세대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 간병, 활동 보조,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연대적 일자리 확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의사, 질병으로 파산하는 가계

질병 치료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 빈곤, 자살,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개인파산 원인의 6.8%는 의료비 때문이며,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 시민의 4%가 의료비 때문입니다. 자살 원인의 20.9%가 질병의 고통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보장성이 전혀 확대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국가의 위기대처능력이 약화되어, 신종 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돈벌이 기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3시간 대기, 30초 진료 등 기계적인 의료인과 환자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강요하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 의료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건강할 수 있는 사회 실현

국민의 높은 건강 수준은 학습 능력과 잠재력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국민의 노동 역량을 강화해줍니다. 과도한 치료비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각 가정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질병 치료를 가로막는 과도한 본인 부담을 없애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낭비적인 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0초 진료로 의료인-환자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의료환경을 개선하며, 건강관리를 강조하는 공공의료제공체계를 확립하며, 의사 등 의료 공급자를 사회적 재원으로 배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황 및 취지

- 계층 간에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보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 격차가 더 빠르게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 이용의 양극화로 다시 건강 수준의 격차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킴.
-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의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비율이 약 3~0%. 빈곤층의 경우 약 8~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하 계층의 30.1%가 의료 이용 포기 경험.)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2011년 8월), 국민의 약 55.9%가 본인 부담 정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의료 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를 심각하게 생각함.
-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과 관련하여,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 됨(적극 동의 82%)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정 이상의 기본적 의료 혜택을 보장해야 함(적극 동의 71%)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음.

추진 방안

-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은 본인 부담을 면제.
-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폐지.
- 모든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 폐지.
- 본인 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제한.

현황 및 취지

- 비급여는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가로 막는 커다란 장애물임.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가 전 국민의 약 15.9%에 달함.
- 의료 이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를 보면, “다소 부담된다”와 “많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28.12%와 16.70%로 나타났음. 또한 이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12.07%에 달함. 특히 수급대상자의 24.13%, 법정 차상위의 26.88%, 소득차상위의 20.46%로 나타남.
- 비급여 본인 부담은 사회(국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환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 의과부문의 비급여 진료비는 3조 7,730억 원으로, 이 중 입원 비급여 진료비는 62%, 외래 비급여 진료비는 33.2%로 나타남.

추진 방안

- 법정 비급여 관리 개선. 법정 비급여 기준 중, “③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④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급여로 전환.
- 비급여 평가 기구를 설치하여 치료에 필요시 급여 인정.
-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전체 병상의 70%으로 확대.

현황 및 취지

-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기관 수 비중으로 7.2%, 병상 수 기준으로 11.1%에 불과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표_ 연도별 공공병원 기관 수 및 병상 수 현황(단위 : 개소, 병상)

공공병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관 수	128	135	141	151	164	167	168
병상 수	46,391	47,586	48,730	50,706	51,438	52,398	52,730

* 자료 : 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 2009. 9. 25.

- 민간 병원들은 국가의 공공의료 필요에 응하지 않음. 신종 플루가 유행하였을 때, 서울대병원 등은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한 바 있고, 사스가 유입되었을 때도 민간 병원은 입원 병실 마련에 비협조적이었음. 적절한 치료를 해 줄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환자가 빈발함.
- 낭비를 조장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90%(기관 수 비중 92.8%, 병상 수 기준 88.9%)를 차지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과잉 검사를 남발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시행으로 환자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임.
- 서울의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남. 하지만 의료환경은 도시 지역이 더 취약함. 취약 계층과 노인 인구는 도시에 가장 많이 있으나, 보건(지)소 등 1차 공공의료기관은 농어촌과 벽지를 중심으로 분포. 광역시의 경우 구별 1개로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의료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기반 자체가 부족.
- 취약 계층이 의료 전문직에 진출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 직종 진출을 지원 독려할 필요가 있고, 질병의 원인을 추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의료 전문직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들은 자격 획득 후 공공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음.

표 한국의 의료인 현황

의료인 총수 및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10)	424,667명 / 840명
병상당 인구수(09)	97명
의사 1인당 인구수(10)	496명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10)	2,328명

*자료 : 복지부 복지 분야 주요 지표 100선. 보건복지부 통계 포털

- 이는 인력 편중의 해소에도 도움이 됨. 서울지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 인력이 모두 다른 시도에 비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2009년도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인구는 평균 639명. 이 중 서울 456명, 대전 516명, 대구 528명, 울산 902명, 경북 851명, 경기 841명, 인천 837명으로 나 타남.)

추진 방안

- 공공의료기관 비율 확대(전체 병상의 50%를 넘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공적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확대(현재 일산병원).
- 도시형 보건지소 등 공공적 1차 의료기관 확대.
-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전달체계 강화.
- 의대, 한의대, 약대 등 무상교육 도입.
-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응급구조, 치위생 등 무상교육 도입
(※ 취약 계층 등 우선 선별, 공공의료기관 복무 조건)

정책 4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적 수가제도로 전환

현황 및 취지

- 의료비 증가율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별 수가제도라는 과잉 진료를 조장하는 진료비 보상제도가 주요 원인임. 행위별 수가는 행위 하나하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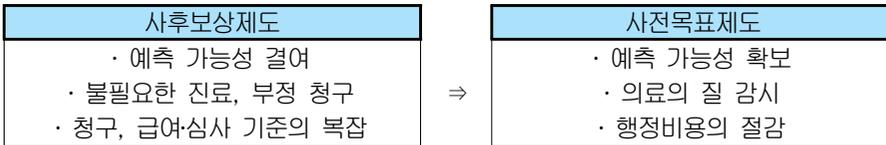
대해 보상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제한된 시간 내 많은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3시간 대기하여 30초 진료는 행위별 수가제도에 주요 원인이 있음.

- 또한 진료비를 받기 위한 청구 및 심사, 상대가치시스템, 지급 및 실사 등 복잡하여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 및 소송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함.
-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건강보험 재정지출액 137조 원, 재정적자 47조 원 예상(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 2010).

추진 방안

- 현재의 사후보상시스템에서 사전목표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함.
-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적용 : DRG(질병당 수가제)와 총액 예산제 도입.
- 주치의 제도 아래 인두제 도입.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의 틀>



<진료부문별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입 원	외 래	요 양
DRG(기본질환) + 행위 수가제(특수질환)	행위 수가제 + 외래 포괄 수가제 + 인두제 + 통원 수술 포괄 수가제	일당제(환자군별) + * 총액 계약제

현황 및 취지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 발생.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는 2001년에는 163만 세대, 2002년에는 137만 세대, 2004년 카드 대란 등 경기침체로 인해 200만 세대, 2006년 209만 세대, 2007년에 205만 세대(보사연, 2010). 2008년 7월 한시적 결손 처분으로 9월 기준 199만 세대, 연말에 다시 207만 세대.
- 체납 가구 비율은 전체 지역 가입자 778만 세대의 약 25%이며, 6개월 이상 세대는 1,590천 건(78.6%)고 금액은 1조 7,460억 원(91.8%)에 달함.
- 경제활동을 마친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음. 건강보험은 건강할 때(젊어서 경제활동을 할 때) 납입한 보험료로 질병 위험이 높을 때(나이 먹어 소득이 없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때)를 대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함. 소득 없는 노년층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체납자에게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을 무시하는 것임.
- 2010년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가 232만 명, 133만 세대에 달함. 급여 제한자 중 98.6%가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 취약한 아동 38만 명, 노인 9만 2천 명 건강보험 급여 제한 중임. 이 중 소득이 없는 경우가 74.4%로,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96%로 생계형 체납에 해당함.
- 한편, 지역 가입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연 500만 원 이하 소득)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고액 재산은 부과하지 않음. 직장 가입자의 금융소득, 임대료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소득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보험료는 월 소득 7,800만 원에 210만 원이 상한임. 기업(고용주) 부담 50%는 국제기구 권고의 최소 수준으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과소함.

추진 방안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직장건강보험 적용(실업급여 기간에도 직장건강보험 적용).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기준 완화.
- 모든 소득(금융, 이자, 임대료 포함)에 건강보험료 부과.
- 보험료 상한을 단계적으로 인상(최종적으로 폐지).
- 고용주 부담률 단계적 인상(50% → 60%), 국고 부담 비율 상향(20% → 30%).

정책 6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환경과 여건 조성

현황 및 취지

- ‘사회 구성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인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또한 보건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건강 위협의 일상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료로 상징되는 보건의료개혁정책을 넘어서는 “건강권을 보장하는 건강정책”이 필요함.
- 이는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빈곤, 불평등한 교육기회, 고용 불안정, 실업, 열악한 주거환경, 불건강한 행동,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임.
-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종합적이며 형평성 있는 효과적이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질 높은 건강 보장 체계가 필요함.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은 건강에 대한 다른 부문들의 책임성과 동시에 건강의 형평을 증진하며, 보다 총체적이고도 생산적인 사회들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추진 방안

-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 건강을 발전시키는 학교,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강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하며 수준 높은 대중교통 확충(통합적인 연계망, 자전거걸기 등 대체 수단 확대 및 안전 확보, 배기가스 관련 사망률 및 유병율 감소, 시가지 내 저속운전 조치).
- 건강 친화적인 주거 보장 : 최소주거환경기준 시행, 공공주택 다양화 및 확대,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가임기 여성 및 양육 아동,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추가 지원).
- 건강 증진에 충분한 수준의 영양 공급 : 무상학교급식 시행(신선한 과일, 채소 포함),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공급프로그램 운영, 건강 위해식품 제한 강화.
- 미래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 빈곤 가구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지원,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무상교육(총 배출 인력의 10% 이상).
-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사회연대적 일자리 확대 : 사회적 서비스 제공 시설의 50% 이상 수준을 공공시설로, 간병, 활동보조,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연대적 일자리 확대.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핵 2030, 녹색에너지 전환

빈곤층 에너지 지원, 주택 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보편적 실현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로 온실가스 실질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생활공간에서 유해요인 관리 강화, 다양성과 안전성 확보



공약 :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1. 탈핵 2030, 녹색에너지 전환

- 2030년까지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충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탄소세, 혼잡통행세 등 에너지 효율화 제도 도입
-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 에너지 평화교류

2. 빈곤층 에너지 지원, 주택 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보편적 실현

-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 지역 에너지 복지와 일자리 창출 연계하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로 온실가스 실질 감축

- 배출권거래제 입법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
-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재수립

4. 녹색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에너지다소비사업의 녹색산업 전환 지원
- 지역에 밀착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

5. 생활공간에서 유해요인 관리 강화, 다양성과 안전성 확보

- 방사능 물질 등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 생물의 다양성과 존재 권리 자체의 존중 제도화
- 안전하게 노동하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생산-유통-소비 체계 보장
- 채식 문화 보호와 보장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 동시 대응 시급

한국은 중화학공업 주도 수출 중심 산업구조와 대량소비를 수반하는 급속한 도시화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에 매우 취약해져 있습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의 2배입니다. 한국은 매년 3% 전후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도 경제 성장을 빌미로 이를 전제/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20년 사이에 도래할 석유 정점(Peak-oil)을 대비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이 명확해진 핵발전을 대체할 녹색경제/산업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증설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대항하는 반핵 및 탈핵 세력의 결집으로 탈핵이 최초로 전국적인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현실(에너지빈곤가구는 전체의 7.8%, 130만 가구), 대기업과 대도시 위주의 에너지 수급과 이에 따른 갈등(밀양 이치우 노인 분신 사건)에서 보듯, 에너지와 안전은 인권과 계급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러시아 가스관 도입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와 환경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탈핵 2030 충분히 가능하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로 신규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면 한국 사회는 탈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의 환상을 깨고 독일식 탈핵 모델로 시급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이루고, 녹색 경제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와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시장 의존적 해법이 아닌 실효 있는 규제제도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녹색 에너지와 환경복지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남북, 동아시아의 비핵/탈핵 및 재생에너지 공동체를 위한 교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황 및 취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핵에너지 확충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이명박 정부뿐이며,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된 독일식 탈핵(phase-out) 시나리오 도입이 시급함.
- 2030년을 목표점으로 역산(back-casting)하여 에너지 수요 조절과 에너지 믹스를 재산정하고,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절약 > 효율화 > 재생에너지 확대 순으로 정책 순위를 가져가고, 이를 달성할 수단을 구체화해야 함.

표_ 주요 핵발전국의 전기소비 및 재생에너지 비율 변화

	1998-2008 전기소비 증가(%)	2000-2008 재생전기 비중 (%)	1998-2008 핵발전 비중 증가	핵발전 정책
독일	5	6.4 → 16	31 → 23	폐기
영국	7	3.5 → 6	29 → 14	거의 포기에서 계속으로
스페인	57	17 → 21	31 → 18	계속
일본	6	거의 변화 없음	36 → 25	계속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한국	90	0 → 1	43 → 36	계속

*출처 : 이필렬,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가」(2011)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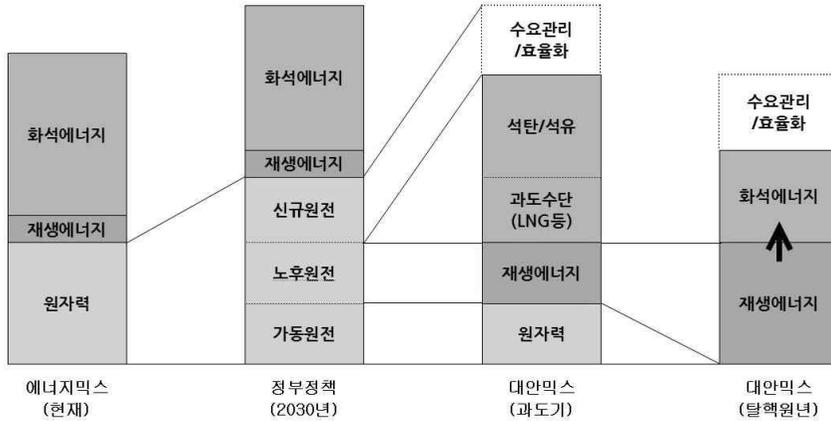
추진 방안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 삼척, 영덕 신규 부지 선정 철회, 고리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 탈핵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에너지 대체 단계적 실행.
(※ 2013년 작성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탈핵을 전제로 시민의 참여 보장하여 전면 재수립)
- 에너지/기후 정책에 시민참여 보장(2004년 전력정책시민합의회의 모델)

-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 방식 재검토.
-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 (※ 핵발전 편중 공익광고와 교과서 제재)

그림_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 개념



* 출처 : 김현우, 『탈핵』, (이매진, 2011)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 30*4 플랜 :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 전력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혜택 폐지로 에너지다소비산업 효율화 유도.
- 에너지 관련세제 통합합하고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추가 도입.
- 대도시 에너지 자립률 법제화, 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과 건축물 개량사업, 대도시 혼잡통행료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서남해안 풍력, 동네 태양광에너지 확충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제(RPS) 요건 강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 에너지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 피해 방지(고용연계 재교육, 정의로운 전환 펀드).

- 중소기업, 지역 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숙련, 금융 지원).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 부품공장 설립,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러시아 가스관의 평화적 효과적 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 설치.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 공동 논의/대응기구 구성과 탈핵로드맵 추진

*참고 : FIT의 제도입과 RPS 개선의 필요성

-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RPS(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 발전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22년까지 10%로 상향하도록 의무화함.

- 태양광의 별도 할당량(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1,200MW 별도 설정)을 두고 있으나 너무 적으며, 소규모 민간 태양광 진출이 보장되지 않음. 또한 저렴하고 설치 용이한 조력, 대규모 태양광 등으로 쏠려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에너지의 긍정성을 발휘하지 못함(태양광의 민간 내수시장 급속히 위축).

- 독일 등 외국의 사례도 FIT가 민간,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충에 훨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기요금의 현실화/상승과 연계하여 FIT를 제도입하고, RPS는 설치 종류와 방식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믹스 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함.

빈곤층 에너지 지원, 주택효율화 사업

현황 및 취지

-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이 저소득 계층일수록 높지만, 저소득 계층일수록 도시가스 등의 저가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형편.
- 한국은 현재 ‘에너지빈곤’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라는 임의적 규정으로도 120만 가구에 이름.
- 폭우와 한파 등 극도의 기후 격변이 체감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에너지빈곤층의 복지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됨.
-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정책은 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이고, 화석에너지 중심의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 중 대부분은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빈곤층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과 에너지 전환 효과 달성에서 크게 미흡함.

추진 방안

- 올바른 에너지복지법의 제정 :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을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효율과 전환 사업을 촉진하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 근거를 마련.
- 빈곤층에게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 에너지기본권 실현. ‘에너지 사회연대기금’ 조성, 지자체별 담당 위원회 설치.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 생계형 차량운행자 등 유가보조금 지급 및 세제상 지원 확대. 정유사 폭리 담합행위 근절하고 부당이익 전액 환수.
-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신규 주택에서 패시브 하우스 개념, 에너지 효율화 기준 도입. 기존 노후주택 단열강화(weatherization) 목표 설정, 기금 조성 (※ 그린홈 100만 호(신규 건설)을 WAP 100만 호 사업으로 전환)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

현황 및 취지

- 교토 체제의 일부로 한국에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에서 뺀 나머지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배출 총량을 맞추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마련됨.
- 그러나 진보적인 국제 사회와 국내 조직들은 이 제도를 기업과 투기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함. 감축을 시장 기제에 맡김으로써 그 자체 효과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금융 불안의 요인까지 만들기 때문임.
(※ "탄소 시장은 금융 기관의 새로운 놀이터"(산업은행 보도자료).)
- 2011년에 국회 기후특위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그마저 상당히 후퇴하여,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기업에게는 면죄부로 작용하고 오히려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의 실제 노력은 부차화될 우려가 큼.
- 한편, 정부가 수립한 '2020년까지 BAU(추세치 지속) 대비 온실가스 30%(2005년 대비 4%) 감축' 목표는 지나치게 보수적임. 시민사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 감축 역량을 감안하면 2005년 대비 25%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추진 방안

-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 : 목표관리제에 총량 감축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현재는 개선 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과태료에 불과.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징벌세 개념 도입 필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 수준으로, 총량 및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정.
(※ 한국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제조사, 사회적 공론화)

현황 및 취지

- 한국은 환경지수와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녹색경제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 잠재력이 매우 높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4대강 등 토목사업에 예산을 대부분 투입하고, 대기업 중심의 R&D와 수출산업에 편중되어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지 못함.
- ‘탈핵2030’ 계획에 조응하여 산업구조 녹색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녹색일 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희생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실현해야 함.

(※ 정의로운 전환 :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 환경과 노동자에게 유해한 산업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과 숙련 등을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추진 방안

- 주요 에너지다소비, 환경과피 산업의 중장기 전환 프로그램 지원(예 : 부실 조선 산업의 풍력 제조 및 설치 산업으로의 전환,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차 및 대중교통 제작 사업으로 전환, 토건업의 철도망 건설 사업으로의 전환).
- 주택에너지의 효율화, 환경 관리,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 투자.
-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

생활의 다양성과 안전성 확보

현황 및 취지

- 후쿠시마발 핵물질은 물론,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등 방사능 물질에 대한 위험이 일상 속에 상존함.
- 석면, 아토피 유발 환경 등 유해물질 관리 감독 체계가 부실하여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위협받고 있음.
- 구체적 사태는 거대 자본 주도의 대량생산-대량소비 농수축산업이 위험을 상존시키며, 생명권 차원에서도 정의롭지 않음을 보여줌. 생물종다양성의 확보와 함께, 다양한 생활양식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

추진 방안

- 토종종자 보존, 보급으로 농산물 중 다양성 확보.
- 동물권 개념 입법화 : 식용 가축 가금류의 집단 사육 제한.
- GMO 금지, 방사선 조사 규제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
- 국내 생물다양성 보존 및 국제적 보호 노력 참여(고래, 참치 등).
- 안전한 노동자, 안전한 소비자 :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 감독 강화, 정보 공개.
- 생명 지적재산권 제한과 공정한 이용 촉진.
- 아토피 스톱, 라돈과 석면 등 유해물질 관리.
- 채식 문화 보호와 보장 : 50석 이상 식당에 채식 식단 구비 의무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초중등 교육과정 및 학제 전면 개편

경쟁과 폭력이 지배하는 교육 현장을 인간 발달과 협동의 공동체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로 대학혁명



공약 : 인간 발달과 협동을 위한 교육 복원

1. [교육과정]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초·중등 교육과정을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
2. [학제]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 인문계고-전문계고 분립을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3. [대학]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5. [학교자치]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 현장 민주화
6. [비정규직] 각급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쟁과 폭력의 자리에 발달과 협동을

진보신당의 ‘교육혁명’의 첫 번째 약속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을 지배하는 ‘경쟁’과 ‘폭력’ 대신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입각해 교육목표, 방식, 평가체제, 물적 토대 등을 모두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로, 미적분은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핀란드형 교육’, ‘덴마크형 교육’ 식으로 파편적으로 논의되던 교육혁신론과, 몇몇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실험하던 소극적인 접근을 넘어선 체계적인 종합 처방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 문제의 근원이 입시 경쟁 교육에 따른 공교육 붕괴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 처방이기도 합니다.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학벌 철폐의 교두보

‘교육혁명’의 두 번째 약속은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학제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그간 한국 교육을 지배해온 6-3-3-4(2) 학제를 대체할 2-6-5-4(2) 학제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첫째 유아교육(2년)을 기본 학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며, 둘째 모든 중, 고등학교를 5년 과정의 통합중등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중등학교에서는 그간 복선형 학제로 분립되어 있던 인문계고와 전문계고도 하나로 통합되며 이 과정에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일반고로 모두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의 ‘교육혁명’ 공약은 ‘대학혁명’을 통해 완성됩니다.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구조를 점차 해소합니다. 또한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합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출발점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서 더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진보신당은 ▲학교 자치 법제화로 교육 현장 민주화, ▲각급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문대 국공립화, ▲학력 차별 금지법 등을 제시합니다.

정책 1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초등학교부터 경쟁과 폭력을 넘어 발달과 협동으로

현황 및 취지

-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공교육 붕괴 속에서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교육혁명을 단행.

추진 방안

-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목표 / 교육방식 / 평가체제 / 물적 토대 등을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 교육 목표 :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기조(L. S. 비고츠키의 교육 철학에 입각)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교육 등 각 발달 단계의 교육 목표 제시.
- 교수학습 목표 : 학문, 지식 습득의 양적 기준이 아닌 발달 기능 중심 / 개념의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는 진개념(genuine concepts)의 형성을 통한 개념적 사고 기능 발달 / 지성, 정서, 의지의 발달을 전 교과에 공통된 지향으로 설정. (예 :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로, 미적분은 선택으로)
- 교수학습 방식 : 집단적 과정과 개별적 과정의 결합 / 새로운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학습하는 습관’과 학습의 중요성 및 기쁨을 경험하는 과정 (과도한 양적 부담과 상대 평가로 인한 고통이 반드시 줄어야 함).
- 평가 체제 : 발달적 평가 및 발달기록부.
- 교사 : 학생 이해를 위한 관찰과 진단, 처방의 전문가이자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의 주체.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강화.
- 영역 : 교과 영역 / 관심 특기 영역 / 자치 활동 영역.
- 물적 토대 : 소인수 학급(교사 1인당 25인 이하) / 수업시수 감축 / 교과 내용 감축.

- 시간 편제 : 오전 교과 활동, 오후 관심 특기나 자치. 주당 학습시간은 초등 20-25 시간, 중등 기초 26시간, 중등 심화 30시간 정도(5일제 수업 기준).
- 교과외 분화와 통합 : 초등 단계의 낮은 수준의 분화에서 시작하여 중등 단계에서 점진적 세분화와 아울러 범교과 주제 활동 결합.
- 이질적 학습 집단 구성(수준별, 능력별 집단 편성은 금지).
- 학습 결손 보충 과정 및 학습 장애, 행동 장애, 정서 장애를 포함한 특수교육 영역에 대해 적극 지원.

정책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를 폐지하는 2-6-5-4(2) 학제

현황 및 취지

- 건국 이래 큰 변화 없이 지속되던 6-3-3-4(2) 학제, 복선형 학제(인문계고, 전문계고 분립) 등을 최초로 혁명적으로 재편하자는 것.

추진 방안

- 2년의 의무 유아교육 신설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의 중등과정으로 통합 / 인문고와 전문고도 통합중등학교(모든 학교가 인문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을 병행)로 통합 / 이 과정에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여 고교 서열제 무효화.

17	특목고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통합중등학교(5년)
16	자사고	고	고	고	고	
15	중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14						
13						
12						
11	초등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유아교육
10						
9						유아교육
8						
7						
6						
5						
4						
현재			전환 : 1단계		전환 :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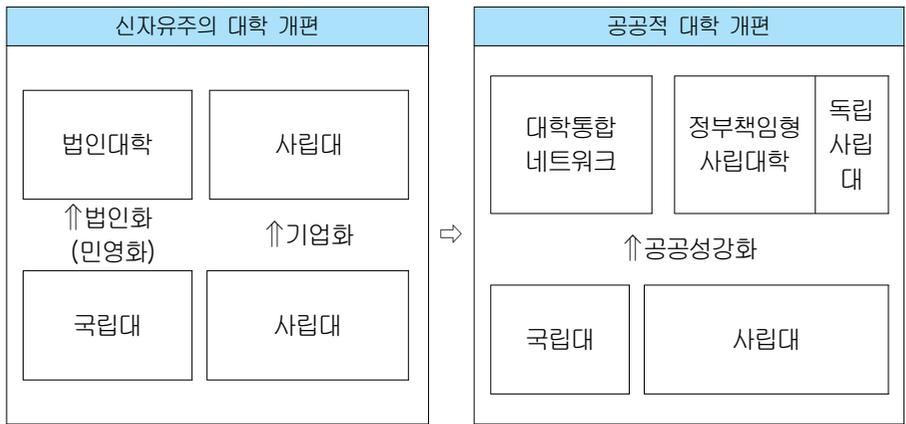
- 유아교육의 기본 학제 포함
- 만 4-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 학교를 기본 학제에 포함.

- 학부모의 양육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기본 학제에 포함.
 - 초등 교육과정의 선수 학습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과정에 조응하는 교육내용.
- 유아교육 관리는 단일한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 (선진국은 교육부에서 관리)
 - 중, 고등학교 전환 1단계 : 고교 서열 체제 폐지
- 입시 기관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질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 학교 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 제도로 전환.
 - 중, 고등학교 전환 2단계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의 통합중등학교로 전환.
- 현재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분리된 복선형 학제를 통합중등학교의 단선형 학제로 전환(현재의 복선형 학제는 전문계고 졸업자들을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군으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음).
- 통합중등학교에서 보편적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종합적 인간 발달 교육으로 전환.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현황 및 취지

-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 실시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점차 흡수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추진 방안

-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 이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을 중단하고 반대로 공공적 대학 체계 구축.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지방 캠퍼스에 대한 전략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립대(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들을 점차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공공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를 점차 해소.

- 신입생 선발 단위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함(공동 선발).
- 대학 입학 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수능 폐지 : 아래 참고).
- 대입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 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학점 취득은 대학통합네트워크 내에서 개방.
- 교양과정 이수 후 전공과정에 진학할 때 희망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되, 전공별로 학위 수여 정원을 두고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과를 추진(전공 과정 진학 시 특정 캠퍼스에 집중도가 높을 경우 교양과정 이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사립대를 지속적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에 결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교양과정에서 전공과정으로 진학 시 일정 비율을 상호 개방.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공동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
- 일반대학원은 학부 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 전형방법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대학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
-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 부여(전기 모집).
- 대학통합네트워크 바깥의 사립대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을 통해 자율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을 강화(후기 모집).

현황 및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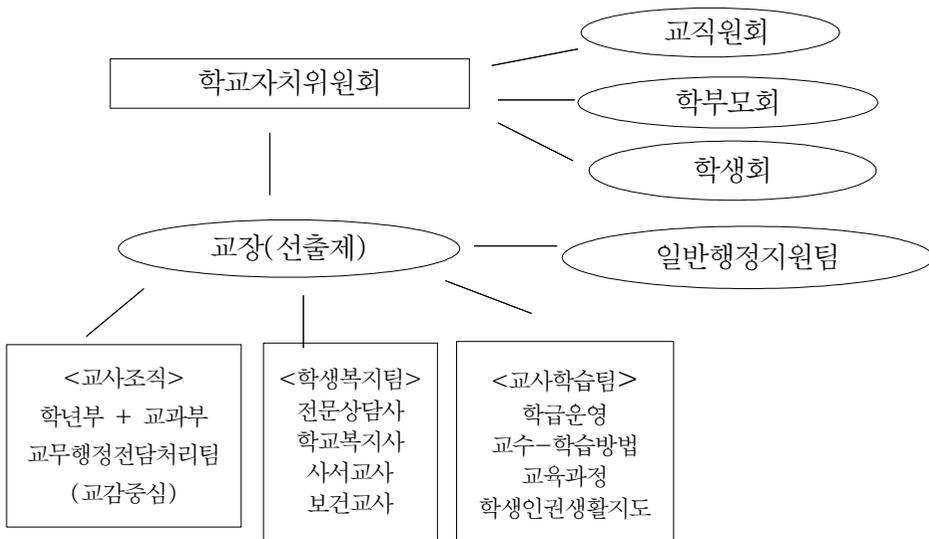
- 초·중등 교육은 전면적 무상교육 / 대학은 국고 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 등록금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립대를 준공립화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

추진 방안

- 초·중등 교육에서는 즉각 전면 무상교육 실시.
- 필수 교육비인 학교급식비, 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무상화 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 교육비(사실상은 필수 교육비에 가까움)인 방과후 교육비,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비, 앨범비 등도 무상화.
(※ 시행 과정에서 급별(초등부터), 지역별로 단계적 시행 로드맵을 밟을 수 있음)
- 대학은 1단계로 반값 등록금 실현, 이후 대학통합네트워크(국공립)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폐지(대학교육 무상화).
- 국공립대는 즉각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사립대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법인 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 적립금 규제 등을 실시.
- 2011년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5조 7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현 재정 규모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이후에는 대학통합네트워크부터 등록금을 폐지.
-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공공 재원을 지원받는 사립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이를 통해 준공립화(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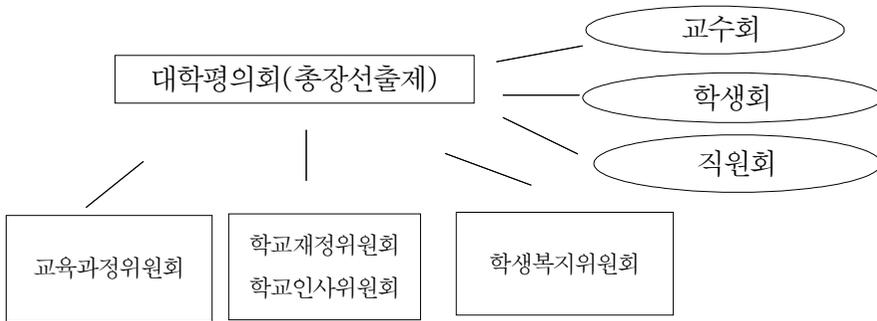
-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법제화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이들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
- 학교자치위원회는 학교 내 최고 의결 기구.



-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선출제 실시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황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단에서 선출 →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장의 역할 : 교직원회의의 주재 /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 학교 내외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 교원의 공동 학습, 연수 등 지원.
- 사립대 대학평의회 권한 강화 및 대학평의회 국공립대로의 확대
-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대의 대학평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에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추가 개정으로 이사회 권한은 축소하고 대학평의회가 학교 운영 권한을 갖게 함.

- 국공립대도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



-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법정 독립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 국가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입안, 심의, 결정.
-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 교원(교사 + 교수) / 학생(대학생 대표) / 학부모 대표 /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 정부 추천인(교육 전문가).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 : 유초중등위원회 / 대학위원회 / 평생교육위원회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 이에 따른 교육과학부의 재편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면 그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조정.

현황 및 취지

-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10만 명 이상의 급식, 행정, 전산, 방과후 관련 학교회계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대학에는 7만 7천 명의 비정규 교수가 존재함.
-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비정규 교수, 학교 회계직 등)을 정규직화하여 고용 안정과 교육환경 향상을 꾀함.

추진 방안

- 학교회계직의 정규직화 : 학교 회계직을 교육청 직접 고용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 비정규 교수의 정규직화 : 연구교수 등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 보장. 전업 시간 강사들에 대해 장기간의 안정적 연구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 업적 등에 따라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는 '비정규 교수 철폐 5개년 계획'을 추진. 비전업 시간 강사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위의 '5개년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함.

<기타 주요 교육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 단위 기술교육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교 평준화 재확립 (정책 2. 참고)
3. 일제고사 폐지 (정책 1. 참고)
4. 초, 중등 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로 감축 (정책 1. 참고)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 시간은 9시로
6.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로까지 확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 2. 참고)
8. 교원 평가, 교원 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 인정 체계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 공직의 학벌 독점 금지법 제정

공약 : 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통한 탈성장 사회 기반 만들기

1.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
 - 문화예술생태계의 전면적인 재편
 -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 보장
2. 문화산업/자본의 배타성을 넘어선 문화 다양성의 보장
 - 문화검열 제도/기구의 폐지
 - 네트워크형 문화산업 구조 형성
 - 소비지향 관광정책의 전환
 - 도서정가제 강화로 동네서점 살리기
3. 생산자와 향유자의 수평적 연대를 통한 문화공공성 강화
 - 시민 문화기준선의 마련
 - 문화시설 전문인 제도 수립
 - 도서관의 공공아카이빙 거점화

* 진보신당의 19대 총선을 위한 문화 분야 정책 공약은, 문화예술인 당원들로 구성된 진보신당 문화예술위원회(준)이 제안한 「진보신당 총선 문화예술정책 공약 제안 -“혁신과 전환”으로 “성장보다 성숙”을」을 바탕으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

진보신당은 강령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의 발전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대적 전환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기인 2012년 19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정책 공약을 수립합니다.

우선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이라는 방향은, 2012년이 가지는 전환시대의 논리를 ‘탈성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정책 방향을 함의합니다.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탈성장은 단순히 성장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사람과 사람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지향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정치집단에서 또 다른 정치집단으로의 권력 이양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간 경제 우위의 사회질서가 문화 우위의 사회질서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런 전환을 ‘문화사회의 주류화’를 통한 문화적 전환으로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문화산업자본에 의해 포섭된 문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창작자의 영광이었던 영화와 음악은 창작하지 않고 다만 유통할 뿐인 상업자본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창작자의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었던 지적재산권은 다수의 문화향유자를 범법화시키며 약탈적 권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문화진흥정책은 문화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1, 2차 창작자 대신에 자본화되어 버린 3차 산업자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의 산업화와 자본화 극복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문화의 산업화/자본화’는 결국 문화의 본원적인 의미인 인간 자체의 다수성, 그리고 그것의 표현인 표현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업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포섭된 문화는 곧 문화에 대한 보수적 통제와 연결됩니다. 문화의 가치는 이익의 여부를 벗어나, 그것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문화의 보수화는 문화에 대한 한 가지 시각을

강요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보장할 제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전환은 여전히 부가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문화 창작 및 향유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권리로서 실질화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과 문화적 다양성의 실질화는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시민들의 수평적인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공공성’의 형식과 내용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2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복지담론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권리가 아니라 시혜의 영역으로 놓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의 변화가 없이는 앞서 언급한 어떤 문화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문화 생산자와 향유자의 수평적 연대를 통한 문화공공성 달성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취지

- 문화예술인의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 신분보장 △ 소득보장 △ 활동보장이라는 3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기존의 예술인복지법 논의는 대부분 ‘소득보장’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신분보장이라는 측면과 활동보장이라는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큼.
- 문화예술인 소득 보장의 핵심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개의 급여 방식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장을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 서지 못함.
- 또한,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작업 연계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함. 정부가 해온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전공이나 작업 활동과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생계 지원형 일자리’사업이었음. 이에 따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만족도는 50% 내외를 보이고 있음(안주엽, 「문화 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추진 방안

- 기존의 활동실적 중심의 등록제도에서 벗어나 무형적 창작활동도 고려한 ‘공간매개형 등록제도’ 도입. 공간매개형 등록제도의 핵심은, 문화예술 생산을 위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고 특정한 문화예술생산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를 등록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데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각 지역재단에 ‘예술인신용보증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등록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분보장을 실시함. (금융거래, 임차거래 등의 근거로 법적 제도화) 현행 문예진흥법 내에 ‘문화예술인의 신분보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개정.
- 문화예술인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특례 사항 마련(건강

보험 : 지역가입자 납부액의 절반에 대한 국가지원, 고용보험-산재보험 : 6개월 이상 공공프로젝트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

- 현행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가입 문화예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문화사업,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인 매개 공공프로젝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규정 포함.
- 기존에 복지부나 노동부 주관의 생계형 일자리 사업 외에, 문화예술인들의 작업과 연계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새롭게 발굴.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기관별로 할당식/하향식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프로그램 외에 ‘문화시설 전문인제도’ 등 실질적 대책 수립.

문화기본법, 국공립문화시설 무상화

현황 및 취지

- 현행 문화법령은 사람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근대적 법령 체계임.
- 현재에는 권리로서의 '문화권'과 이에 따라 사는 지역, 속한 계층, 받은 교육수준, 성별 및 취향에 따른 차이에 따라 문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체계를 통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적 문화재정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면 무상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안

- 시민 문화기준선 및 문화권에 대한 규정은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함.
- 국공립문화시설의 전면 무상화는 기존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면서 오히려 전달체계에 비용이 투입되었던, 문화바우처 사업과 각 기관별로 실시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 가능함.
(※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에 투자된 재원이 347억 원, 소외계층 문화지원(정책사업)의 경우 671억 원(2010년 기준))
- 도서정가제 강화 : 구멍투성이인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프랑스의 '랑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창작과 출판, 유통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주제 특화 서점, 동네서점 살리기.

독립/다원문화 활성화, 예술조합 설립지원

현황 및 취지

-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의 방식이 아니라 공적인 평가의 부재에 있음.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단체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례관리 및 평가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창작자 상호간 평가 및 비평의 활성화를 통한 공론화를 지원해야 함.
- 이와 함께 문화지원기구에 대한 개편도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3차 생산물에 대한 지원과 유통에 지원하는 현행 ‘콘텐츠진흥원’의 구조를 1, 2차 현장 종사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의 ‘대중문화지원기구’로 재편해야 함.
-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토대가 되는 원천 창작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고, 문화자본 중심의 쇼케이스 등 지원 대신 창작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추진 방안

- 공공지원단체(작품) 등록제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공공평가제 및 등록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사업평가기구’를 준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도록 함.
- 현행 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구 설치의 목적에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함.
- 이와 별도로, 독립예술과 다원문화의 육성을 위해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창작물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함. (※ 1광역시도에 1 예술영화전용관 설치 지원, 멀티플렉스 내 독립영화전용스크린 쿼터제, 독립예술과 다원문화에 대한 비평 및 매체 발행지원)
- 현재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은 수익추구형 모델로 인해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예술조합법’의 제정을 통해서, 예술생산자조합에 대한 공공계약 우선 등 수익의 적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적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 기업 등 문화행사시 예술

생산자조합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문화비 지출로 인정하여 법인세 공제 실시 등의 인센티브 도입.

정책 4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지역 중심의 문화생산

현황 및 취지

-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기초정부 수준의 문화재단이, 11개의 광역정부 수준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강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을 운영/유지하는 '시설관리형' 재단에 가까운 것이 현실임.
- 문화부는 2011년 10월 광역문화재단협의회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임의적 성격의 것에 불과함.
- 문화재단의 주요한 과제는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이므로, 정부와 광역 문화재단은 직접적인 사업수행기관이기 보다는 기초정부 문화재단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전달체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안

- '지역문화재단지원법'을 제정하여, 기초정부 수준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상대적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함. 지역문화재단간의 네트워크형 사업교류 및 협력 사업을 촉진시킴.
- 광역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문화창작 공간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창작지원 사업과 기초 문화재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사업(메세나, 예술지원박람회 등)을 시행하도록 역할 분담함.

문화영향 '배심원제도' 운영

현황 및 취지

- 최근 학교폭력 방지를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연재되던 웹툰이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되었고, 작년에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게임 설타 운제'가 시행되기도 하였음.
- 문화생산물의 영향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려우며, 그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문화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검열제도가 당사자나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의 공개적인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것임.
- 진보신당은 음반, 영화, 게임 등에 대한 규제정책 시 이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각 장르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검열기구들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여성가족부 산하의 음반심의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특히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문화적 기준에 대한 합의 부재라는 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규제기구의 과잉화로 인한 재정낭비의 요인이 발생함.
- 문화생산물에 대한 규제는 그 성격상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당대의 사회적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함.

추진 방안

- 문화생산물에 대한 규제 업무는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문화부는 자체 기구로 대중문화 배심원 풀제를 운영하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방식.
- 의견 권고에 따른 창작자의 소명권 부여,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론 과정을 통해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 기준'을 형성하도록 유도.

모든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가를

현황 및 취지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의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201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 759곳 △박물관 및 미술관 : 800곳 △문예회관 : 192곳 △지방문화원 : 228곳이 설치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지역문화시설은 지역문화활동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문화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지역문화시설의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부재임.
- 2009년 대비 2010년 지역문화시설은 총 96개소가 증가하여 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시설 위주의 증가만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통계를 보면, 문예회관의 전문직 비율은 55.6%, 공공도서관의 전문직 비율은 45.1% 정도이며, 미술관은 22.5%, 박물관은 15.3%, 지방문화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매년 예술대학 등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가 양성되는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재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배정되어 있는 사서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 정규직 교사의 충원이 매우 낮은 형편임.

추진 방안

- 진보신당은 전문 인력에 대한 고려 없는 지역문화시설 건립은 사실상 '토건사업'의 변형된 유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대부분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통해 건립되는 지역문화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문화시설 전문인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인 고용을 일정 비율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1단계 : 50%, 2단계 : 70%), 시설 운영의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 문화시설 전문인제도를 위한 운영비용은 지역 문화재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앞서 제안한 ‘지역문화재단지원법’ 상에 재원지원 근거를 마련함.

정책 7 도서관의 공공아카이빙 거점화 : ‘공정 이용’ 활성화

현황 및 취지

- 진보신당은 인류의 지적자산이 자유롭게 향유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조건이 문화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제안해 왔음. 현행 저작권 체계는 사실상 국제적인 통상법 체계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지적자산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체계 역시 저작물에 대한 활용보다는 자유로운 저작물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 즉 규제법의 성격이 강함. 특히 참여정부에서부터 저작권 체계는 가장 상업화된 미국식 저작권 체계를 모델로 변화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의 배타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최근 영화 배경음악에 대한 ‘공연권’ 적용에 따른 분쟁은 이와 같은 배타적 저작권 법제화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임.
- 정부는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정 이용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대부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정 이용의 범위를 상당히 제약하는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임.
-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는 사실상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배타성을 강제하는 법/기구에 대항하는 ‘공정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항적인 법/기구가 반드시 필요함.
- 이를 통해서 저작물을 통한 재생산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임.

추진 방안

- 공공도서관이 저작권 시효가 완료된 저작물이나 혹은 기존 저작물의 공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항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함.
- 16개 권역 대표도서관에 공공아카이빙 센터 설치를 통해서, 저작권 시효만료 생산물 및 공공이용 기탁물에 대한 관리 체계화. 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및 2차 생산의 지원(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공정 이용의 확산 및 활성화 지원을 도서관의 역할로 명시함)
-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공아카이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지역 센터의 설립 근거와 저작권 관리업체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정 이용 센터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책 8 생활체육 전담 트레이너 제도

생활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현황 및 취지

-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제도는 생활체육공간을 매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사실상 시민의 접근권에 제약이 많았음.
- 이를 기존의 ‘주치의’ 제도와 같이 전담 트레이너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지역 학교운동장, 동네 간이 체육시설 등 실제 시민들의 생활권 내에서 용이하게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위해 기존 지역체육시설을 매개로 지원되던 생활체육지도사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 민간 사단법인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배타적으로 운영해왔던 생활체육지도사 제도를 공단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업무로 재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추진 방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 중 시설지원사업과 생활체육인력지원 +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3 : 7 정도로 재조정함.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관리, 사업수립 및 집행)과 올림픽기념사업조직(시설관리 및 올림픽 기념물 사업)을 분리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출연으로 일원화하며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사 사업을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업무로 이관하도록 함.

정책 9 소비지향적 관광 정책의 전환

현황 및 취지

- 우리나라의 관광진흥정책은 국내외 관광을 막론하고 관광수입을 전제로 하는 소비/지출 중심의 관광정책을 벗어나지 못하였음. 이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의 대부분이 관광단지 개발 등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민관광지표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 특히 기존의 관광정책이 민간단체인 ‘관광협회’와 ‘일반여행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를 매개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광서비스의 공공정책적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냄.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협회와 KATA가 NTO인 한국관광공사와 거의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이 사업자 중심의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세계적으로 ‘윤리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이 화두로 떠오르고, 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체험과 공감’ 위주의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적인 관광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
- 특히 인바운드 관광정책의 경우에는 여전히, 입국자 기준의 양적인 ‘관광객 유치’

에 매몰되어 있으며 이는 여행사를 매개로 하는 패키지 관광상품 지원 모델이라는 근대적 관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행사 위주의 KATA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한국관광공사를 매개로 하는 '여행프로그램 공모 방식'의 사업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광호텔이나 여행업체, 면세업체 등 사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관광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관광정책의 대상을 변경하여야 함.

추진 방안

- 현행 한국관광공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지원 등의 기능을 배제하고 △관광객과 관광 인력에 대한 지원 △공공관광서비스의 연구개발 등 관광정책의 공익적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민간단체 위임 조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하여야 함. 특히, 관광진흥법상의 정부 의무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포함시켜 공공적인 문화서비스의 하나로서 관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정책 10 네트워크형 문화산업구조 개편

'CJ-SK 독점구조'에서 공정경쟁의 산업체계로

현황 및 취지

-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산업은 사실상 CJ라는 독점 재벌에 의해 독점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심각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함.
- 2011년 3분기 케이블방송의 공급자별 시장점유율이 22.4%로 나타나 1위이며, 같은 기간 영화배급사의 점유율도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음악산업

내에서는 SK 다음으로 2위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 특히 영화산업 내에서 CJ의 독점문제는 심각한데, 이는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각 부문별로 절대적인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임. 영화만 놓고 보면, 2011년 CJ가 제작한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40.2%에 달해, 2위인 롯데시네마에 비해 2배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음.
- 이런 구조의 문제는 문화산업 전체를 특정한 기업체의 이해관계 내로 종속시킨다는 것인데, 이런 구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공적 기구 역시 CJ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을 통해서 조정하는 영화제작을 위한 모태펀드 등 제작지원자금의 대부분이 사실상 CJ가 주도하는 펀드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짐.
- 이와 유사하게, 멜론 등의 음원서비스와 통신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SK가 음악산업 내에 지배적인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음.
- 출판시장 역시 '임프린트'라는 사업체 내 프로젝트형 사업체를 출범시켜 기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독점/과점적 상황은 다양한 신규 시장진입자들의 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문화산업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몇몇 거대 문화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제한요인임.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 내에 고질적인 하청관계와 문화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진보신당은 문화산업 내에 공정경쟁의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장르별로 배타적인/우월적인 시장 지배기업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함. 특히 시장 점유율 제한과 수직계열화 해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

추진 방안

- 공정거래법 상에 문화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하여, 타 산업군보다 강화된 독점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법상의 문화산업지원 정책에 우월적인 시장 지배 사업자에 대해서

- 는 지원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함.
- 또한 동법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은 매년 각 문화산업 시장별 ‘공정경쟁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방안 및 사업체에 대한 권고 등을 시행하도록 의무 규정화함.
 - 문화산업 종사자에 대해 각 장르별로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체결하도록 하고, 임금체불 등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법제화함.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정보인권 보장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 있는 미디어환경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권 보호
정보의 공정 이용 및 정보 민주화



공약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정보인권 보장

1.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 있는 미디어환경
 - 정부와 자본의 간섭과 침투에서 자유로운 미디어환경의 개척
 - 민주적 참여와 공공성 강화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여건 보장

2. 표현의 자유 보장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사전심의제 폐지
 - 공안기관의 도감청 규제

3.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폐

4. 정보의 공정 이용 및 정보 민주화
 - 정보 접근권 강화
 - 정보 민주화

자본과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계속

표현의 자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가 언제든지 제공되어야 하나, 현행 법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정보조차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는 지적재산권 보장은 정보와 지식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한미 FTA 등 무역협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보호되던 최소한의 정보이용권조차 제한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의 소유와 이용한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본은 자본대로 망을 소유권에 기하여 독점하려 하고, 정부는 망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개입하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정 이용과 정보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공공기관의 정보는 그 공개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한사유는 그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축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역시 개인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요구를 불필요하게 회피하는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적인 공정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한미 FTA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쟁의 장에 올려야 하며, 제도적 정비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 벌어진 삼성과 KT 간의 IPTV 서비스 중단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공정 이용과 정보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여건 보장

현황 및 취지

- 정부의 간섭과 자본의 독식으로 인하여 공공재이자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가는 상황.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KBS, MBC에 대한 무리한 개입과 인사, 거대 보수 언론사에 편중된 종편 허용 등의 일들이 일어남.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공공성, 지역성, 참여 등의 요소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특히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방송 분야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지배에 일조하는 역할을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연의 설립취지를 상실한 채 정부의 정치전술을 구현하는 기구로서 방송을 정부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업무로는 일반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언론 미디어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에 독립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이 불가능함.

추진 방안

1) 미디어 공공성 강화

- 지상파 TV의 아날로그 시청이 가능한 기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 국가 부담.
- 방송에 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 및 이용권 확대.

2) 민주적 언론 미디어 환경의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및 새로운 언론미디어 기구 설립.
-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 폐지. 인터넷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및

위법행위의 여부와 그 규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함.

-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확대.
- 지상파방송, SO(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라디오 등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 퍼블릭 액세스 정책 강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 해소

1) 인터넷 실명제 폐지

현황 및 취지

- 2006년 이후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 온라인상의 일부 웹페이지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한 후에야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
- 2008년 소위 ‘최진실법’이 만들어지면서 통신실명제가 전면 확대되었음.
- 이러한 조치 이전에 이미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명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반으로 하는 실명제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온라인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실명제 이후 개인정보유출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음.
- 더욱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온라인상의 비방, 모욕, 악성 댓글의 폐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신상 털기’를 용이하게 해주는 터에 인터넷 실명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추진 방안

- 공직선거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웹 페이지 실명제의 폐지.
- 정보통신망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웹페이지 실명제 폐지.
- 소위 “잊혀질 권리”의 본격적 법제화.

2) 사전심의제 폐지

현황 및 취지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위원회는 각각 공연물, 방송통신, 게임 등에 대한 콘텐츠를 사전 심의하고 있는 바, 그 기준이 모호하며 실질적인 사전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각 사전 심의의 근거규범이 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 규정은 위헌적 요소까지 가지고 있음.
- 최근 논란이 된 ‘2MB18NomA’ 사건과 같이 내용이 아닌 트위터 계정 자체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일까지 발생. 또한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임의적인 블라인드 처리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함.

추진 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 권한을 제외한 업무로 국한시킴.
-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각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심의는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심으로 대체하고 사전규제 대신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도록 함.
-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의 판단을 포털사이트나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의하도록 함.
- ‘허위사실유포죄’를 대체하는 대체입법 저지.

3) 공안기관의 도감청 규제

현황 및 취지

-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위치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사기관은 물론 기업체의 이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고, 위치정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남용을 유발함.
-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건의 느슨함으로 인해 통신자료의 무한정한 수사기관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기한 패킷 감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왕재산' 사건에서처럼 영장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광범한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국민적 반대와 기관 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형사사법 통합망과 범죄인 유전자 DB는 거의 아무런 외부적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음.

추진 방안

- 통신비밀보호 대상 정보에 송수신 완료된 이메일 등을 포함.
- 수사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개입 강제 및 강화.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강화 및 기간의 축소, 연장 제한.
- 패킷감청 일체 금지.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폐

현황 및 취지

- 박정희 군사정권출범과 거의 동시에 국민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설계된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등 반인권적 및 위헌적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전 국민의 식별번호로 기능하면서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었음.
-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권침해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주민등록증은 국민등록증으로 기능하면서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직권말소제도는 부당하게 주민의 기본권 일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특히 IMF 이후 급증한 노숙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제임.

추진 방안

- 주민등록번호 폐지, 주민등록증 발급번호 부여.
- 발급번호 민간사용 금지.
- 지문날인제도폐지.
- 주민등록증 지자체 자율발급.
- 직권말소제도 폐지.

현황 및 취지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편익에 따라 어떠한 정보도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함.
- 위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부당히 많음.
- 또한 민간의 경우에도 영업의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게 넓게 보장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전자정부법에는 웹표준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특정 기업의 특정 제품에 온라인 환경이 종속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추진 방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의 축소 및 추상적 비공개 사유 삭제.
- 부당한 비공개정보 항목의 삭제 및 추상적인 비공개정보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유통을 원활하게 함.
- 웹 표준을 정부기관이 솔선하여 마련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인 온라인 환경으로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특히 한국의 온라인 환경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함.

현황 및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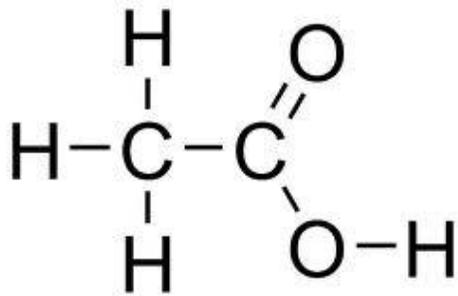
-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현재 정보와 지식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 예를 들어 이동이 가요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의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한미 FTA 등 무역협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보호되던 최소한의 정보 이용권조차 제한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통신망의 소유와 이용한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본은 자본대로 망을 소유권에 기하여 독점하려 하고, 정부는 망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개입하고 하는 현상이 발생.

추진 방안

- 비영리 전송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및 포괄적 공정 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
현행 법상 소위 ‘삼진아웃제도’ 폐지.
- 100만 원 이하 소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형사고소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0조 개정을 중단하여 “가족 단위” 규정을
존치함.
(※ 이 외에 당장의 법제화는 불가능할지라도 장차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의제로서
‘창작자 사회보장제’ 도입 및 ‘소셜 마이크로 페이먼트(Social Micro-Payment)’제도의
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
- 망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한미 FTA 폐기(및 한-EU FTA의 관련 규정 재검토).

민주적이고 공익적인 과학기술

과학의 권력화, 상업화 제어하고 민주성과 공익성 증대
과학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안정된 연구 기반 제공



공약 : 소신있고 안정적인 과학기술자

1. 과학의 권력화, 상업화 제어하고 민주성과 공익성 증대
 - 공익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기반 구축
 - 출연(연) 지배구조의 일원화와 국과위 위상과 역할 강화
 - 무리한 출연(연) 사유화 및 통폐합(단일법인화) 추진 중단
2. 과학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안정된 연구 기반 제공
 - 정부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
 - 대학원생들의 노동권 확보
 - WCU-BK21 사업 폐기하고 대안 계획 수립

우리 삶을 위협하는 과학기술의 권력화와 상업화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의 시장화 속에서 비민주, 비윤리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연구소의 시장화 양상은 자연과학을 넘어 이제는 인문사회과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발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이 ‘핵마피아’라 불리는 매우 폐쇄적인 카르텔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민주화 요구가 매우 긴급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반도대운하의 실상을 폭로한 김이태 박사 해임 사건,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 기도는 정권의 입김이 양심적인 연구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고용과 연구 지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처지가 연구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재산권의 강화 조처들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과학기술의 공익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의 공익성 증대

과학기술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발전과 같은 중요한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과학기술 관련 결정에 시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기초과학 증진을 위해 도입된 BK21, WCU 등이 오히려 학문의 시장화와 기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경향이 저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종사자의 생존권과 자율성 보장으로 안정된 연구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황 및 취지

- 국민을 놀라게 한 황우석 사태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요지부동인 핵발전 기술의 전문가주의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요구에 의해 계발되고 활용되지도 않으며, 민주적인 통제가 관철되지도 않음을 보여줌.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폭로한 김이태 박사의 해임 사건과, 각종 환경성 평가의 졸속 처리는 전문적 연구와 평가 기능이 권력에 휘둘리고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추진한 국가과학기술 시스템 개편 방안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단일 컨트롤타워 위상 부여는 도외시한 채 연구기관들의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하여 현장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음.

추진 방안

- 공익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익연구개발 분야 확립 및 예산투자 강화
- 과학상점 설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공익연구개발 장학생제도 신설 등 공익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정책과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증대
- 출연(연) 지배구조의 일원화와 국과위 위상과 역할 강화
- 정부 부처의 연구 기관에 대한 개입 근절,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무리한 출연(연) 사유화 및 통폐합(단일법인화) 추진 중단

현황 및 취지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예산상 이유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급여가 크게 줄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연구원이 늘어나고 있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비정규직만 보더라도 2008년 2,062명에서 2011년 3,072명으로 49%가 증가함.
- 계약직, 초빙 연구원, 인턴 연구원 등 프로젝트 기간에만 고용되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 증가는 개인에게 체화되는 지식 기반이 극히 불안정해져가고 있음을 의미함. 아울러 PBS(Project based system)으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의 급여 차이가 커지고 연구의 시장화가 가속화됨.
- BK21(두뇌한국 21), WCU(세계수준 대학), HK, SSK 등 기초학문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원 제도들은 오히려 대학을 시장화하고, 미국식 연구 패러다임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

추진 방안

- 정부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을 증가시키고 PBS 제도 폐지.
-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대학 등의 비정규직 연구 인력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 운영.
-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동지도교수 제도를 도입.
- 기존의 WCU-BK21 사업을 폐기하고 대학과 학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 계획 수립.

2012, 성평등을 향한 사다리 세우기

여성 노동의 주변부화를 극복하고 모두가 자립적인 삶
총체적 돌봄의 위기를 넘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삶
여성안전권 확보로 건강한 몸, 안전한 삶



공약 : 모든 생애, 모든 집단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1. 생애별 여성정책 사다리 만들기

- ~ 19세 : 여성, 건강하고 평등하게 자라다
- 20-30대 : 혼자라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하다
- 30-40대 : 일하는 여성, 돌보는 남성이 함께 행복하다
- 40-50대 : 엄마를 벗어나 당당하게 일하다
- 60대 ~ : 나이듦이 불편하지 않은 삶

2. 다양성과 공존 속에 지속가능한 여성의 생애

- 외국인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 매매혼 근절.
- 장애여성의 평생교육지원법 제정.
- 여성농민의 농업인지위 인정과 전문 인력화

3. 모든 여성의 꿈,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직장과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장치 강화, 대응 기관 확충
- 장애인, 아동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소득 보장

4. 여성 맞춤 의료체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

- 화장품, 세제, 생리대의 안전기준 강화.
- 여성만 겪는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지원 확대
- 낙태죄 폐지. 임신, 출산, 낙태,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전면 실시
- 출산휴가 외에 태아검진, 유사산, 불임 휴가 신설

재생산과 인력 활용 대상에 머물고 있는 여성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 모성의 주체에서 노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성 노동과 여성의 시민권의 확보가 곧 민주적 사회발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는 여성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재생산과 인력 활용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청년 여성은 높은 정치의식과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여성 대표성은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현 시기 한국 사회 여성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총체적 돌봄의 위기, 여성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불안, 여성의 건강불평등 및 몸에 대한 통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 노동의 주변화라고 판단합니다.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사다리 만들기

일하는 여성, 돌보는 남성의 역할을 나누어 말아야 합니다. 성폭력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체육활동 보장, 산부인과 무상 의료 확대, 여성 심야노동 금지로 건강상의 성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굴레로 표상되는 여성 노동의 주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여성 내의 소수자 차별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주거권과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 노령, 이주여성의 시민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삶이 바뀌는 만큼, 남성의 삶도, 한국 사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1) ~ 19세 : 여성, 건강하고 평등하게 자라다

현황 및 취지

① 한국 사회의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여전한 성차별.

- 분홍과 파랑. 여자아이다움과 남자아이다움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보육시설과 학교 교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 참여 활동에서 성역할 구분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짐.

- 놀이터와 공원 이용 시 여아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

② 여아들에게 2차 성징 이후 강화되는 성별 분리가 교육, 사회활동의 성차별을 나타냄.

- 남아들은 구기운동을 중심으로 유아기부터 팀스포츠와 태권도로 체육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달리 여자 아이들의 체육활동은 무용, 수영 등의 개인 운동에 집중되고 청소년기에는 걷기와 줄넘기가 주된 운동방법임. 여성의 경우 이 또한 전적으로 사교육과 보호자의 돌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알과결로 양육되는 경우와 돌봄이 부족한 경우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건강 불평등과 사회활동 참여의 불평등이 심화 됨.

- 지역사회 체육시설 인프라 또한 성별, 연령별, 종목별 이용 편차가 심하기에 청소년기 여성의 체육활동 토대가 부족함.

③ 성장기 여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S라인.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해 10대 척추측만증의 85%가 여성인 점에 비추어 사회 환경은 여성을 성장기부터 성적 대상화하고 있음.

- 결국 나약한 여성의 몸을 원하는 사회현상 자체가 거대한 성폭력 사회라 할 수 있음.

추진 방안

- 여자 아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안심, 안전, 친환경적 놀이터로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
- 모든 놀이터와 학교운동장, 공원에 CCTV 설치.
- 놀이기구의 유해물질 차단.
- 지역사회 모든 체육시설에 아동, 청소년 체육바우처 도입과 여학생 전용 시간 할당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의 주 3시간 이상 체육활동보장. 시도별 1개 이상 여학생 전용 문화, 체육시설 시범 운영.
- UN아동권리협약 준수, 아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으로 성장기 여성에 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

2) 20 - 30대 : 혼자라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하다

현황 및 취지

① 비정규직은 여성 노동의 얼굴

- 한국의 여성 고용 현실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서 더욱 낮아지고 있음. 또한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의 평균이 80% 이상인 데 반해, 한국은 66%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여성 노동자 70%가 비정규직이며,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함.
-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직군 분리는 여성을 하위직군으로 분리하여 임금, 승진체계 등에서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노동정책임. 이어 유통업, 서비스업 전반에 확산되어 여성의 무기계약은 늘어났으나 남성 정규직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음.

② 여성 노동의 유입을 원하는 산업구조와 자립을 원하는 여성의 요구에 반하는 여성의 삶.

- OECD 평균을 상회하는 20대 후반 여성 취업률.

-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되어버린 청년 여성.
- 30대 여성의 42%가 비혼 여성. 독신 여성.
- 급속히 떨어진 취업률로 완화되지 않는 30대 여성의 M곡선.
- 양육 책임기에 놓인 여성을 둘러싼 양육·교육·고용 환경 등이 여성에게 양육책임 자로서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③ 여성 내부의 양극화

- 1980년 10.9%에 불과하던 여성 치과의사 비율은 2009년 24.9%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의사 비율도 같은 기간 2.4%에서 16.4%로 7배 가까이 증가. 행정고사·외무고사·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47.7%·55.2%·41.5%로 절반 정도를 차지.
- 대학진학률, 공무원 취업률, 고시합격률 등에서 여성의 진출은 상승하였으나, 대다수 여성의 고용, 임금, 승진, 주거, 사회권 등은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아 여성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됨.
- 결국 취약한 노동조건에 여성은 경력 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안정적인 전문직 여성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임함. 경력 단절의 중요한 변수는 청년시기의 일차리의 질.

④ 자립과 새로운 가족 관계

- 결혼 관계 안에서의 여성에서 결혼 관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이나 확대되는 1인 가구 여성의 자립이 늘고 있음.
- 2010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인 가구(24.3%)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이며, 1인 가구는 23.9%로 30년 전(4.8%)에 비해 약 5배로 늘어남.
- 아파트 가구 수는 단독주택 가구 수를 추월하였으나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59.4%)에서 살고 있음.
- 자립 생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과 주거권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외롭지 않을 생활권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임. 건강 가족이라는 이성애 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가족 구성권과 복지 혜택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추진 방안

-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질 좋은 청년 여성 일자리 늘리고 새로 만들기.
- 성차별적 고용, 임금, 승진 체계 해소.
- 여성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권과 생활권 확보.
- 국적, 혼인 여부, 장애를 떠나 누구나 평등하게 가져야 할 여성권 확보.

< 경력 단절 예방 노동 사다리 >

1. 사회서비스 산업의 공공화로 케어 매니저 및 관리직에 전문직 청년 여성 일자리 신설
2.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시장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66만 개 창출, 여성 일자리 33만 개 확보 (노동공약 참고)
3. 공공부문 무기계약, 상용직 여성 일자리 정규직화로 일자리 50만 개 만들기
4.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확대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50% 여성할당제 도입
5. 성차별적 분리직군 폐지
6. 모든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모성 보호와 고용 관계 보장

< 여성자립 사다리 >

1. 건강가족기본법 폐지, 사실혼, 동성 커플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여 사회보장, 주거,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2. 공공임대주택 10%를 20-30대 1인 가구 여성에게 제공
3. 1인 가구 공동체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부여
4. 부성법 제정으로 비혼, 이혼 여성의 양육 부담 완화

3) 30 - 40대 : 일하는 여성, 돌보는 남성이 함께 행복하다

현황 및 취지

-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여성 노동의 비자발적 경력 단절이 합리적 선택이 되어버린 현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M곡선은 완화되지 않고 있음.

- 전체 보육시설 중 공공보육시설 5%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힘든 조건이기에 공보육 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 후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 체계 미비.
- 양육기 여성의 경력 단절과 반일노동선택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이후 재취업시 여성 노동의 주변부화를 낳게 됨.

추진 방안

- 0세부터 만 12세까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노동 현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 중인 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장.
-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경력 관리 실시.

< 함께 돌봄 사다리 >

1. 국공립 보육시설 50% 이상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민간보육시설 매입, 관공서 1층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복합시설로 공공인프라 구축
 - 시군구마다 아동돌봄인력뱅크로 야간, 주말 24시간 보육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제거
2. 만 12세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평등하고 안전한 공보육체계 구축
 - 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의무 설치
 - 모든 아동에 대한 방과후 문화센터, 체육시설, 돌봄학교 바우처제도 실시
 - 장애아동 방과후 돌봄교실 동마다 1곳씩 운영.
3. 육아휴직 기간 50% 아빠 할당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절반은 아빠가 사용하게 함. 단,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사용함.
4. 임신, 수유 중 여성에게 야간, 주말 노동 금지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한 해 연 7일 돌봄 휴가 신설
6. 15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3년간 생활임금 보장. 미혼모는 최대 5년 보장
7.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 임금, 승진의 차별 금지
8. 직업교육생 50% 여성 할당 실시
 - 여성의 이전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 직업교육 실시
 - 여성고용센터, 여성복지회관 등의 여성센터의 고숙련 직업교육과정 개설

4) 40 - 50대 : 여성 노동자로 다시 시작하는 여성의 삶

현황 및 취지

- 신자유주의는 개인에게 자기관리, 자기개발을 요구하며 여성을 가족 관계 내에서 경영자로서 교육매니저로 위치지어 성별 분업을 강화시킴. 이는 한국 사회가 분단과 개발독재 이후 강화시켜온 가족 단위가 생존과 신분 상승의 기반이 되어 온 탓이며, 이에 여성이 가족 관계 안의 구성원을 벗어난 개별적인 주체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원인의 연장이기도 함.
- 그러나 여성이 양육부담을 벗어남과 동시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노동도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음.
-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2.6%(2010년 기준)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32위. 이는 OECD 평균 62%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그러나 40대 여성 65%, 50대 여성 57%로 20~30대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 재취업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숙련 민간 서비스,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진입.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다중의 차별을 겪고 있음.
- 금융권 여성 인력 82.3%가 30대 이하. 40대와 50대 여성 비중은 각각 15.3%, 2.5%임. 남성은 40대 비중(41.7%)이 가장 높았고, 20대(10.5%)보다 50대(13.5%)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서 나타나듯이 직위별 성별 편차가 크고 고연령,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줄어들음.
- 20~30대 여성의 내부 양극화가 심한 것과 달리 40~50대는 고위직 진출 여성이 현격히 줄어들음.

추진 방안

- 재취업 여성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금, 고용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 형성.
- 여성 전문직에 대한 고위직 진출과 함께 여성 노동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 노동에 대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마련.

< 여성 노동 향상 사다리 >

1. 돌봄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여 노동법 적용.
 - 현재 요양 보호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간병 노동자, 장애인 활동보조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에 놓임.
 - 수급자 부담 완화, 간병료 전면 의료보험화로 돌봄노동자 노동자성 확보.
2. 여성 전문 직종에 대한 야간노동 제한 및 맞교대 근무 제한
 -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으로 야간 노동 제한
 - 간호사, 간병인 등의 적정 노동시간 준수.
3. 현재 74만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 9.2% 140만 명으로 확대
 - 연봉 2천만 원 이상 돌봄일자리 우선 65만 개 창출.
4.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행 7.6%에서 30%로 높여 여성의 대표성 높이기

5) 60대 ~ : 나이듦이 불편하지 않은 삶

현황 및 취지

① 여성 노인 문제는 빈곤

- 2010년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6%, 20년 뒤인 2030년에는 11.8% 예상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10월 7일 발표한 '한국 여성 노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47.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우리나라 여성의 연평균 연금 수급액은 1만 1,131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4위.

② 건강 및 요양

- 여성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다른 노인 집단에 비해 취약하여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음. 여성 노인의 우울증은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건강, 경제, 사회적 지지의 종합적인 요인에 있음.
- 여성 노인이 처한 우울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 방안

-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이 높은 여성의 노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필요. 복지의 대상자를 넘어 지역사회와 가족 관계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의 지위와 역할이 형성되어야 함.
-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노인정, 노인회관 등의 노인 공동체에 가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건소 여성우울증퇴치센터 설치.
- 1인 1연금제 실시로 여성 노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 2 다양성과 공존 속에 지속가능한 여성의 생애

현황 및 취지

- 여성의 생애에 따라 시민성의 획득과 가시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청소년, 비혼 여성, 여성 노동자, 양육기 여성, 재취업여성, 전업주부, 노령여성 등 가족 관계 내외부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음.
- 이주여성, 장애여성, 한부모 여성, 노령여성 등을 요보호 여성, 취약 계층이라는 여성의 규정이 여성 내부의 균열을 넘어 차별과 배제의 용어가 되고 있음.
-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태도를 비롯한 시혜적 태도는 이들의 정치적 가시화를 제약하며, 민주주의 확장의 장애가 됨. 다문화주의를 넘어 여성개개인의 이주 초기부터 가족 관계에서 평등하며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민권확보에 주력해야 함.
- 전체 농민의 51%인 여성농민이 농업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며 여전히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음. 농촌사회에서 가사노동, 농업노동, 공동체유지를 위한 여성농민의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노동,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을 갖는 것이 모든 여성의 평등하고 지속적인 삶을 보장함.

추진 방안

- 이주, 장애, 한부모여성 등을 요보호여성, 취약 계층 여성이라는 규정을 넘어 여성 개개인의 시민권 확보에 중점.
- 여성이 처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복지, 경제, 사회권 확보가 필요함.

< 공존의 사다리 >

1. 외국인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매매혼 근절.
2. 장애여성의 평생교육지원법 제정.
 - 장애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여성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사회권과 경제권 확보까지 지원함.
3. 여성농민의 농업인지위 인정과 전문 인력화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법 개정 및 지원 예산 확보

현황 및 취지

- 전국 시군구별 아동성폭력 비율의 격차가 40배
- 성폭력과 아동폭력은 총체적 돌봄의 부재, 가부장적 가족 관계, 지역사회의 안전 대책 미비 등의 총체적인 안전 위기에서 나옴.
- 사회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감수성 제고와 물리적인 안전망 구축까지 종합대책이 필요.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18일 발표한 '2011년 여성 노동 상담 경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0건의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이 33.3%(1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듯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다른 조건에서의 차별만큼 심각한 상황.
- 사무직에 이어 제조업에서의 성희롱 피해가 산재판결을 받은 만큼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
- 타 국가, 사회에 의한 안보의 위협보다 내부의 폭력,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회이기에 이에 대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함.

추진 방안

- 성폭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합의.
-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등 성인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주변에 대한 대책 강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생존 지원.

< 반성폭력 사다리 >

1. 직장내 폭력. 성희롱에 대한 작업장 이탈권 부여.
2. 여성 노동자에 대한 소비자의 폭력, 성희롱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성희롱 특별법'.
3. 직장과 학교에 성폭력예방대책 강화
 -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 사업장, 학교 등에 페널티 적용
4. 학교, 파출소, 소방서, 1차 의료기관에 여성폭력대응 전문요원의 상시 배치
5. 장애인, 아동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소득 보장
7. 아동·장애여성·이주여성 전담 상담소·쉼터 시군 별 1곳 이상 확충

여성 맞춤 의료체계 구성, 낙태죄 폐지

현황 및 취지

① 남성중심의 근대 의료정책

- 여성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의료, 보건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 생리통부터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여성의 재생산에 따른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부족함.

② 가사노동과 화장, 생리대 등으로 인한 여성의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 심함.

③ 임신부터 출산, 임신 중지를 포함한 모든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심화 됨.

-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를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
-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되는 불법 낙태 단속 등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협 하며 범죄시함.

④ 남성에 비해 많이 접하게 되는 유해 화학물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암 등은 여성 질환으로 대응해야 함.

추진 방안

- 임신, 출산, 피임, 낙태, 산후조리 등 여성 재생산권을 비롯한 여성 질환에 대한 전면 의료보험화.
- 여성의 재생산권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과 차별 철폐.

< 여성건강 사다리 >

1. 화장품, 세제, 생리대의 안전기준 강화.
3. 생리통부터 자궁암까지 여성만 겪는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 의료.
3. 40세 이상 전 국민 무상건강검진 여성은 임신과 출산 경험으로 인해 35세부터 실시.
4.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1항,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임신, 출산, 낙태, 피임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의료보험 전면 실시.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가정 70%까지 이용하도록 지원.
5. 출산휴가 외에 태아검진, 유산, 불임휴가 신설.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정치의 주인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보장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청소년 참정권의 폭넓은 보장



공약 :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인정되는 사회

1. 청소년에게 문화 향유의 권리 보장
 -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문화적 규제 폐지
 - 청소년 관련 각종 위원회의 일체 정비 및 기능조정
2.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 청소년 보호법 폐지
 - 청소년 인권에 관한 기본 사항 법제화
3. 청소년을 정치의 주체로
 - 선거권 연령을 만17세로 하향
 - 피선거권 연령을 만19세로 하향

보호의 대상으로 자유의지 자체를 박탈당한 오늘의 청소년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 혹은 ‘주체성을 거세당한 그림자’를 넘어 ‘인간이 아닌 인간’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입시부담,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경쟁구조에 순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즉시 배제시켜버리는 반인권적 인식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히 현 정부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의 미명을 앞세워 국민 일반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이 마치 성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정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정책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단지 특정 법률 하나를 개정하는 수준이 아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제 사회현상 일체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연령의 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인권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과 문화향유권 보장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필두로 청소년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청소년 정책입니다.

정책 1 청소년에게 문화 향유의 권리 보장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문화향유권 침해를 중단

현황 및 취지

- 각종 문화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음. 음반, 공연은 물론 최근 게임과 웹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공공연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빌미로 이루어진 각종 규제가 성인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현상을 낳고 있음.
- 청소년들의 문화콘텐츠 향유권리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각종 청소년관련 위원회를 일체 정비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려 함.

추진 방안

- 게임 섯다운제 전면 폐지 및 초중등학생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재발의 저지.
- 청소년 관련 각종 위원회의 일체 정비 및 기능 조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전면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전면 개정 및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자율심의기구로 변경.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전면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조 개정.

현황 및 취지

-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여지듯 아직도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단지 감싸고 감춰야 할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우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오늘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 방안

-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는 법제를 정비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자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함.
- 청소년 인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를 넘어서서 법제화하도록 함.

현황 및 취지

- 현행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정당법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만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대통령은 만40세 이상임.
- 19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감사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고,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 선거권은 만19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연령 규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데 막심한 제한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교육감 선거에조차 대부분이 학생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임.
- 각종 법률의 선거연령 하한선을 현재보다 낮추어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려 함.

추진 방안

- 각종 선거권 연령을 만17세로 하향 조정함.
-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19세로 하향 조정함(대통령 제외).
-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감사청구의 당사자 연령을 만17세로 하향 조정함.

일자리-주거-스펙프리 청년을 위한 With a little help

노동시간 단축, 공공/녹색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
1인 가구 전세대출 허용 및 1인 가구 공공 주택 확대
대학 서열 해체 및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공약 : 3포 세대에 연애와 일자리를 허(許)하라

1. 내일은 정규직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 노동시간 상한제 등 갈퇴근 명랑사회
 - 비정규직 사용 억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구직 및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2. 청년주거 독립
 - 35세 미만 1인 주거 전세대출 허용
 - 투기 주택 강제 수용, 1인 주거 공공주택 확대
 - 월세 금리연동제로 월세 반값 실현

3. 차별없는 스펙 프리 사회
 - 취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 대학 통합 네트워크 설립, 대학 서열 해체
 - 대학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졸업, 그 막막함

2012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졸업은 막막함입니다. 졸업생 중 바로 구직에 성공하는 이들은 35.2%에 불과합니다. 21.8%는 실업 상태에 빠지고, 43.1%는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됩니다. 졸업 이후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고,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20대는 그동안 아무런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10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3%로 OECD 국가 평균 50.7%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 실업률은 22%에 달합니다.

수입과 일자리 모두 보장되지 않지만,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생의 67.7%는 빚더미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은 평균 1308만 원이고 대부분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빚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취업을 위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최근 3개월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취업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28만 원에 달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은 이렇게 빚더미 위에서 쌓여갑니다.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근심 걱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대 초반 비정규직 비율은 80%에 달하고, 20대 후반 비정규직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의 저임금과 차별도 문제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더 낮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은 19.8%로, 비정규직 5명 중에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주거-스펙프리 3박자 청년 정책... With a little help

진보신당은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싹을 틔워 아름답리 나무가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일자리, 주거, 그리고 스펙프리 3박자 정책이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황 및 취지

-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100만~1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또한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공복지서비스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함.
-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직업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풍성해질 것임.
-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지만 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쓸만한 일자리'여야 함.
-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서비스 확대, 녹색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을 통해 양적 고용 확대와 더불어 비정규직 남용 규제,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등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소 방안을 제안함.
- 더불어, 구직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힘내라 실업수당' 도입을 제안함.

추진 방안

- 칼퇴근 명량사회 : 노동시간 상한제(연간 1800시간 제한), 야간노동 축소, 공휴일 부활로 청년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사용 제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
- 힘내라! 실업수당 : 최초 고용에 속하지 않아도 모든 구직 및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현황 및 취지

- 안정적인 주거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지만, ‘부모 잘 만난’ 몇몇을 제외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막대한 주거부담은 이른바 ‘넘사벽’임.
- 이미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비중은 20%를 넘어섰고, 서울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24.4%)이 4인 가구(23.1%)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택 정책의 대상조차 되지 못함.
- 나아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 장사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임.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특히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공공주택은커녕 전세값 대출조차 어려운 형편임.
- 주거 공간 확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 특히 청년에게 독립된 공간은 삶의 휴식 공간이자 사회적 독립과 관계 형성의 베이스캠프임.

추진 방안

- 국민주택기금 세부 시행규정 수정, 35세 미만 1인 주거 전세대출 허용.
- 투기 주택 강제 수용, 1인 주거 공공주택 확대.
 -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선별적 주택 수용.
 - 단독가구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확대.
 - 비주거용 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 최저주거기준에 준하도록 리모델링 후 공공 보급.
- 월세 금리연동제로 월세 반값 실현.
 - 현재 연 12%의 월세에 금리연동제 적용(4.5%).
 - 자기 소유 주택 임대 사업시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현황 및 취지

- 한국 사회는 청년에게 지나치게 높은 스펙을 강요하고 있음. 토익 시험만 하더라도 2011년 한 해 동안 총 211만 명이 응시하였고, 이 중 80%가 20대였음. 현재 1회 응시료가 4만 2천 원에 달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교재비와 학원비로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쓰고 있음. 영어 시험 성적은 물론 각종 자격증, 인턴 경력, 공모전 수상 경력까지 요구하는 사회적 스펙 요구에 청년들의 등골이 빠질 지경임.
-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학력과 스펙 요구는 결국 취업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임. 진보신당은 취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가 명백한 고용 차별이며, 사회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무리한 학력·스펙 요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함.
- 나아가, 대학 서열 해체, 사회적 학력 차별 철폐를 위해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 통합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함. 또한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하여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추진 방안

- 취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 사회적 차별 금지법 제정 : 채용 시 직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 제외.
- 대학 통합 네트워크 설립, 대학 서열 해체
 - 국공립대와 준공립대(정부책임 사립대학) 확대.
 -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 대학서열체제 해체, 대학의 균형발전.
- 대학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 국고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 사립대 준공립화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

스스로 자립하는 당당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스템 정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의 노동권과 충분한 소득 보장
소수 장애인의 인권보장으로 전체 장애인의 인권증진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 구축



공약 : 간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5대 전략

1. 장애인 복지시스템 정비, 서비스 공공성 강화
 - 장애등급제 폐지를 넘어 장애등록제 폐지로
 - 부양의무제 폐지로 복지 책임의 사회화
 -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2.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위한 예산 확보
 -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OECD평균인 3.4% 수준까지 확보
3. 장애인의 노동권과 충분한 소득 보장
 - 기초법에 따른 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조정
 - 소득활동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100만 원 생계비 보장
 - 장애인 근로지원인 이용시간 확대, 근무조건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중증장애인 비율 50%로 확대
4. 소수 장애인의 인권보장으로 전체 장애인의 인권증진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5.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 구축
 - 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권리옹호 관련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 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탈시설 지원

보이지 않는 장애인, 단혀 있는 지역사회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여 명,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걷다 보면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갇히고 집 안에 갇혀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율 세계 1위, 산재 1위인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편하고 안전하면 우리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배고프고 외로우면 우리 모두가 배고프고 외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집 바깥으로,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일터로, 지역사회로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로이 타고,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활동보조인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 건설과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립하는 장애인의 삶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1) 장애등급제 폐지를 넘어 장애등록제 폐지로

현황 및 취지

- 의료적 기준에만 근거한 장애등급기준이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사회서비스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는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는 기준임.
- 장애등록제는 장애인 복지의 수급 자격 여부를 판별하는 데 효율적인 기준이나,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인위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현행 장애등록제는 서비스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사회적 낙인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에 각각 필요도를 측정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에게 각각 사회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임.

추진 방안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를 폐지.
- 장애인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장애영역별 부문을 운영.
- 직업적 장애정도를 판정해 장애연금대상 및 금액과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
- 장애인사회서비스의 교육·의료·교통 등 그룹별 판정체계를 도입하고 각 판정체계 내 개별 장애인의 생활조건과 욕구를 최대한 반영.
- 각 자치단체별 서비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 대상 및 지급량의 결정에

있어 최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 모든 사회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고 각각의 서비스별 개별 판정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행정체계내의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라는 규정 도입.

2) 복지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라 - 부양의무제폐지

현황 및 취지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법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작동.
- 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고 개인에 필요에 따른 전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부양의무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
- 부양의무제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보편적 부의 재분배 문제로 확장.

추진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복지법규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

3)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현황 및 취지

- 사회서비스가 도입된 이래로 점차 사회서비스 시장 내 바우처 수수료 수익을 노리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이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상호 바우처 수수료 수익률 경쟁

과정에서 이들은 사실상의 사업자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 사업자들이 제공 기관 운영에 있어 효율성 추구하는 경향이 날로 심화. 수수료는 대부분 기관의 운영비로 소요되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재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마케팅 및 경영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
 - 정부가 설명하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문제에 있어선 현재의 시장화된 체제에서 이용자들은 제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실상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없는 상황.
 - 사회서비스 사업자인 민간은 수익률 보전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사회서비스는 사업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인 행위에 해당.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더욱 높이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각 서비스에 관계된 다양한 주체들이 서비스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올3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내용 검토 후 근거자료로 추가예정)

추진 방안

- ① 다음과 같은 방향에 입각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추후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형태로 전면 개정을 추진.
-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은 민관, 이용자, 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 서비스 운영이 특정 단체 및 개인의 사업으로 귀결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 각 서비스에 있어 민간 차원의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제공 전후 과정에 있어 적극 개입하고 이용자 및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각 서비스의 중개 업무는 시도의 콜센터, 시군구의 분사무소 방식 등 가장 효율적

인 방안을 모색.

- ②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지자체 및 제공기관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또한 활동지원 인력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삽입.
- 각 지자체는 현재와 같이 대상자를 심사하고 이들에 대해 이용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 추가할 부분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
 -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은 민관, 이용자, 지역사회주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세우는 방안이나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모니터링, 대상자 발굴, 권익 옹호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 시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인력기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이용자 및 이용시간 대비 일정 수 이상의 정규직 활동 지원 인력 확보, 근로기준법 적용.
 - 각 사회서비스별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량 등의 결정에 있어 최대한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 최근 무상급식·무상의료를 중심으로 보편복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장애계 내에도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운동이 진행되면서 ‘보편복지’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 한국은 OECD 가입국들에 비해 정부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
- 특히 OECD 가입국의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평균비율은 2.1%이나 한국은 0.6%에 불과해 터키(0.1%)와 멕시코(0.1%)를 제외하고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선 예산규모를 상당 수준 높여야 하는 상황임.
- 지금까지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법률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실제 이동보장·차별금지법·교육연금·활동지원 등에 걸친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각 제도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 이동보장 법률의 주요 현안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 차별금지법의 주요현안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의 확보문제, 교육법의 주요현안은 교사 및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확보문제, 연금 및 활동지원법 또한 서비스 절대량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가 현안임.
- 또한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주요 현안인 등급제·부양의무제와 같은 불합리한 심사체계를 폐지하고, 발달장애와 같은 특화된 영역의 충분한 복지수준을 보장하며, 복지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
- 한편 정치권에서는 장애인복지의 확대에 대해선 모두들 동의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추진 방안

- 단기적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의 비율을 OECD 평균 2.1% 이상 확보.
- 장기적으로 OECD 상위 10분위 국가들의 평균인 3.4% 수준까지 확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소득 보장을

현황 및 취지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각종 자산조사 조항에 의해 철저한 저소득층이 아니면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상황. 더불어 생계비계측방식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의 기본적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또한, 현재의 장애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대상은 넓으나 그 금액이 너무 낮은 수준이고,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 OECD 가입국 중 장애인 월평균소득·장애인가구빈곤율·장애급여수급율·장애급여수준 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일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직업교육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며 인력 지원(근로지원인/잡코치)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비장애인 실업률 대비 장애인 실업률의 경우 OECD 평균 2.1배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3.2배로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남.
- 돈이 있어야만 경제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 바로 소득 보장 정책이 되어야 할 것. 이에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은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추진 방안

- 기초법에 따른 급여 수준을 최대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장애인연금을 통해 보장하는 것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매월 지급받는 생계비를 1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 기초법의 각종 심사 규정 및 근로소득공제 조항을 폐지·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수준의 소득 보장 추진.

- 장애인연금을 장애에 따른 추가 급여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및 직업적 장애 정도를 판정해 추가 급여 형태로 지급.
- 임금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 현행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에 있어서는 관련예산확충을 통한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대상자 제한(공무원, 사업주) 폐지, 근로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수준으로 확대, 근로기준법에 준해 근로지원인 및 잡코치의 근무조건 보장 등을 추진.
- 지원고용서비스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지원 전달체계의 확보, 국가 차원의 직무지도원(지원고용수행인력) 양성·배치·관리 체계의 확보, 지원 기간 및 대상자의 대폭 확대, 지원 고용 시행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정책추진.
- 의무고용률에 있어서는 서구사회에서는 장애출현율에 맞추어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탈리아 7%, 프랑스 6%, 독일 5% 등). 이에 현행 민간기업 2.7%를 3%로 확대, 정부기관 3%를 5%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더불어 의무고용률에서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에 있어선 동일하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며, 고용장려금에 있어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급기한 제한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고용확대 차원에서 취업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현황 및 취지

-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의 50.4%, 지적 장애의 경우 64.2%, 자폐성 장애의 경우 48.3%가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 유형별 월평균 개인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적 장애 중 48.1%, 자폐성 장애는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체장애는 83.8%, 시각장애는 82.3%, 청각장애는 86.9%로 조사됨.
-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지적 장애는 월평균 소득액이 15.7만 원이고, 자폐성 장애는 5.91만 원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의 72.57만 원, 시각장애의 61.69만 원, 청각장애의 42.82만 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임.
- 마지막으로 2007년 말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
- 한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있어 발달장애인은 배제하지 않으나 각종 서비스에 있어 자기권리주장·자기의사표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모든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찾아와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체수발 기능만이 존재하는 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점, 발달장애인이 가진 상대적인 중증장애(예를 들면 타 유형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부족하고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을 보전하는 별도의 대책)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교육, 노동,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상대적 중증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 실현은 결국 전체 장애인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기, 통합적 복지전달체계와 같은 진보적 장애인복지환경 구축을 실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

추진 방안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주간활동서비스고용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 지원.

현황 및 취지

- 현재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주무기관인 국가인권위는 지역별 분소가 4개소에 불과하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매년 미제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태. 더욱이 권고기능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특히 공공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장애인차별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장애인차별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이 문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막강한 사회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

추진 방안

- 각 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권리 옹호 관련 전달체계 구축 관련한 대응 인력 확보, 관내 사법·행정·복지기관·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지예산체계 구축, 이를 통해 모든 국가재정집행에 있어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권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 사회복지시설문제와 관련해 다음의 정책을 추진
 - 신규시설 설치 금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 시설 생활인의 자립도를 평가해 운영비 지원에 반영.
 - 각 광역별 탈시설 전환부서를 설치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교류 프로그램, 당사자의 퇴소의사 파악, 탈시설 지원.
 -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이사 규정 확대 (전체 이사의 1/3 이상), 민-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실태 조사 진행,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운영권 즉각 환수, 사회복지시설 위탁 사업자 선정에 있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위한 10대 추진과제>

1. 탈시설주거권 보장

- 탈시설 지원부서 설치
-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전환시스템 제도화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
-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
-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

2. 접근권·이동권 보장

-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의 향후 대폐차 및 신규도입 차량의 100%를 저상버스로 도입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전액 국비지원
- 특별교통수단의 지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장착차량’에 한정,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확보
- 휠체어탑승이 필요치 않은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특별교통수단 요금에 상응하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제공(지하철, 버스, 택시 연동)
-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대중교통, 주거공간, 각종시설물 접근에 대한 정책수립. 지속적인 모니터링

3. 교육권보장

- 통합교육 중심 환경 구축
-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장애인성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환경 구축
-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의 보호 및 인권 증진(각급 자치기구 -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 에 장애인, 혹은 장애부모 및 관련 당사자 할당제 도입)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학기당 3시간 이상, 대학은 교양 필수 2과목 이상으로 각 분야 인권교육(장애평등교육 포함) 의무화

4. 건강권 보장

- 원격 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대면 서비스 중심 공공의료 체계 확충
-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 비급여 부문 해소 및 장애 특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보장

5. 보장구지원 강화

-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
-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 적용 시행
-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 보완 대체 의사소통(AAC)지원체계 구축
- 직업활동을 위한 보장구 제공

6. 영화 관람권·정보 문화권 보장

-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 한국 영화에 한글 자막·화면 해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 및 이용 환경 개선
-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7.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 상충법령 개정
- 특수교사 수화통역자격증 취득 확대 등 농교육환경 개선
- 일반학교 교과과정에 수화를 제2언어(국어로 편입)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8. 정신장애인 지원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 해소
-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통합시스템 구축
-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 및 지역사회 지원 확대
- 정신장애인 인권보장방안 마련

9. 장애여성 지원 / 반성폭력 정책

- 장애여성 사회활동 지표 및 통계 구축
- 장애여성 정책기구 설치
- 장애여성관련 폭력에 관한 시군구 단위 상담, 지원센터 설치
- 읍면동 단위 장애인가구 육아지원 시스템 구축
- 학령기를 놓친 장애여성의 교육 욕구 조사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 여성 노동 실태 조사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임신, 출산 기간 활동 보조인, 보조기구 추가 지원

10. 국제협력 강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 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 아태 장애인 10년 국제협력개발 공적 기금을 마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 원칙을 명시하여 장애 관련 ODA 지원 계획 수립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인 위원 위촉하여 장애 포괄 개발정책 강화

평등, 건강, 안전이 보장되는 소수자의 삶

모든 차별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기본법 제정
비혼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기본권 보장
스스로 확인한 성 정체성 보장과 지원



공약 :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무지개정치의 실현으로

1. 모든 차별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기본법 제정

- 모든 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 설립

2. 비혼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기본권 보장

-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반자법 제정
-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의 분야에서 동성 배우자의 평등권 인정
-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3. 스스로 확인한 성 정체성 보장과 지원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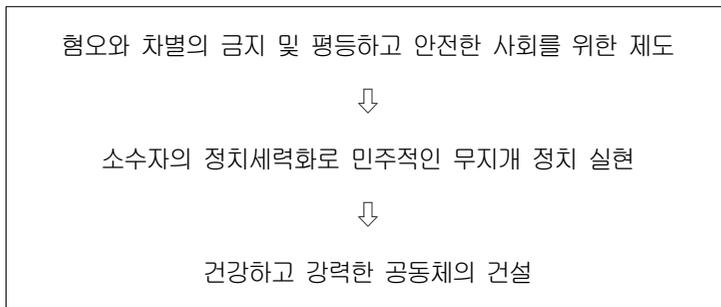
무지개 정치 3단계 추진과 4대 과제

진보신당은 강령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든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저항하는 장애인, 성소수자 및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의 정당”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특히 성소수자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대하여 “이게 사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그릇된 인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실제 조직화된 소수자 학대 범죄(gay bashing)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의 문제는 제도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을 무시당한 채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대상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혐오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보신당은 이처럼 오도된 관념에 뿌리박은 공동체를 향한 도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제도적 및 행정적으로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보신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소외의 현실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3단계의 과제를 설정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출합니다.



현황 및 취지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가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으로서 첫째, 차별과 배제 및 혐오의 금지와 근절을 위한 실질적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현상의 발생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2007년 법무부, 2011년 9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음.
-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예방, 금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요구됨.

추진 방안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하고,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둬.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구조와 피해보상 및 치유를 시행.
- 차별철폐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의 설립. 해당 기구는 연구조사 및 교육,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

현황 및 취지

- 실질적으로 상호부조 관계에 있고 동거까지 하고 있으나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들은 보호자로서의 권리 및 피보호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국민연금, 재산권 등의 경제적 문제 등에서도 부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음.
-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은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법적으로 동일시함. 프랑스는 이미 1999년부터 시민대협약(PACS/Pacte civile de solidarit)을 시행해왔으며, 독일과 영국이 2002년과 2006년 각각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을 제정 시행하였고,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파트너십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동반자법은 비록 성소수자에게만 특화하여 제정된 법이 아니라 비혼인 및 비혈연 관계에 있으면서 한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추진 방안

-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동반자법 제정.
- 혈연 중심의 가족 구성 및 이성애자 간 ‘결혼’과 유사한 체제를 성소수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에게 이러한 가족 구성 혹은 혼인 관계와 유사한 형식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법은 성소수자만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시민동반자법 형식보다는 프랑스의 시민대협약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의 분야에서 동성 배우자의 평등권을 인정.
-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 가칭 동반자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 민법 친족편 일부 개정 필요.

현황 및 취지

- 스스로가 확인한 성적 정체성에 따라 생물학적 성을 다른 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함. 그러나 신체적 및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성전환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전환된 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 징집 등의 문제로 각종 피해가 양산되고 있음.
-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등의 시기에 서류상 기재되는 기존 성별과 전환된 성별의 불일치를 이유로 채용이 기피되거나 배척되는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성전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2006년 9월 대법원이 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었으나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
-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성전환자 성별 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

추진 방안

- 가칭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현재 대법원 예규상의 ‘정정’은 공문서상의 주민등록번호만을 변경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으나 특별법을 통해 성전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내용을 규정하고, 예규상 잔존해 있는 혼인 여부 및 자녀 여부의 조건 삭제.
-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호르몬 치료, 수술, 사후관리 등의 의료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
- 성전환자 성별변경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

<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법률의 개폐 >

군형법 폐지 등 성소수자의 차별을 용인하는 법제도 정비가 요구됨.

- 군형법을 폐지함으로써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한 자”의 규정도 자동 폐지되도록 함
-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2]에 의한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항목 삭제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별표1]상의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항목 삭제

감사의 말

이 정책공약 책자는 진보신당 출판동호인모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에 도움을 주신 조혜원, 최세정, 이춘희, 이상덕, 이광호, 김응배 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12, 살만한 삶을 위한 Esc

펴낸 곳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펴낸 날 : 2012년 3월 29일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전화 : 02-6004-2000

팩스 : 02-6004-2001

이메일 : newjinbo@gmail.com

웹사이트 : <http://newjinbo.org>